

2009년도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관계규정 해설 및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총5권중 제1권

2008. 12.

# 일 러 두 기

1. 이 지침서는 총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주요변경사항 및 농림수산사업 대출안내를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4권까지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을, 제5권에서는 균특회계사업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협·수협·산림조합, 한국농촌공사 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2009년도 사업비는 정부예산의 국회심의나 기금사업의 계획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각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관계규정 및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 제2권 : 식량·원예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촌개발 및 임업·산촌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축산·수산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5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인터넷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faff.go.kr](http://www.miffaff.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입문의

- 문의기관명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경영지원실
- 연락처 : 전화 031-460-8816~7, fax 031-460-8819

# 차 례

## 제1권 관계규정 해설

I.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해설 .....	1
1. 배경 .....	3
2. 2009년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의 주요골자 .....	4
3. 주요 변경사항 .....	8
4. 해설 .....	9
제1장 총칙 .....	9
제2장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 .....	13
제3장 전문가위원회 .....	14
제4장 농림수산사업 .....	15
제5장 농림수산사업의 관리 .....	23
제6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	24
제7장 보칙 .....	27
II.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	29
III.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해설 .....	81
1. 배경 .....	83
2. 주요골자 .....	86
3. 주요 변경사항 .....	90
4. 해설 .....	95
IV.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	115
V. 농림수산사업별 주요변경사항 .....	145
VI. 기타 주요사항 .....	261
1. 농림수산사업자금 대출안내 .....	263

## 제2권 식량·원예분야

### 【식량분야】

I. 생산기반 확충 .....	269
1. 농지은행사업 .....	271
① 영농규모화사업 .....	272
②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298
2.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308
3. 중규모 용수개발사업 .....	325
4. 농업용수 수질조사개선사업 .....	348
5. 개인육종가 활성화 지원사업 .....	359
6. 우수품종 증식보급사업 .....	370
II. 농업기계화 .....	385
7. 농기계 구입지원사업 .....	387
8. 농기계 임대사업 .....	409
9.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	422
III. 생산 및 유통개선 .....	433
10.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	435
①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 .....	435
②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	454
③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 .....	464
11.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 .....	477
12. 농작물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	494

### 【원예분야】

I. 생산 및 유통개선 .....	501
13.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	503

14.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	517
15. 시군유통회사설립·운영지원 .....	530
16. 농식품 소비지·산지상생협력 .....	540
17. 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 .....	558
① 산지유통활성화사업 .....	560
② 원예작물수급안정사업 .....	569
③ 수매지원(저장용·산지가공)사업 .....	580
18.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	590
19. 인삼계열화사업 .....	600
20.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	609
21. 농산물 자조금지원 .....	622
22. 소비지유통활성화 .....	633
23.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	651
24.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	662
25.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	676
26.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	688
27. 수출업체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	692
28.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사업 .....	696
29. 농식품시설현대화 .....	702
30. 생산자용·복합형 식품제조기업 육성지원사업 .....	710
31. 우수농산물관리(GAP)제도 운영 .....	714
32. 천일염산업육성지원 .....	735
①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SPC) 설치사업 .....	735
② 염전생산시설개선사업 .....	746
<b>II. 과수생산 및 유통개선 .....</b>	<b>753</b>
33.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 .....	755
①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771
②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	784

③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	799
④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	821
34. 과원영농규모화사업 .....	835
35. 과수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	853
36. 과수원정비지원사업 .....	862

### 제3권 농촌개발 및 임업·산촌분야

#### 【농촌개발분야】

<b>I. 생산 및 유통개선 .....</b>	<b>883</b>
37.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구조성)사업 .....	885
38. 생물적 병해충방제(천적)사업 .....	906
39.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사업 .....	921
40. 친환경비료지원사업 .....	929
41. 농업종합자금지원 .....	957
<b>II. 기술개발 .....</b>	<b>981</b>
42.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	983
43. 농림기술개발 .....	994
44. 신기술보급사업 .....	1002
<b>III. 인력육성 .....</b>	<b>1011</b>
45.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	1013
① 창업농업경영인 육성 .....	1013
② 농산업인턴제 및 창업농멘토제 .....	1027
③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	1043
46. 농업경영컨설팅사업 .....	1055
47. 농촌출신 대학생학자금 융자지원사업 .....	1079
48.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	1090

<b>IV. 소득보전</b> .....	<b>1107</b>
49.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	1109
50.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1119
5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1137
52.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	1154
53. 농업인 재해공제사업 .....	1174
54.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	1180
55.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	1195
<b>V. 소득원개발</b> .....	<b>1207</b>
56.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	1209
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1209
② 관광농원 .....	1224
③ 농어촌민박사업 .....	1240
57. 한계농지정비사업 .....	1249
58.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	1260
59. 농축산경영자금지원 .....	1271
<b>VI. 생활환경개선</b> .....	<b>1279</b>
60.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1281
61.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	1298
<b>【임업·산촌분야】</b>	
<b>I. 경영기반 확충</b> .....	<b>1315</b>
62. 산림경영계획 .....	1317
<b>II. 생산 및 유통개선</b> .....	<b>1327</b>
63.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 .....	1329
64. 산림소득증대사업 .....	1348
65. 임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	1369

66. 산림바이오매스사업 .....	1414
67. 별채운재로시설지원사업 .....	1420
68. 사립수목원지원사업 .....	1429
69.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	1435

**Ⅲ. 산림자원조성 .....** 1447

70. 조림·숲가꾸기 .....	1449
-------------------	------

**제4권 축산·수산분야**

**【축산분야】**

**I. 사육기반확충 .....** 1465

71.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	1467
① 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및 유통비지원 .....	1468
② 조사료용 기계·장비지원 .....	1470
③ 볏짚 등 부존자원활용지원 .....	1473
④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지원 .....	1474
⑤ 조사료용 종자구입비지원 .....	1476
⑥ 조사료가공 시설지원 .....	1478
72. 사료산업종합지원 .....	1495
73.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	1504
74. 마필산업육성 .....	1529
75. 송아지생산안정사업 .....	1538
76.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지원 .....	1546
77. 양봉산업육성사업 .....	1561
78. 낙농체험 관광사업 .....	1565

**Ⅱ. 생산 및 유통개선 .....** 1577

79. 축산물도축 가공업체지원사업 .....	1579
80. 브랜드육 타운조성 .....	1611



81. 가축 및 계란수송 특장차량지원 .....	1617
82.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	1626
83.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 .....	1643
① 가축계열화사업 .....	1643
② 브랜드 경영체지원사업 .....	1657
③ 축산물브랜드 컨설팅지원사업 .....	1680
84. 축산종합지도(HACCP)지원사업 .....	1694
85. 축산공제사업 .....	1705
86. 품질고급화 장려금지원 .....	1713

## 【수산분야】

<b>I. 생산기반 확충 .....</b>	<b>1729</b>
87.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지원 .....	1731
88. 수산자원 보호구역관리 .....	1741
89. 소규모바다목장사업 .....	1749
<b>II. 생산 및 유통개선 .....</b>	<b>1755</b>
90. 수산물소비촉진사업 .....	1757
91. 환경친화형 양어용 배합사료지원사업 .....	1766
92.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공급 .....	1775
93. 고밀도부표보급지원사업 .....	1781
94. 양식장HACCP적용지원 .....	1789
95.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	1803
<b>III. 기계화 .....</b>	<b>1811</b>
96. 고효율 어선유류절감 장비지원 .....	1813
97.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 .....	1822
98. 양식장비 임대사업 .....	1832
99.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	1845

<b>IV. 인력육성</b> .....	<b>1857</b>
100.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	1859
101. 수산업인턴제 및 창업어가 후견인제 .....	1887
<b>V. 소득보전</b> .....	<b>1911</b>
102.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사업 .....	1913
103. 수산부문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	1924
104. 어업인 정책보험사업 .....	1940
105. 수산인 안전공제지원사업 .....	1949

**제5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6. 배수개선사업 .....	1957
107. 방조제 개보수사업 .....	1968
108.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	1978
109. 소규모용수개발사업 .....	1987
110. 지표수보강개발사업 .....	2006
111. 농업생산기반조성 .....	2023
112. 광역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 .....	2038
113.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	2053
114.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 .....	2070
115.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	2082
116.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	2093
117. 전원마을조성사업 .....	2110
118.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	2127
119.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 .....	2139
120.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2154
121. 농공단지조성사업 .....	2170
122. 농촌활력증진사업 .....	2182
①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	2182

② 향토산업육성사업 .....	2187
③ 특화품목육성사업 .....	2199
123.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사업 .....	2209
124. 산촌생태마을 조성 .....	2221
125.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	2231
126. 수산식품 거점단지조성사업 .....	2239
127. 양식어장정화사업 .....	2245
128.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 .....	2253
129. 어항기반시설조성 .....	2261
130. 어촌·어항 관광조성 .....	2273



# I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해설



## 1. 배 경

- 1993년까지의 농정 추진 방식은 『중앙집권적 하향 방식』으로서 정부가 단독으로 시책을 결정하고 획일적인 지시에 의해 농정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정책입안과 추진과정에 농업인을 비롯한 이해당사자가 배제되어 지역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았음
- 19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전개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4. 6. 14.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1992년에 착수한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1998년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한편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1994. 7부터 10년동안 15조원을 농어촌에 추가투입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와 자율에 바탕을 둔 상향식 농정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을 1994. 12. 14.에 제정하였고 1996. 10. 28.에 『농림사업실시규정』으로 개칭하고 개별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작성하여 배포
- 그동안, 유사사업 통합, 신규사업 추가, 경영장부 기록의무 및 경영교육 강화, 지원실적 공개근거 신설, 사업선택의 탄력성 제고, 사업포기자분의 추가사업대상자 신청기한 조정 등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업시행상의 투명성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림사업실시규정을 보완함
- 2008. 2. 29 정부조직법개정에 의거 (구)농림수산식품부와 (구)해양수산부가 통합됨에 따라 수산관련 사업을 농림사업실시규정에 포함시켜 2008. 7. 23에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으로 개칭하여 시행함

## 2. 주요내용

### < 기본 방향 >

- 농림수산사업 추진체계를 표준화하고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성과 가시화 유도
- 농림수산정책의 총체적인 모습을 제시하여 정책방향과 부합되게 수행
- 정책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농어업인등의 불편사항 해소

#### 가. 농림수산사업의 종합안내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 사업을 망라한 사업시행 지침서를 시·군·구 및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협·수협·산림조합등 안내기관에 비치하여 농어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의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해 농림수산사업 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개발하여 2006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사업검색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안내기관은 농어업인들의 사업선택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상담·지도 수행

#### 나. 농림수산사업 신청 및 지원절차의 정형화·공개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 사업의 신청과 예산의 계상,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정부가 지원한 시설등의 사후관리에 대한 통일된 원칙 제시
- 사업신청요령을 공고하여 공정한 참여기회 부여



- 자금지원대상자를 공개적으로 선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
- 사업대상자 선정은 시군 농림수산심의회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하므로 누가, 어떤사업을, 어떤과정을 거쳐, 얼마의 지원을 받는지가 공개됨
- 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전에 취득한 재산(시설)의 가액은 지원 대상이 아님

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농어업인들의 자조역량 향상

- 선택할 수 있는 사업내용, 신청자격, 지원규모·조건·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농어업인들이 연중 사업을 구상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신청하면 시군 농림수산심의회의 공개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상향식 농정체제로 전환함**
- ※ 농어업인들은 사업시행지침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정부정책방향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가 필요로 하는 세부사업내용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신청에 탄력성을 부여함**

라. 경영장부(경영일지)기록 의무이행 및 경영교육 이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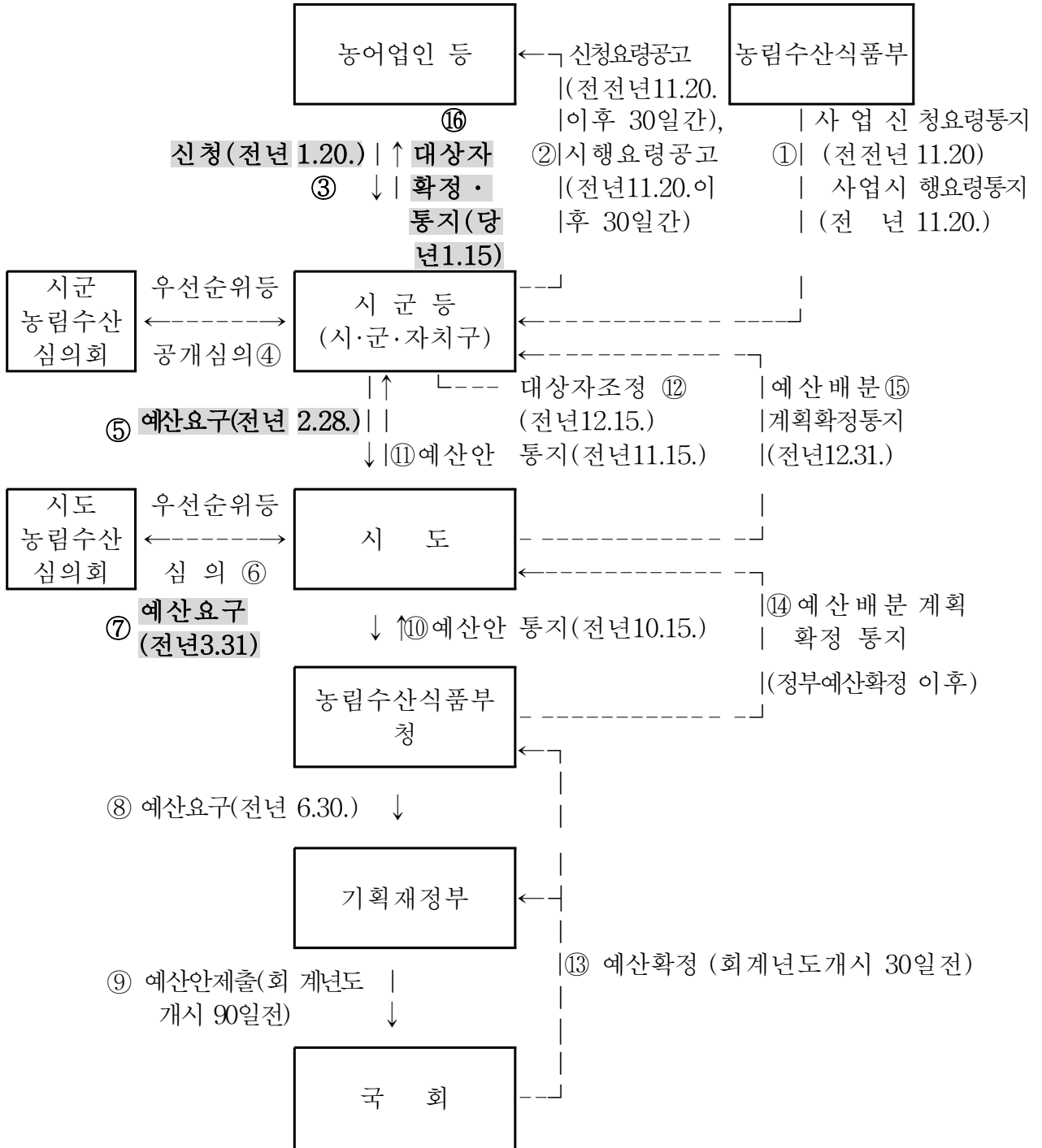
- 농어업인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 사업에 대한 『경영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사업의 경영상태를 스스로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신청시 과거 **3년간 경영장부(경영일지) 기록실적**을 함께 제출하게 하여 심사시 **지원우선순위에 차별성**을 부여함
-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영교육 이수자 및 산림청·**

통계청에서 시행하는 농림·수산통계조사의 표본농림어가로써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에게도 지원우선 순위를 부여함

마. 부실경영체의 무리한 사업참여 자제를 유도하기 위한 사후 관리 강화

-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명단과 금액을 시·군·구 및 농협·수협·산림조합의 홍보지, 반상회보, 농업인등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
-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시·군에서 관리대장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청의 사업부서에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사업추진상황 확인·점검
- 사업계획, 집행, 사후관리에 참여한 자는 관련자료에 실명 표기

바. 농림수산사업 신청 및 지원 절차도



### 3. 주요 변경사항

- 정부조직법개정(법률 제8852호('08.2.29)에 따라 (구)농림수산식품부와 (구)해양수산부의 일부가 통합되어 “어업인, 수산업, 어촌 등” 수산분야 삼업
  - 자율사업의 대상에서 어업인, 어획물운반업자, 수산물가공업자, 원양산업에 종사하는자,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자 포함 (제2조제2호 관련)
  - 수산분야의 생산자단체 대상을 위해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 가공업 협동조합, 어촌계, 내수면 어업계 포함
- 적용범위 및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작성·배포 관련 조정
  - 농림수산사업분류표에 제외되는 사업에 “농림수산사업지원대상에 특정기관, 특정지역, 특정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에 한정되어 사업부서와 사업시행자간으로도 사업수행이 가능하고 책임을 지는 사업”을 신설하여 지침간소화대책 마련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안을 당초 9월30일에서 변경하여 11월15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지침서 작성·배포를 당초 11월20일에서 12월10일까지로 조정하여 내실화
- 농림수산사업신청서 검토기관 설정
  - 시군등의 사업부서에서 수산분야 지원신청금액 중 어업인 후계

자 및 전업어가지원사업을 제외한 수산사업은 5천만원 이상일 때는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사무소에서 사업성 검토의뢰 신설 (제20조 관련)

□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조정

- 사업규모가 1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 및 영농기술능력진단 평가 또는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실제 기준이 없고 사업에 따라 개별지침에서 선정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조항 삭제(별표 4-자)

## 4. 해 설

### 제1장 총칙

#### 가. 정의(제2조)

- 1) 농림수산사업 : 이 훈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 2) 자율사업 : 농어업인, 생산자단체등, 농림수산업관련산업종사자등이 자율적으로 농림수산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제2호)
  - 농업인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 어업인 : 수산업법 제2조제11호
  - 어획물 운반업자 : 수산업법 제2조 제14호
  - 수산물가공업자 : 수산업법 제2조제16호
  - 원양산업에 종사하는자 :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

○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자 : 내수면어업법 제6조 · 제9조 · 제11조

○ 생산자단체등

〈농업분야〉

- 생산자단체(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 : 농협·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있는 전문생산자조직
-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들의 공동조직(비법인 포함)

〈수산분야〉

- 수산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 수협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수산물가공업협동조합
- 수협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어촌계
- 내수면어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 어업계

○ **농림수산업관련산업종사자등** : 농림수산업 또는 농어촌과 관련 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3) **공공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공사 또는 주식회사 등을 포함한다) 등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농림수산사업을 말한다(제2조제3호)

4) **총괄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산림청(청), 시도, 시·군·자치구(시군등)에서 이 훈령에 따라 농림수산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과단위 부서(제2조제4호)

[설명] \* 농림수산식품부 : 정책평가팀 \* 청 : 기획재정담당관실

\* 시도 : 대체로 농정과 \* 시군등 : 대체로 산업과

5) **사업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에서 농림수산사업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단위 부서(제2조 제5호)

[설명]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경우 사업시행지침의 사업명 밑에 기

재된 『해석기관』을 말함

- 6) **사업시행기관**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상의 사업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역농협), 수산업협동조합, 한국농촌공사 등(제2조제6호)
- 7) **농림수산심의회**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수산업법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 말한다

나. 적용범위 등(제3조)

- 이 훈령은 제2조제1호에 의한 농림수산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하여 **농림수산사업분류표에 기재함**(제3조제2항)
- 사업시행에 관한 법령 또는 개별규정으로 따로 정한 사업은 적용제외

— < 농림수산사업분류표 적용제외 범위(제3조제2항)> —

- 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 및 수매·비축
  - 정부가 일시적으로 과제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조사연구의 목적이 되는 사업과 연계추진하는 경우 제외)
  -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생산자단체등, 농림수산업관련산업종사자(법인에 한함)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
  -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
  - 정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
  - 기관운영, 차액보상, 이차보전 등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 농림수산사업지원대상이 특정기관, 특정지역, 특정농림수산업관련사업종사자 등에 한정되어 사업부서와 사업시행자간으로도 사업수행이 가능하고 책임을 지는사업
- (예) 장관과 농촌공사사장과의 직접사업, 장관과 특정도지사 또는 시군과의 사업 등

[설명] \* 농림수산사업분류표 적용제외 범위에 속하는 사업이라도 농어업인 등에 대한 정부시책의 홍보 등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는 포함할 수 있음  
다. 사업시행지침 등(제4조)

- 1) 농림수산사업분류표에 명시된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가 **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 15.까지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정책평가팀)에 제출(제4조제1항)
  - 사업시행지침의 내용(농림수산식품부 총괄부서가 정하는 서식)
    - 해석기관 및 지침작성자 명시(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
    - 목적, 추진방향(정부시책방향 명시), 근거법령, 성과목표 및 지표,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 사업예정년도의 사업시행요령(세부사업내용 열거)
    - 사업예정년도 다음년도의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등
- 2)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작성시 농림수산사업 표준 프로세스(별표2), 사업별 성과목표 및 지표를 포함 제시(제4조제2항)
- 3)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는 **사업시행지침안**을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포함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 10.까지** 다음의 형태로 제작하여 기관에 통지함(제4조제3항)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는 총5권으로 작성함(제1권은 관계규정 해설, 제2권 내지 제4권은 농림수산사업분류표에 따라 식량·원예분야, 농촌개발 및 임업·산촌분야, 축산·수산분야로 하고 균특회계 사업은 제5권으로 편제함)
    - 제2권 : 식량·원예분야
    - 제3권 : 농촌개발 및 임업·산촌분야



- 제4권 : 축산·수산분야
- 제5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통지할 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와 그 산하기관·단체, 청, 시도, 시군등,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수산사무소, 생산자단체 등
- 4) 다음사항은 사업시행지침안을 확정하기 전에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중 다음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가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함**(제4조제4항 및 제5항)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중 중요사항의 개정에 관한 사항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중 신청자격·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
  - 신규사업선정 및 그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5) 농림수산사업분류표에 정한 사업이외의 농림수산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시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함(제4조제7항)

## 제2장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

가.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1) 농림수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제5조제1항)
- 2) 기능(제5조제2항)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과 관련된 사항 개정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중 신청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
  -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제6조)

- 1) 구성(20인이내) :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부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수산정책실장, 각국·단장(대변인·감사관·기획조정관 포함), 청의 기획조정관, **농림수산업관련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다. 회의소집 등(제8조)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함.

- 1)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청의 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 제5조제2항 각 호의 심의요구가 있는 때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라.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구성(15인이내) :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실무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관(실무부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단장인 위원 소속의 직제상 가장 상위과의 장(주무과장)

### 제3장 전문가위원회

가. 전문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11조)

- 1) 농림수산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신규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부서별로** 전문가위원회를 둔다
- 2) 기능
  - 신규사업선정에 관한 사항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중 신청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농림수산사업의 자문에 관한 사항
- 사업대상자별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공사업, 3억원 이상의 자율사업 중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나. 전문가위원회의 구성(제12조)

- 전문가 위원회는 위원장(각 국·단장) 및 부위원장(각 과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해당 국·단 소속의 과장 및 해당 사업부서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 제4장 농림수산사업

#### 가. 사업신청요령 등의 공고 및 안내(제16조)

- 1)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없이 다음사항을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 공고할 사항(제16조제1항)
    - 시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중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 계획
    - 농림수산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등
  - 공고는 시·군·구,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협·수협·산림조합(농업협동조합등)에서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게시 및 반상회보 등재(제16조제2항)
  - 시군등,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수산사무소, 농업협동조합등의 장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농어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
- 2) 안내기관 : 시군등, 읍·면·동,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수산사무소, 농협·수협·산림조합,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제17조)

- 안내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의 직원중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상담요원은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규모 등 농림수산사업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

#### 나. 농림수산사업의 신청절차(제18조)

1) 신청서 제출기관 : 원칙적으로 시군등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수산사무소, 읍·면·동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하는 기관에 제출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음(제18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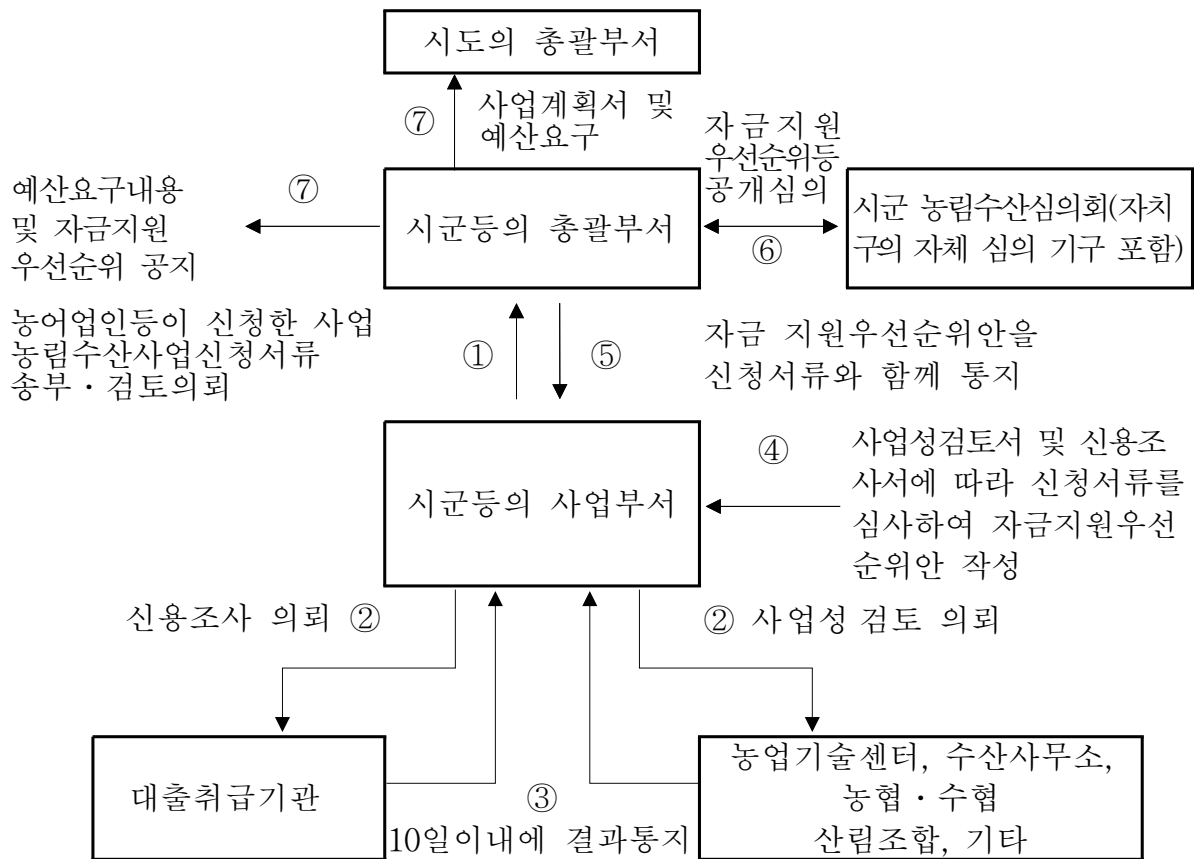
- 사업예정지 관할외의 시군등,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읍·면·동장이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시군등에 송부해야 함(제18조제2항)
-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하는 기관이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심사의견서를 붙여 시장·군수등에게 송부하여야 함(제18조제4항)
-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첨부하도록 함(제18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2)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는 대출신청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제18조제5항 별지 제2호서식)

3) 제출기한(제19조) :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 20.

-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 대상자의 신청은 수시 접수하여 선정  
[설명] 농림수산사업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예정년도 전년도 1.20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대체 선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을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 검토, 농림수산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다. 자율사업신청서에 대한 시군등의 심사 및 예산요구(제20조 내지 제26조)



< 업무단계별 설명 >

② 사업성검토(제20조제2항) : 지원신청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지원사업을 제외한 수산사업은 5천만원 이상)에 한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수산사무소장이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면·동 및 농협·수협·산림조합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조사 실시 가능

- 대규모사업(시설) 및 첨단시설의 경우 개별사업지침서에 명시된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 선행

(사업성검토 기관)

- 농업기술센터 : 농촌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사업(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농업관련인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 농업 협동조합 : 농·축·인삼업과 관련된 사업
- 산림조합 : 임업과 관련한 사업
-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사무소 : 수산업과 관련된 사업

- 기타 : 위 소관외의 사업은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기관
- ③ 신용조사(제20조제3항) : 대출신청금액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함  
(3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 신용조사로 대체)
- 시군 등의 사업부서는 사업신청자에게 대출취급기관에 대출가능  
액을 확인하도록 안내(제20조제4항)
- ④ 농림수산사업신청서의 심사(제23조) : 시군 등의 사업부서는 사업성검토  
서와 신용조사서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사업신청서  
를 심사
-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시 검토할 사항)
- 시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 시군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 전년도 신청자중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에서 탈락된 자 현황
  - 시도, 시군 등,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자체 지원계획
  - 시군 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여부
  - 전년도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위 사항 외에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기록상황과 경영교육  
이수 상황 등을 추가로 검토함
-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한 자에게는 동일 조건에서  
그렇지 않은 자보다 지원우선 순위를 부여(제24조제2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이 개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와 산림청·통계청에서 시행하는 농림수  
산통계조사의 표본농림어가로써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에게는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지원우선 순위를 부여함(제24조제2항)
  - 신청자가 자금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

(이미 추진된 사업실적 포함)의 가액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  
하지 못함(제24조제3항)

⑥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 심의(제2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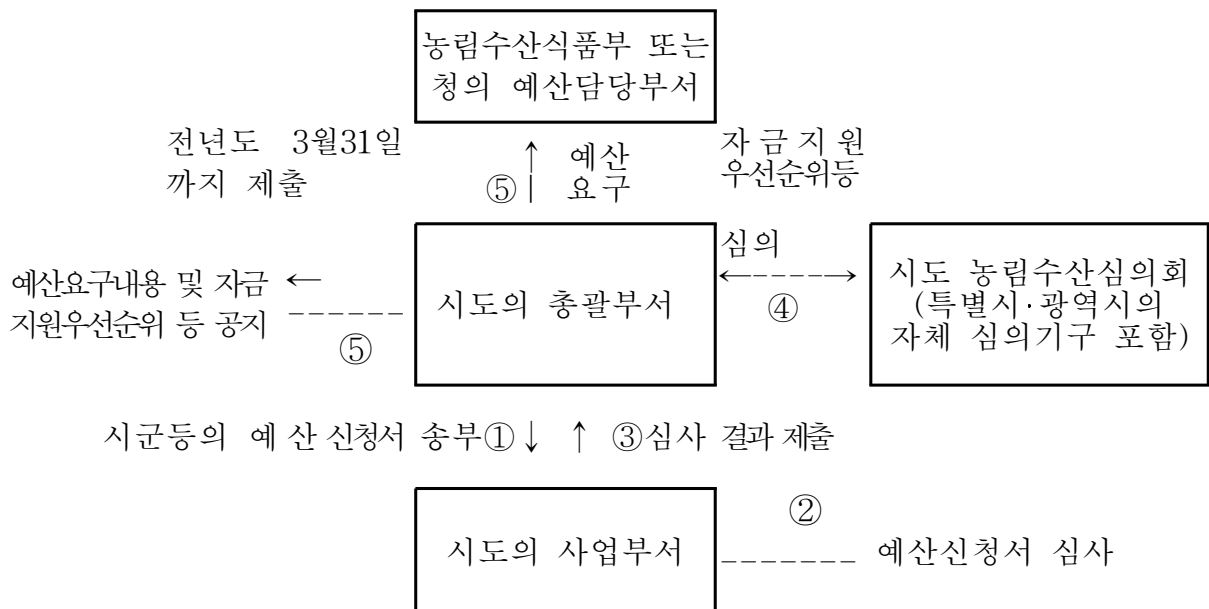
- 시군 등 농림수산심의회는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제23조, 제24조제2항및제3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 농림수산심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사업은 **분과위원회 또는 품목별 소분과위원회의 심의**로써 시군 농림수산심의회 심의로 같음
- 시군 등의 농림수산심의회가 심의를 하고자 할 경우 분과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제25조제2항) 다만, 시장·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수 있음
- 시군 농림수산심의회에 **법정 최대인원의 생산자단체장 및 농림어업인 대표**가 참여하도록 유도
  -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 수산조정위원회 :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미달시는 시장·군수 등이 따로 구성하는 전문심의기구의 심의로써 농림수산심의로 같음(제25조제3항))
- 지원신청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와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가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시도지사에게 심사를 요청할수 있음. 이때 시도지사는 전문가(전문기관 포함)를 지정하여 검토하여야 함
- 시군 및 시도 농림수산심의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서면심의 불가)

[설명] 일부 시군에서는 회의소집을 안하고 관계직원이 개별적으로 위원을 방문하여 서면의결하는 등 사업신청서 심의를 비공개로 허술하게 하는 사례가 있어 반드시 일정한 장소에 위원을 소집하여 각 위원이 공개적으로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⑦ 시군 등의 예산신청 및 공지(제26조)

- 시군 등의 총괄부서는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2. 28.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에 예산신청
- 이때 시군 등의 총괄부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내용과 자금지원우선순위안, 지원예정금액 등에 대한 열람장소 및 기간 등을 시군 등의 홈페이지, 발행하는 홍보지 및 반상회보 등에 게재

라. 시도의 심사 및 예산요구(제27조)





<시도의 사업부서가 예산신청서 심사시 검토할 사항>

- 시군등의 농업및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 시군등의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 전년도 신청자중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에서 탈락된 자 현황
- 시도, 시군등, 농업협동조합등의 자체 지원계획
-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
- 전년도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연차별 자금지원계획
-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금지원계획
- 시도 자체 자금지원계획
- 위 검토사항외에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기록상황과 경영교육 이수 상황, 산림청·통계청에서 시행하는 농림수산통계조사의 표본농림어가로써 경영정보의 성실한 제공여부를 시군 등의 검토에와 같이 추가 검토

마.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심사(제28조)

- 1)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에 송부(제28조제1항)
- 2)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시도, 시군등의 사업량과 소요 예산을 조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제18조제2항)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예산요구서 심사시 검토할 사항>

- 시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및 시군 농지이용계획에 반영여부
-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 사업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

-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여부

바. 정부예산안의 통지(제29조)

- 1)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0. 15. 까지 시도, 시군 등별 정부예산안 배분계획을 시도에 통지(제29조제1항)
- 2) 시도지사는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 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 15.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제29조제2항)
- 3) 시장·군수등은 시군 등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 15.까지 사업별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제29조제3항)

- 사업포기, 업종변경, 영농·영림 또는 영어 규모의 현저한 감소시 자금지원대상자우선순위 변경가능

사. 정부예산 배분계획의 확정 및 통지(제30조 내지 제33조)

- 1)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정부예산(각종 기금운용계획 포함)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 등에 대한 정부예산 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시도에 통지(제30조)
- 2) 시도지사는 시군등에 대한 시도예산의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 31.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제31조)
- 3) 시군 등의 총괄부서(그외 사업주관기관 포함)는 사업예정년도의 1. 15.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부득이한 경우 우선순위 변경가능)하여 이를 자금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자금지원대상자명단을 시군 등 및 농업협동조합등의 홈페이지와 홍보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함(제32조, 제33조)

<자금지원대상자 우선순위 변경시 순서>

- 시군 농림수산심의회를 거쳐 이미 결정된 우선순위의 차순위자
- 사업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신청받아 그중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자

<공지시 추가할 사항>

- 시군등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등, 한국농촌공사 지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

## 제5장 농림수산사업의 관리

### 가. 경영장부의 기록 및 비치(제34조)

- 1) 시장·군수등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장부를 기록·비치하게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 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하게 하여야 함(제34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 2) 시장·군수 등은 3천만원 미만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함(제34조제2항 별지 제6호서식)

### 나. 농림수산사업 점검 및 평가(제35조)

- 1)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농림수산사업 표준 프로세스에 따른 사업이행 점검을 연2회 이상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함(제35조제1항)
- 2)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농림수산업무평가규정에 따라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를 실시함(제35조제2항)
- 3)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농림수산사업에 대해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지방자치단체평가 등에 반영함(제35조제3항)

### 다. 사업의 관리책임 등(제37조)

- 1) 농림수산사업에 대한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등에게 있음. (제37조제1항)
- 2)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시설등)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주요사업장(기지원사업 포함)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국 등 사업부서는 일반현황, 자금

집행상황, 사업추진진도 운영상황등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사업담당 자는 사업추진상황을 확인 또는 점검하여 의견을 기재할 수 있음(제37조제2항)

- 시장·군수등은 지원금액이 3천만원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당해 읍·면·동에 관리대장을 비치하게 할 수 있음(제37조제3항)
- 3) 시설등에는 농림수산사업안내표지를 시설등의 입구·몸체 또는 기타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함(제37조제4항 별표 3)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4)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 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해야 함(제37조제5항)
- 5) 사업부서는 사업의 정책입안, 사업집행(자금집행) 사후관리 등의 업무에 참여한 공무원과 농업협동조합 등(중앙회포함)임직원의 실명을 표기·유지 하여야 함(제37조제6항)

## 제6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 가. 신규사업의 제안(제38조제1항 및 제2항)

-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음
  -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수산사업과의 유사성
  - 전문가 등의 경제성분석 및 지역여론
  - 농어업인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또는 공청회를 거친 경우 그 결과
  -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의 저촉 여부
  - 기타 신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2)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제38조제3항)

- 3)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은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음(제38조제4항) 다만,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등에 제출하여야 함

#### 나. 신규사업의 선정요구(제39조)

- 1)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거나 외부의 제안이 있을 때에는 타당성을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당성 분석자료에 사업추진계획(안)을 붙여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제39조제1항)
- 2)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 때에는 사업시행기관의 의견수렴과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함(제39조제2항)
- 3)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신규사업 타당성 분석자료, 성과평가체계, 평가지표 등을 반영한 사업제안서를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신규사업 선정요구(제39조제3항)
- 4)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월이 내에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제39조제4항)

#### 다. 신규사업의 채택(제40조)

- 1)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는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신규사업의 선정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다만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업무평가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설치된 농림수산업무심사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음(제40조제1항)

- 2) 사업의 성격상 긴급성이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신규사업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제40조제3항)
- 3) 신규사업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함(전임자문관제)(제41조)
- 4) 신규사업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 ~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 다만,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도상연습으로 갈음할 수 있음(제42조)
- 5) 모든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개시 후 6월 이내에 실태조사 실시(제43조)
- 6)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신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농업·농촌발전계획수정보완지침에 따라 시도 및 시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함(제44조)

[설명] 이때 시군 농림수산심의회 심의

- 라. 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의 특례(제45조) :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의 제안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 채택을 확정즉시 사업을 시군등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홈페이지와 홍보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신규사업을 채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다음의 절차를 거쳐 자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함
- 농림수산사업신청서 제출(제18조)
  - 사업성 검토 및 신용조사(제20조 내지 제22조)

- 시군등의 사업신청서 심사 및 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제23조 내지 24조)
-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의 공개심의(제25조)

## 제7장 보칙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자금지원대상자별 자금지원실적을 시장·군수등으로 하여금 시군등 및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홍보지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할 수 있음(제47조)
-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을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수산업법인의 지원요건을 구비 하도록 하고,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제48조)





## Ⅱ.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훈령 제38호)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1995. 11. 14.〕  
〔훈령 제834호 전문개정〕

개정 1996. 6. 13. 훈령 제 862호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개정 1996. 10. 28. 훈령 제 877호  
개정 1997. 10. 29. 훈령 제 913호  
개정 1997. 12. 30. 훈령 제 925호  
(농림업무평가규정)  
개정 1998. 3. 9. 훈령 제 931호  
개정 1998. 11. 12. 훈령 제 965호  
개정 1999. 11. 16. 훈령 제1003호  
개정 2000. 11. 27. 훈령 제1050호  
개정 2001. 12. 21. 훈령 제1083호  
개정 2002. 11. 29. 훈령 제1122호  
개정 2003. 11. 17. 훈령 제1145호  
개정 2004. 12. 17. 훈령 제1183호  
개정 2005. 12. 22. 훈령 제1219호  
개정 2006. 12. 29. 훈령 제1261호  
개정 2007. 12. 28. 훈령 제1291호  
개정 2008. 7. 23. 훈령 제 38호

###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림수산사업의 신청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농림수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여 농수산업·농어촌종합대책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수산사업”이라 함은 이 훈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2. “자율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가 자율적으로 농림수산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 가.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 가-2. 수산업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 제14호의 어획물 운반업자, 제16호의 수산물가공업자,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산업에 종사하는 자,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및 제11호에 의한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자
- 나.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 및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의 공동조직(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 나-2. 수산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 가공업협동조합,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어촌계, 내수면어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 어업계(이하 “생산자단체 등”이라 한다)
- 다. 농림수산업 또는 농어촌과 관련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농림수산업관련산업종사자 등”이라 한다)
3. “공공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공사 또는 주식회사 등을 포함한다) 등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농림수산사업을 말한다.
  4. “총괄부서”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 시도”라 한다.), 시·군·자치구(이하 “시군 등”이라 한다.)의 과단위 보조기관(이하 “과”라 한다.)으로서 이 훈령에 따라 농림수산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업부서”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의 과로서 농림수산사업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시행기관”이라 함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상의 사업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한국농촌공사 등 농림수산사업의 시행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7. “농림수산심의회”라 함은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수산업법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훈령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그 시행에 관하여 법령 또는 개별규정으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모든 농림수산사업은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하여 별표1의 농림수산사업분류표에 기재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국제협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구매비축
  2. 정부가 일시적으로 과제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조사연구의 목적이 되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생산자단체등, 농림수산업관련산업종사자등(법인에 한한다.)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
  4.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또는 정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집행하는 사업비
  5. 기관운영, 차액보상, 이차보전 등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6.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이 특정기관, 특정지역, 특정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에 한정되어 사업부서와 사업시행자간으로도 사업수행이 가능하고 책임을 지는 사업

제4조(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농림수산사업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총괄부서가 정하는 서식에 의거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도(이하 “사업예정년도”라 한다.)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작성시 농림수산사업 표준 프로세스(별표 2), 사업별 성과목표 및 지표를 포함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안을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로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와 그 산하기관·단체, 청, 시도, 시군등,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수산사무소, 생산자단체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농림수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는 제4조1항과 제3항에 따라 확정된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중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청의 경우에는 자체 심의기구로 갈음하고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중 제5조제2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⑥ 농림수산사업중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은 이 훈령에 의하여 확정된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⑦ 농림수산사업중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시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 2장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

제5조(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수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중 중요사항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중 신청 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
3.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수산정책실장, 각 국·단장(대변인, 감사관, 기

획조정관을 포함한다) 및 청의 기획조정관

2. 농림수산업 관련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청의 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제5조 제2항 각 호의 심의요구가 있는 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의 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안건 심의가 긴급하거나 심의안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의 기획조정관 제6조제2항제2호의 위원은 소집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실무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실무부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기획조정관이 된다.

④ 실무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단장인 위원 소속의 직제상 가장 상위과의 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총괄부서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⑥ 제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를 실무위원회에 준용한다.

### 제 3장 전문가위원회

제11조(전문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수산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신규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부서별로 전문가위원회를 둔다.

② 전문가위원회는 해당 사업부서 소관의 농림수산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사업 선정 및 그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중 신청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농림수산사업의 자문에 관한 사항
4. 사업대상자별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공사업, 3억원 이상의 자율사업중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사업자선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문가위원회 구성) ① 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각 국·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국·단 소속의 과장

2. 해당 사업부서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13조(전문가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전문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전문가위원회 간사) 전문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5조(준용규정) 제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사항은 전문가위원회에 준용한다.

## 제 4장 농림수산사업

제16조 (농림수산사업 신청방법의 공고)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중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2. 농림수산사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3.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4.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군등,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홈페이지에 게시
2. 게시판 게시 및 반상회보 등재

③ 시군등,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수산사무소, 농업협동조합등의 장은 농림수

산사업시행지침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농어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토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농림수산사업의 안내 등) ① 시군등,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수산사무소, 농업협동조합 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지부, 한국농촌공사 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의 장은 당해 기관의 직원중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원은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규모등 농림수산사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 (농림수산사업의 신청 등) ① 농림수산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시군등의 총괄부서, 농업기술센터, 수산사무소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 농업기술센터, 수산사무소 소장 및 사업예정지 관할외의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시군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사업신청서의 내용과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제출할 기관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사서 및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붙여 시장·군수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농어업인 등이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출신청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19조 (농림수산사업신청서의 제출기한) 농림수산사업신청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예정 년도내 사업추진가능 여부와 예산지원범위 등을 감안하

여 추가 사업대상자를 수시로 신청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농림수산사업신청서 검토) ①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접수한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이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신청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지원사업을 제외한 수산사업은 5천만원 이상)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기관에 사업성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것은 농업기술센터
2. 농·축·인삼업과 관련된 것은 농업협동조합
3. 임업과 관련된 것은 산림조합
- 3-2. 수산업과 관련된 것은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사무소
4. 제1호 내지 제3-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

③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신청금액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서류로써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 규정에 의한 대출신청자료
2. 제1호외의 경우는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자 명단

④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사업신청자에게 대출취급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사업성검토와 신용조사의 경우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해당기관에 일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 (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업성검토) ① 제20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시군등의 사업부서 및 총괄부서로부터 사업성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업성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면·동 및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 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 ①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제2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군등의 사업부서 및 총괄부서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제2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신청자료를 생략한 경우에는 신용조사서 대신 불량거래자 또는 대출부적격자 명단을 일괄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농림수산사업신청서의 심사)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와 신용조사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2. 시군등의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3.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의 현황
4. 시도, 시군등 또는 농업협동조합등의 자체 지원계획
5.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6.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
7. 전년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24조(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 ①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및 농림수산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등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순위를 부여 할 수 있다.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한 자

2. 농림수산물부장관과 청장이 개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
3. 산림청·통계청에서 시행하는 농림·수산통계조사의 표본농림어가로써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

③ 시군등의 사업부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는 신청자가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의 가액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사업부서가 작성한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수산사업신청서 등을 붙여서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자치구의 자체 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 심의등) ①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부서 및 총괄부서 등이 상정한 신청자에 대한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제23조,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는 의결로 정하는 농림수산사업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분과위원회(품목별 소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는 당해 소분과위원회를 말한다.)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수산사업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는 구성원중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15조제2호 및 제4호에 정하는 자의 수가 그 최대인원에 미달되는 경우는 그 최대인원을 포함한 30인이내, 수산업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4호 및 제6호에 정하는 자의 수가 그 최대인원에 미달되는 경우는 그 최대인원을 포함한 15인이내,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에 의한 조례로 정하는 자의 수가 그 최대인원에 미달되는 경우는 그 최대인원을 포함한 15인이내로 시장·군수등이 따로 구성하는 전문 심의기구의 심의로써 제1항의 심의에 갈음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지원신청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와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가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수산사업신청서 등을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광역시·도지사는 전문가(전문기관을 포함한다.)를 지정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시군등 및 시도의 농림수산심의회(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체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결로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시군등 및 시도의 농림수산심의회 구성원은 심의 결과에 대해 회의내용이 공개될 때까지 비밀준수의무를 진다.

제26조 (시군등의 예산신청 및 공지)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별로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2월 28일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시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내용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위안 및 지원예정금액 등에 대한 열람장소 및 기간 등을 시군등의 홈페이지, 홍보지 또는 반상회보 등에 실어야 한다.

③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신청인이 원할 경우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지원예정금액, 예산 또는 기타의 사정에 따라 자금지원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지원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27조 (시군등의 예산신청에 대한 시도의 심사 등) ① 시도의 총괄부서는 시군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를 시도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 사업부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를 제23조, 제24조제2항 및 제3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연차별 자금지원계획

2.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금지원계획 또는 시도의 자체 자금지원계획

③ 시도의 총괄부서는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및 소요예산의 조정안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포함한다.)을 시도 농림수산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시도 농림수산심의회는 제23조 및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심의하여야 한다.

⑤ 시도의 총괄부서는 시도농림수산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및 소요예산액을 정하여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의 총괄부서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와 자금지원우선순위 확정내용을 시군등에 통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시도의 홍보지 등에 실을 수 있다.

제28조 (시도의 예산신청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심사) ①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한후 사업별 예산요구안에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붙여 이를 예산편성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및 시군등의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2.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3.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결과

#### 4.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제29조 (정부예산안의 통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정부예산안(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작성되면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로부터 시도 및 시군등의 예산배분계획안을 제출받아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의 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장·군수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시도 예산안에 따라 시군등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사업별 자금지원계획안을 수립하고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포기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영농·영림 또는 영어규모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 (정부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예산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시도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 시도지사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예산의 배분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배분계획과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정년도의 1월 15일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확정권한이 시군등의외의 기관에 있는 경우는 당해 기관이 확정된 내용을 말한다.)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사업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함에 있어 제2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군수등이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제출 받아 제21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의 선순위자

제33조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확정지 공지)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할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시군등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홈페이지와 홍보지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할 때에는 당해 시군등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 등, 한국농촌공사 지사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 제 5장 농림수산사업의 관리

제34조 (경영장부의 기록 등) ① 시장·군수등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사업자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3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농림수산사업 점검 및 평가) ①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농림수산사업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사업이행·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농림수산업무평가규정에 따라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③ 농림수산물식품부는 농림수산사업 효율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농림수산사업에 대해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 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지방자치단체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36조 (농림수산사업의 결산) 시장·군수등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 보조사업의 폐지승인을 얻은 때 및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결산을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익월 1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시군등의 결산서를 근거로 시도의 결산을 하여 익월 20일까지 농림수산물식품부 및 청의 사업담당부서에 결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사업의 관리책임 등) ① 농림수산사업의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등에게 있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 (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물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진도 운영상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고 사업담당자는 사업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하여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은 지원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당해 읍·면·동에 관리대장을 비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에는 별표3의 농림수산사업안내문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등의 입구·몸체 또는 기타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농림수산사업의 계획과 집행 및 사후관리 업무에 참여한 농림수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의 공무원과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등(중앙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모든 관련자료에 실명을 표기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 6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제38조 (신규사업의 제안)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신규로 농림수산업과 관련된 사업(이하“신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수산사업과의 유사성
3. 전문가 등의 경제성 분석 및 지역여론
4. 농어업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마쳤거나 공청회를 거친 경우는 그 결과
5.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신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서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제안한 신규사업에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신규사업의 선정요구) ①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거나 제3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이 있을 때에는 제3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

에는 타당성분석자료에 사업추진계획(안)을 붙여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기관의 의견 수렴과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신규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신규사업 타당성분석자료, 성과평가체계, 평가지표 등을 반영한 사업제안서를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신규사업의 선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분석 결과 신규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 (신규사업의 채택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는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사업의 선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3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업무평가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설치된 농림수산업무심사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신규사업을 심의할 때에는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상 긴급성이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신규사업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1조(전임자문관제)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채택된 신규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이하 “전임자문관제”라 한다)

제42조(시범사업 실시)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농림수산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해당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는 등 충분한 검증을 한 후 본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도상연습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3조(실태조사 실시) 모든 신규사업은 사업개시 후 6월이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대책에 반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신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수정보완지침에 따라 시도 및 시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5조 (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특례) 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사업을 제안한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채택을 확정된 즉시 제33조 규정에 의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신규사업의 채택을 확정된 날부터 2월이내에 제18조 및 제20조 내지 제25조에 정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46조 (준용규정) 청의 장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7장 보 칙

제47조 (자금지원실적의 공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자금지원대상자별 자금지원실적을 시장·군수 등으로 하여금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매체 또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 (농수산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을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별표 4의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당시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업이 이 훈령에 의한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당해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요령에 의한 세부사업지침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1996. 10. 28.>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림사업분류표는 1997. 1. 1.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 ③ (경과조치) 농림수산사업지침심의위원회운영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 부 칙 <개정 1997. 10. 29.>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1998.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 부 칙 <개정 1998. 3. 9.>

- ①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1998. 11.12.>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1999. 1. 1.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 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 2의 규정을 1999.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99. 11.16.>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0. 1. 1.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과 제41조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0. 1. 1 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0. 11. 27.>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12. 21.>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2.1.1.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2002.1.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2. 11. 29.>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2003.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3. 11. 17.>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2004.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4. 12. 17.>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

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4의 규정은 2005.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5. 12. 22.>**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문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4호의 규정은 2006.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6. 12. 29.>**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문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4호의 규정은 2007.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7. 12. 28.>**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문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4호의 규정은 2008.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8. 7. 23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문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4호의 규정은 2008. 7월. 23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별표1 : 제3조제2항 관련]

## 농림수산사업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단위사업명	
		자 율	공 공
합 계(152)		(99)	(53)
제2권 식량·원예분야(45)		(40)	(5)
[식량분야 15]		(10)	(5)
	I.생산기반확충	영농규모화사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개인육종가활성화지원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중규모 용수개발사업 농업용수수질조사개선사업  우수품종증식보급사업
	II.농업기계화	농기계구입지원사업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생산및사후관리지원사업	
	III.생산 및 유통 개선	고품질쌀브랜드육성사업 건조·저장시설지원사업 미곡종합처리장비 매입자금 지원사업 고품질쌀최적경영체육성사업	농작물병해충방제지원사업

대분류	중분류	단위사업명	
		자 율	공 공
제2권 원예부문(30)	I.원예생산 및 유통개선	(30)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시군유통회사설립운영지원 농식품소비지·산지상생협력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원예작물수급안정사업 수매지원(저장용·산지가공) 사업 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인삼계열화사업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농산물자조금 지원 소비지유통활성화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수출업체운영활성화지원사업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사업 농식품시설현대화 생산자유·복합형 식품 제조기업육성지원사업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설치사업 염전생산시설개선사업	(-)

대분류	중분류	단위사업명	
		자 율	공 공
제3권. 농촌개발 및 입업·산촌분야(38) [농촌개발분야 29]	II.과수생산 및 유통 개선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권역별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과실브랜드육성지우너사업	
		과원영농규모화사업	
		과수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과수원정비지원사업	
		(30)	(8)
		(22)	(7)
	I.생산 및 유통개선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구 조정)사업	
생물적병해충방제(천적)사업			
녹비작물종자대지원			
친환경비료지원사업			
농업종합자금지원			
II.기술개발	바이오디젤용유채생산시범사업		
	농림기술개발		
	신기술보급사업		
III.인력육성	창업농업경영인육성		
	농산업인턴제 및 창업농멘토제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		
	농업경영컨설팅사업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 융자지원사업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대분류	중분류	단위사업명	
		자 율	공 공
【 임 업 및 산 촌 분야 9】	IV.소득보전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농업인재해공제사업 농어업인건강보험료지원사업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사업
	V.소득원개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사업 한계농지정비사업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농축산경영자금지원	
	VI.생활환경개선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8)	(1)
	I.경영기반확충	산림경영계획	
	II.생산 및 유통개선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 산림소득증대사업 임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산림바이오매스사업 벌채운재로시설지원 사립수목원지원사업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III.산림자원조성		조림·숲 가꾸기

대분류	중분류	단위사업명	
		자 율	공 공
제4권. 축산·수산분야(42) [축산분야 23]	I. 사육기반확충	(26)	(16)
		(14)	(9)
		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 및 유통비지원 조사료용 기계·장비지원 벧짚 등 부존자원활용지원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지원 조사료용종자구입비지원 조사료가공시설지원 사료산업종합지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마필산업육성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지원 양봉산업육성사업
	II. 생산 및 유통 개선	낙농체험관광사업 가축및계란수송특장차량지원 축산시설현대화사업 가축계열화사업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 브랜드육 타운조성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축산물브랜드컨설팅지원사업 축산종합지도(HACCP)지원사업 축산공제사업 품질고급화장려금지원

대분류	중분류	단 위 사 업 명	
		자 율	공 공
[수산분야 19]	I.생산기반확충	(12)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지원	(7) 수산자원보호구역관리 소규모바다목장사업
	II.생산및유통개선	수산물소비촉진사업 환경친화형양어용배합사료지원 수산생물질병예방백신공급 고밀도부표보급지원사업 양식장HACCP적용지원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III. 기계화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어선기관및장비개량	양식장비임대사업 어업용기자재이동수리소운영
	IV.인력육성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수산업인턴제및창업어가 후견인제	
	V.소득보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 수산부문소득보전직접지불제	어업인정책보험사업 수산인안전공제지원사업

대분류	중분류	단위사업명	
		자 율	공 공
제5권 국가균형 발전 특별회계 (27)		(3)	(24)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배수개선사업 방조제개보수사업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소규모용수개발사업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광역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지원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신활력지역지원사업 농작업편이장비지원 산촌생태마을조성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수산식품거점단조성사업 양식어장정화사업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 어항기반시설조성 어촌·어항관광조성
		향토산업육성사업 특화품목육성사업	

[별표2 : 제4조제2항 관련]

## 농림수산사업 표준 프로세스

분류	프로세스	주 관	시 기	주요내용
기초단계	수요조사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전년도 4월	·지자체는 사업시행 수요조사 실시 ·조사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송부
	예산요구	농림수산 식품부	전년도 6월	·조사물량을 예산요구안에 반영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구
	예산확정	농림수산 식품부	전년도 12월	·사업시행 예산 확정 및 통보
계획단계	사업지침 시달	농림수산 식품부	전년도 12월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 시달(예산 규모등)
	사업신청	사업대상자	당년도 2월	·지자체의 사업홍보 ·사업대상자는 사업기관에 신청
	사업자 선정	농림수산 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2월	·사업자 선정기관은 지원규모, 조건 및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선정(사업비 배정)
추진단계	세부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당년도 4월	·실제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보고 및 승인
	사업시행	사업대상자	당년도 12월	·사업 추진
	자금배정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9월	·분기별 또는 일괄적 자금배정
관리단계	이행점검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10월	·사업시행 및 감독기관 모니터링 여부, 보조금 환수조치 등
	성과점검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12월	·사업 성과지표 달성여부 판단
	사업평가	농림수산 식품부	익년도 3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환 류	농림수산 식품부	익년도 4월	·평가결과 환류(예산편성방향 등)



## 농림수산사업안내문 표준안

### 1. 표준안

####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년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사 업 자 ○ ○ ○

←—————110cm————→

↑  
80  
↓  
cm

주) 공공사업의 경우는 사업자란에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명 및 관리책임자를 기재

나. 준공후 안내문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입니다.

1. 사업명 :
2. 사업자 :
3. 시설규모 :
4. 재원 :
5. 사업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30cm

21cm

다. 스티카형 표지

이 농기계(어선, 차량, 철부선 등)는 ○○○○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 2. 대 상

- 중요사업의 건축물, 공작물, 사업장 등으로서 총사업비가 5천만원이상 투입되는 사업(사업시행자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총사업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의 시설 등

< 예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수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수산물 가공공장, 농수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수산물종합판매장, 어촌민속전시관, 직거래 판매시설, 해양종합수련원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양식단지, 어장정화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건설, 어촌휴양단지, 연안정비, 오염 해역준설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제외사업> <신설 2002. 11. 29>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 3. 표시방법

-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규격 110cm×80cm)
-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카도 가능함

## 4. 기 타

- 농어촌특별세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표시문안을 『이 사업은 ○○○○년도 농(산)어촌구조개선대책사업중 농어촌특별세로 추진되는 사업임』 을 명시함

##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공통지원요건 <개정 2005. 12.>

####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개정 2005. 12. >

#### 나. <삭제 2004. 11. >

#### 다. <삭제 2004. 11. >

#### 라.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개정 2008. 7>

#### 마.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어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 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개정 2007. 12.>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4이상인 법인<신설2006.12. >

#### 바.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 사.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다만,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7. 12>

#### 아. 농수산업법인 경영체를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후 선정할 것 <신설 2002. 11. 29>

#### 자. <삭제 2008. 7>

#### 차.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수산정보 활용방

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영어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개정 2005. 12. >

카. <삭제 2007. 12.>

타. 재무제표 징구<신설2006.12. >

## 2. 사업별 지원요건 <개정 2002. 11. 29>

-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 3. 사후관리기준

가. <삭제 2002. 11. 29>

나.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다.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라. <삭제 2005. 12.>

마. <삭제 2005. 12.>

바. 농수산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사. <삭제 2005. 12.>

아.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농수산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수산업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자. <삭제 2006.12.>

차. <삭제 2005. 12.>



# 농림 사업 계획서

##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ha)	벼	사과	배	포도				계	
시 설 현 황	개 별 시 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	ha	m <sup>2</sup>	m <sup>2</sup>	대			
		점적관수 :							
		스프링클러 :				(    톤)			
	공 동 시 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m <sup>2</sup>	개 소 (    톤)	식	대 (    톤)	m <sup>2</sup>			
<p>(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p>									
기 타 사 항									

## 2. 사업계획

○ 사업명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농가	○ ○ ○ ○								
	○ ○ ○ ○								
	○ ○ ○ ○								
생산 자단 채등, 회사, 기타	공 동 시 설								
	○ ○ ○ ○								
	○ ○ ○ ○								
	기 타 시 설								
	○ ○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 “ ←→ ”로 표시

### <작성요령>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 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 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275-0052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수산 자율 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성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호		전화 번호	( ) -
	주소					
	영어종사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 ) 과)	졸업 중퇴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어가수	호	
신 청 내 용	사업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어업면허				
		종류	허가번호 (허가기관)			
	사업비 (천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
국고계 (%)			보조 (%)	융자 (%)		
사업내용별 규모 (량)						
<p>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p>						

-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액이 3천만원(어업인후계자 지원사업은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수산 사업 계획서

### 1. 사업의 개요

###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 3. 사업 수행계획

### 4. 사업금액의 산출기초

### 5. 보조(융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6.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 7. 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 8. 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별지 제2호서식 : 제18조제5항 관련]

## 대출신청자료

###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생산자단체등의 형태		참여자수			
성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업 예정지							

###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금 현황			융자금 현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계	예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 제21조제1항 관련]

## 사업성검토서

### 1.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참여자수		
성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계	보조	대출	
사업예정지					자담	

###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구역	지구	구역	지구

### 3. 사업검토

구분		평가			검토의견
		상	중	하	
사업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농·어경력</li> <li>○ 후계(어업)인력 또는 조직력</li> <li>○ 영농·어기술 또는 경영능력</li> <li>○ 영농·어 규모</li> </ul>				
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의 적정성</li> <li>○ 사업전망</li> </ul>				
입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이용계획</li> <li>○ 생산 또는 원료조달</li> <li>○ 용수</li> <li>○ 전력</li> </ul>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 ○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 제22조 관련]

## 신 용 조 사 서

###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 번호	(            ) -            )	
생산자단체등· 회사·기타명칭		주민(사업자) 등록 번호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천원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별지 제5호서식 : 제34조제1항 관련]

경 영 장 부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성명 또는 명 칭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   년   월말 현재)

경영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3ha, 젓소200두)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계					
부 동 산 보 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기타
	m <sup>2</sup>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 타
기타주요 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3. 월별경영수지(   년   월분)

일자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필요시 별도의 보조부 작성

4. 경영성과( - )

구 분	내 용	수 량	금 액(천원)	비 고
수입	주 산 물			
	부 산 물			
	계(A)			
지출	종자(묘)대			
	농약 및 비료대			
	원료구입비			
	전기료 및 유류대			
	기타 제재료비			
	小농구 구입비			
	소가축 구입비			
	인 건 비			
	수 리 비			
	농기계사용료			
	임차료(토지임차료 제외)			
	토지임차료			
	시설장비 등의 감가상각비			
	농기계 감가상각비			
	차입금이자			
	자본용역비			
	기타비용			
	계 (B)			
손익	A - B			



< 작성요령 >

- 지원금액이 3천만원(후계농업경영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 경우는 2천만원, 수산사업의 경우는 5천만원)이상인 경우 작성하되 사업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을 변경할 수 있음
- “3. 월별경영수지”중 수입 및 지출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작성
  - 고정비 : 토지·건물·시설·기계·장비의 구입 또는 설치비, 번식 또는 사육용 대가축 및 증가축구입비, 종묘구입비 또는 위의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권리금 등 재산형성적 비용
  - 변동비 : 종자·농약·비료·원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가축구입비, 소농구구입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등 소모성 비용
- 경영성과는 연말에 작성하되 월별경영수지 및 그 보조부에 의함(가계비는 외함)
  - 소농구 구입비 :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제외한 삽, 낫, 팽이 등 구입비
  - 인건비 : 실제 지불된 인건비와 자가노력비(지역노임을 기준하여 산출)
  - 임차료 : 연간 지불한 임차료의 금액(전세보증금의 경우는 보증금액의 10% 해당액)
  - 토지임차료 : 빌린 토지의 경우는 지불하는 임차료를, 자기토지의 경우는 인근의 토지임차료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건축물 및 시설장비 등 고정자산구입비 또는 농기계구입비(소농구구입비 제외)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개정 2002. 11. 29>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개정 2003. 11. .>

구조물 또는 자산의 명칭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5년	4년-6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물탈조, 기타조의 모든 건축물	20년	15년-25년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축물	40년	30년-50년

·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개정 2003. 11. .>

적용대상자산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농업(과수는 제외) 및 관련 서비스업,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건설업	5년	4년-6년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음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0년	8년-12년
농업중 과수	20년	15년-25년

· 내용년수범위는 사업자가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는 범위이며, 사업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그 내용년수를 기준함

- 자본용역비 : 大농기계구입, 시설물설치, 시설장비구입 등 고정자산구입가액 (보조지원금액은 제외)의 10% 해당액

[별지 제6호서식 : 제34조제2항 관련]

경 영 일 지

월 일	수 입			지 출			잔 액 (천 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월 1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 계							

(주) 지원금액이 15백만원이상 3천만원(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작성



### Ⅲ.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해설



## 1. 배 경

- 농림수산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필요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을 제정하여 1996. 8. 1부터 시행

### <'97. 10. 29 주요개정사항>

- 지원대상자의 동의에 의해 지원실적을 공개하도록 개선
- 회계연도말까지 용자금 배정신청이 없을 경우 이월사용하거나 불용처리
- 자금신청에 의한 용자한도액 배정 및 배정일자별 대출관리토록 명시

### <'98. 7. 23 주요개정사항>

- 사업자금(자부담금 포함)의 집행실적에 의한 입증서류의 범위 명시
- 회계연도 종료 및 사업완료시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의한 검정실시
- 부당 대출금 회수시 위약금 징수조건 강화, 정책자금 지원제한 보장

### <'98. 12. 19 주요개정사항>

-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추진상황 등을 검토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대출마감일을 연장승인할 수 있도록 명시
-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여신관리계좌마감일을 경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업추진상황을 검토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

### <'99. 11. 8 주요개정사항>

- 농림사업시설설치에 따라 환급받게 되는 부가가치세액을 정책자금지원사업비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
- 농림사업비의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당해 금액만큼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근거규정 명시
-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기간 만큼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신관리계좌 운용에 관한 조항을 삭제

<'02. 11. 20 주요개정사항>

- 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않는 자금에 대해 연장할 수 있는 기한을 다음연도 6월말까지로 명시
- 대출마감일 연장기관을 사업자금과에서 사업지원과로 변경
-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1천만원미만 또는 사업지원과가 정한금액 범위내에서 공급자의 자필서명 자료를 증빙자료로 인정
- 대여금 반납기한 연장(회계년도 1. 10 → 1. 20)

<'03. 11. 10 주요개정사항>

- 연간 3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비의 1/6의 범위내에서 자가노무비 인정
- 자가노무비(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는 1인에 한해 인정

<'05. 12. 22 주요개정사항>

- 사업비(자부담 포함) 집행시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이하 “금융기관 거래자료”라 한다)를 명확히 함
-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 등)은 사업대상자가 사업비(자부담 포함)를 전액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확인
- 사업자등록증미소지자의 자필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증빙자료로 인정
- 연간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노무비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외의 자에게 지급시 자필 영수증외에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 등)은 확인

<'07. 2. 28 주요개정사항>

- 별도의 개별규정자금에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포함



<'08. 8. 1 주요개정사항>

- 정부조직 개편으로 훈령 명칭을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으로 변경 등(부처명칭 변경, 수산 부분 포함)
- 지원대상자 추가 “어업인, 어업관련 생산자단체, 원양산업 종사자, 어촌)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은 별도의 규정으로 동 규정 적용에서 예외인정
- 부당사용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이 2년이상인 경우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및 정황등을 참작하여 사업지원과의 승인을 얻은 경우 지원제한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도록 예외 인정

<'08. 12. 8 주요개정사항>

- “산림사업종합자금”은 별도의 규정으로 동 규정 적용에서 예외인정
- 지원 제한 기산일 이전에 이미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시설물 설치공사가 착공되어 진행중인 사업은 사업지원과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할 수 있음
- 일반회계 이차보전사업, 농특회계 용자사업에 대한 검사업무를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함

<'08. 12. 주요개정사항>

- 부칙(경과조치) 신설
  - 이 훈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원칙은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유보하되, 2009년도 자부담금 집행은 공사진도에 따라 국고분 집행시 마다 자부담 비율만큼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음

## 2. 주요골자

### <기 본 방 향>

- 사업자금의 신속한 지원 도모
- 예산회계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응하는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제도 정립
- 사업자금을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유도

#### 가. 자부담금 우선 집행후 지원비율에 의한 사업자금 지원

-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사업주관기관이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
  - 다만, 당초 사업비를 초과하여 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에서 제외

※ 이 훈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원칙은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유보하되, 2009년도 자부담금 집행은 공사진도에 따라 국고분 집행시 마다 자부담 비율만큼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음('08. 12. 부칙(경과조치))

- 자부담금 우선 집행 및 사업자금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의 범위
  - 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노무내역,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명세 확인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을 사업실적의 증거서류로 인정
  - 사업자등록증미소지자는 자필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작성한 증거서류로 인정

#### 나. 사업자금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 부당사용금액 회수
  -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받은 날부터 연체금리 적용

- 부당사용금액의 크기 또는 사업비에 대한 부당사용금액의 비율에 따라 다음 기간중 사업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당해인, 사업자금과, 사업지원과, 농협중앙회, 대출취급기관, 보조금집행자, 농림부장관(농업금융과장)에게 통지
  - 금액 10억이상, 비율 50%이상 : 5년간 지원제외함(50%이상 금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는 3년)
  - 금액 5-10억원 미만, 비율 30-50%미만 : 3년
  - 금액 1-5억원 미만, 비율 20-30%미만 : 2년
  - 금액 1억원 미만, 비율 20%미만 : 1년
- \* 2이상에 해당될 경우는 그중 기간이 긴 것을 적용

#### 다. 사업의 검정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 종료시 또는 사업완료시 세부사업내용과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노무내역,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명세 확인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영수증, 동 세금계산서 또는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중 하나에 의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미만 또는 사업지원과가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에 의하여 사업 검정 실시

#### 라. 용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요구 절차

- 사전에 사업지원과가 매월마다 【시·도→시·군(사업주관기관)→지원대상자→시·군(지원대상자가 다음달까지 사용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신청)→시·도→사업지원과】의 과정을 거쳐 용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요구(사업주관기관이 시·군이 아닌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이 직접 사업지원과에 배정요구)

#### 마. 대출원장 관리

- 용자한도액 배정일자별로 구분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월 2회이상 대출촉구

## 바. 예산의 이월 사용

-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음
  - 대여된 금액을 이월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말 이전에 회수한 후 예산이월할 수 있음
- 용자한도액이 배정되어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반납하여야 함
  - 다만, 당해 회계연도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추진상황, 연장사유등을 사업지원과가 검토하여 연장결정한 후 대출하여야 함

## 사. 대출기한내에 대출이 불가능한 용자한도액의 반납

- 대출기한(당해 회계연도 말 : 제10조제2항)내에서 사업주관기관이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대출취급기관 경유 농협중앙회 등에 반납하도록 통지(10일이내의 납기명시)
  - 납기내 반납시 :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적용
  - 납기후 반납시 : 납기한까지는 납기내 금리, 그 후는 연체금리 적용

## 아. 대출기한이 경과한 용자한도액의 반납

- 대출취급기관이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되지 않은 금액을 사업주관기관 및 농협·산림조합 중앙회에 통지하면
  - 사업주관기관은 당해 금액의 대출불가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
- 동중앙회는 지체없이 반납
  - 대여일부터 다음회계년도 1. 20까지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적용
  - 다음회계년도 1. 21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는 연체금리 적용



### 3. 주요 변경사항

사 항	'99.11.7.이전	'99.11.8~'02.11.19	'02.11.20~'03.11.10	'03.11.11~'05.12.31	'06.1.1이후
①자부담금 우선집행 후 사업 자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금집행 증거 자료를 거래당사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에 한함)의 자필서명에 의한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의 입출금 거래장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한(제4조제3항 및 제5항)</li> <li>○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외의 자에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지역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 (제4조제6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관기관의 연간 사업비이외에 사업자가 추가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원칙에서 제외 (제4조제2항)</li> </ul>	(좌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3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비의 1/6범위 내에서 자가노무비 인정 (제4조제6항)</li> <li>- 자가노무비(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는 1인에 한해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은행 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이하 “금융기관 거래자료”라 한다)를 증빙자료로 명확화 (제4조제5항)</li> <li>-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사업비(자부담 포함)를 전액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증빙자료 확인</li> <li>- 사업자등록증미 소지자는 자필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증빙자료로 인정</li> <li>○ 연간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소지자외의 자에게 지급시 자필 영수증외에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주관기관이 확인(제4조제6항)</li> </ul>
②원료사업의 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 종료 또는 사업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집행증거 자료에 따라 검정 실시(제4조제7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정시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제4조제7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사업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 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미만 또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원과가 금액을 정한 경우 그 금액 범위내에서 농산물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인정 (제4조제5항)</li> </ul>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③리스방식으로 도입한 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당해 금액만큼 용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지급제외</li> </ul>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 ① 자부담금 우선집행원칙은 '09년도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부칙 경과조치 참조)

사 항	'99.11.7.이전	'99.11.8~'02.11.19	'02.11.20~'03.11.1	'03.11.11~'05.12.31	'06.1.1이후
③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개이상의 사업 또는 2회계년도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 사용사유가 동시에 확인된 경우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지방비 및 자부담금 포함)으로 지원제한기간 적용(제16조제2항 및 제3항)</li> <li>○ 이미 지원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는 당해 지원 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제16조제2항)</li> </ul>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제한이 2년이상인 경우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사업지원과의 승인을 얻은 경우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단축가능</li> <li>○ 지원제한 기산일 이전에 시설물 공사인 경우 사업지원과의 승인을 얻은 경우 지원 가능</li> </ul>
④용자및 보조 한도액 배정 요구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에 사업지원과가 매 월마다 『시도→시군등(사업주관기관)→지원대상자→시군등(지원대상자가 다음 달까지 사용 가능한 금액을 신청)→시도→사업지원과』의 과정을 거쳐 용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 요구(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이 아닌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이 사업 지원에 직접배정 요구)(제7조의2, 제13조제5항)</li> </ul>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⑤대여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자한도액이 배정 되면 사업지원과가 시도 또는 사업주관기관에 배분하고(제7조의3제2항 별지 제1호서식)</li> <li>- 시도는 시군등에 재배분(제7조의3제3항 별지 제2호서식)</li> <li>○ 이를 농·축·임·삼협중앙회에 통지한 때 대여(제8조제1항)</li> </ul>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⑥대출 원장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구분 관리(제8조제10항)</li> <li>- 사업주관기관은 지원 대상자별 대출예정 금액을 확정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지(제7조의3제4항 별지 제3호서식)</li> <li>- 대출취급기관은 월 2회이상 대출 촉구(제7조의3제6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구분 관리(제8조제7항)</li> <li>-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지(제7조의3제4항 별지 제3호서식)</li> <li>- 대출취급기관은 월 2회이상 대출 촉구(제7조의3제6항)</li> </ul>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사 항	'99.11.7.이전	'99.11.8~'02.11.19	'02.11.20~'03.11.10	'03.11.11~'05.12.31	'06.1.1이후
⑦ 융자금 예산의 이월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할 수 있음(제5조제1항)</li> <li>○ 당해 회계년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현저한 사정 변경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년도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자금 과에 대출마감일 연장신청을 하여 연장 연장승인을 받아 대출(제10조제1항)'98.12.19개정)</li> </ul> </li> </ul>	(좌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지원과는 사업 주관기관의 요청을 받아 사업 추진 상황과 현저한 사정 변경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 연도 익년 6월 말까지 대출기한 연장가능(제10조제1항)</li> <li>○ 사업지원과는 다음 연도 6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대출되지 않은 자금에 대해 일정한 경우 8월말까지 재연장 가능(제10조제2항)</li> <li>○ 다음년도 7.1이후에 대출이 예상되는 자금을 당해 회계 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음</li> </ul>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⑧ 대출 기한 도래 전에 대출 불가능한 용자 한도의 액의 반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관기관이 매 분기말 현재 대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대출 취급기관 경유 농협중앙회등이 반납하도록 통지(10일 이내의 납기 명시)(제8조제6항 별지 제4호서식 및 제8항)</li> <li>- 납기내 반납시 : 1년 만기정기예금 금리 적용)</li> <li>- 납기후 반납시 : 농협 중앙회 등의 여신관계 규정이 정하는 연체금리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관기관이 매 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대출취급기관 경유 농협중앙회등이 반납하도록 통지(10일 이내의 납기 명시)(제8조제4항 별지 제4호서식)</li> <li>○ 대출취급기관이 매 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하다고 판단될때는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면 사업 주관기관은 사실을 확인후 대출취급기관을 경유 농협중앙회등이 반납하도록 통지(제8조5항 별지 제4호서식)</li> <li>○ 반납이자(제8조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기내 반납시 : 1년 만기정기예금 금리 적용)</li> <li>- 납기후 반납시 : 농협 중앙회등의 여신관계 규정이 정하는 연체금리 적용</li> </ul> </li> </ul>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사 항	'99.11.7.이전	'99.11.8~'02.11.19	'02.11.20~'03.11.10	'03.11.11~'05.12.31	'06.1.1이후
⑨대출 기한	○ 당해 회계년도 말 (제10조 제2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⑩대출 기한이 경과한 용자 한도액의 반납	○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반납하여야 하나, 현저한 사정 변경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금과에서 연장승인을 한 경우 연장된 기간까지 대출 (제10조제1항)('98.12.19 개정) ○ 대출취급기관이 회계년도말까지 대출 안된 금액을 사업주관기관 및 농·축·임·삼협 중앙회에 통지하면 (제10조제2항 별지 제5서식) - 사업주관기관은 대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제10조 제5항 별지 제6호 서식) ○ 동중앙회는 지체없이 반납(제10조제4항) - 대여일부터 다음 회계년도 1. 10까지는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 적용(제10조 제4항제1호) - 다음 회계년도 1. 11.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는 연체 금리 적용(제10조제4항 제2호)	(좌와 같음)	○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20.일까지 반납(대출마감일 연장승인 금액은 제외)(제10조제3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⑪여신 관리 계좌 운용	○ 대출취급기관이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여신 관리계좌에 입금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대상 부지의 확보,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의 취득 등을 확인 받아야함 (제12조제1항)	○ 여신관리계좌는 '99.12.31일까지 운영 하고 2000.1.1부터 폐지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사 항	'99.11.7.이전	'99.11.8~'02.11.19	'02.11.20~'03.11.10	'03.11.11~'05.12.31	'06.1.1이후
⑫ 여신 관리 계좌 입금액중 마지막액 등의 반납	○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대상자가 여신관리계좌입금시 제출한 월별 공정 계획상의 매월 소요 금액을 당해 월의 말일까지 지급 신청이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 사업주관기관의 명에 따라 입금액 반납(제12조제3항)	○ 여신관리계좌는 '99.12.31일까지 운영 하고 2000.1.1부터 폐지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 여신관리계좌마김 일(예산계상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반납하여야 하나 현저한 사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금과에서 연장 승인을 한 경우 연장된 기간까지 대출 ('98.12.19개정)	○ 여신관리계좌는 '99.12.31일까지 운영 하고 2000.1.1부터 폐지 ※ '99.12.31일까지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예산에 계상된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여신관리계좌를 운영할 수 있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⑬ 부당 사유 대출 금의 회수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사업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일(고의성이 있는 경우 부당사용 개시일)부터 연체금리를 소급 적용하여 회수. 다만, 부당사용의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날부터 적용 (제1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⑭ 지원 실적의 공개	○ 대출취급기관이 대출 시와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원대상자로부터 차 후에 지원 실적을 시·군·구 및 농·수협, 산림조합의 홍보지, 농업인 교육 자료, 반사회보 등에 공개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음(제18조제3항)  - 공개 근거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0조에 명시됨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 4. 해 설

### < 일 러 두 기 >

- 이 훈령은 농림수산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
  - 이 훈령의 위임을 받은 사항 또는 이 훈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훈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별규정이나 사업시행지침에 상세하게 정할 수 있으므로
  - 실무에 있어서는 사업자금별로 개별규정이나 사업시행지침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다만 개별규정의 내용이 이 훈령에 어긋나는 경우는 이 훈령의 +범위내에서만 효력이 있음

#### 가. 정의(제2조)

- 1) **사업자금** :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국고, 기금, 자금,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농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직접 집행관리하거나 농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감독 권한이 있는 것(제2조제1호)  
[예] 국고(일반회계, 농특회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산발전기금, 농·축산경영자금
- 2) **지원대상자** : 농어업인, 임업인,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과 관련된 업에 종사하거나 농촌과 관련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중 사업자금의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제2조제2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수산업법제2조제11호규정에 의한 **어업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
  - **생산자단체등**(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 농·수협·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5인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
    - 농림수산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어업인등의 공동조직 (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농림수산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농어촌과 관련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3) 지원 : 용자, 보조, 투자, 출자, 출연,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제2조제3호)
- 4) 집행관리 : 지원에 따른 사업자금의 배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결정, 수표의 발행, 지급, 용자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수납 등의 행위(사업자금 상호간의 행위 제외)를 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된 세부 사무처리 절차 및 사후관리 지침 등을 작성하는 것(제2조제4호)
- 5) 사업자금관리자 :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식품부 또는 농촌진흥청·산림청(청)외의 기관(제2조제5호)
- [ 예 ] 농특회계(용자 : 농업정책자금관리단), 농지관리기금(한국농촌공사 기금관리처), 축산발전기금(농협중앙회 기금사무국)
- [설명] 농식품부 또는 청이 직접 집행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사업자금과”에 해당됨
- 6) 사업자금과 : 농식품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제2조제6호)
- [예] 농특회계(용자업무 : 농업금융과, 자금한도액 배정 및 보조업무 : 운영지원과), 농안기금(유통정책팀), 농지관리기금(농지과), 축산발전기금(축산정책팀), 농축산경영자금(농업금융과)

7) 사업지원과 : 농식품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제2조제7호)

8) 사업주관기관 :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용자한도액 범위안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금액을 확정하는 행위 포함)하는 행정기관 또는 농협중앙회등으로서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것(제2조제8호)

- 행정기관 : 농식품부, 청, 농림부 및 청의 산하관서, 시도, 시군 등, 농업기술센터 등

[설명] 읍면동은 시군등의 업무중 일부를 보조하는 기관이므로 사업주관기관이 될 수 없음

- 농협중앙회등 : 농협·산림조합중앙회, 법령에 의하거나 농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용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설명] 한국농촌공사는 농지관리기금의 용자업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용자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주관기관이 될 수 있음

9) 개별규정 :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외에 개별적으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제외한 것(제2조제9호)

[설명] 사업시행지침은 이 훈령과 개별규정의 범위내에서 사업추진과 관련된 자금집행의 상세한 요령을 정한 것으로써 개별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의 원칙과 절차를 포괄적으로 정한 개별규정과 구별됨

## 나.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조)

- 1)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이 이 훈령에 위배되는 때에는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은 이 훈령의 범위안에서만 효력을 가짐(제3조제1항)

[설명] 이 훈령에 위배되는 개별규정의 효력이 없더라도 혼동을 막기 위하여 개별규정중 이 훈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이 훈령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함

- 2) 대출기간이 1년미만인 자금, 농축산경영자금, 영어자금,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이 훈령중 다음 사항에 대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정할 수 있음(제3조제2항)

- 자부담금 우선집행(제4조제2항)
- 매 분기말 기준으로 용자·보조 등 비율을 일치시켜 집행(제4조제3항)
-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용자한도액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절차(제7조의2)
-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한 용자한도액의 반납(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 회계년도 말까지 대출되지 않은 용자한도액의 반납(제10조)
- 부당사용사유 발생시의 지원제한(제16조)

[설명] 대출기간이 1년미만인 자금은 수매비축 등 단기 회전성 자금이고 농축산경영자금은 농협 자체자금으로 구성된 사업자금에 정부가 그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어 이 훈령에 정한 일반적인 집행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움

#### 다. 집행의 원칙(제4조)

- 1) 사업자금은 그 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 이 훈령의 범위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개별규정, 사업시행지침 또는 예산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제4조제1항)
- 2)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집행**하게 하여야 함(제4조제2항)
  -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비율이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이상일 경우는 사업착수시 및 공정을 50% 진척시부터 각각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금액의 반액씩 집행하고
  - 그외의 경우는 착수시부터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금액 전액을 집행

※ 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이외에 사업자가 추가 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원칙에서 제외(제4제2항)

[설명] 자부담을 안하고도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한편 종전에 일부사업에서 적용하던 자부담금 예치제도는 폐지함

※ 이 훈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원칙은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유보하되, 2009년도 자부담금 집행은 공사진도에 따라 국고분 집행시 마다 자부담 비율만큼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음('08. 12. 부칙(경과조치))

- 3)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에 대출취급기관 또는 보조금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함(제4조제3항)
- 4) 용자한도액중 매 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한 금액 및 회계년도내에 대출되지 않은 금액이 있어 이를 반납한 경우는 지원비율 적용시 반납한 금액에 해당하는 용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봄(제4조제4항)

- 5) 사업자금(자부담금 포함)의 집행확인은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사업실적의 증거자료로 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사업비(자부담 포함)를 전액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 다만, 농산물을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범위내에서 농산물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도 증거자료로 인정(제4조제5항)
- 사업실적에는 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노무내역,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명세 확인

[설명]

정책자금의 유용이나 불법·부당한 자금지원을 방지하고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집행 입증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만약 사업자가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직접 시공하더라도 사업집행의 검정 및 정산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면 가능함

- 6) 연간사업비가 3천만원미만인 사업의 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에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영수증을 받은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역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범위내에서 증빙하고,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주관기관이 확인

또한, 사업비의 1/6의 한도내에서 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1인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하에 지급할 수 있음(제4조제6항)

[설명]

노무비의 경우도 용역업체 등에서 증빙자료 확보가 가능하나 특히 3천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은 수급인(노무자)이 자필 서명한 영수증외에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주관기관에서 확인토록 하였음.



그러나, 연간 3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비의 1/6의 한도내에서 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가 노무내용을 확인하여 1인에 한해 인정함으로써 실제 농업인이 노동력을 투입하거나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비용을 인정. 다만, 이미 착수하여 시행한 사업일 경우 이러한 증빙자료의 사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노무비 지급이 정당하고 확인가능한 증빙이 첨부된다면(금융기관 입출금 전표 등)시장·군수가 사업별로 판단하여 사업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

- 7)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시와 사업완료시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여야 함(제4조제7항)

[설명]

사업실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시설의 외형만 형식으로 확인하는 사례가 있고 사업비의 집계표를 검정서류로 대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농림수산사업자금지원시설 설치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정책자금지원대상 사업비에 포함하여 정산하는 사례방지

- 8)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가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당해 금액만큼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제4조제9항)

[설명]

농림수산사업에서 자부담비율을 설정한 것은 일정한 자금능력이 있는 자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있으나, 리스방식은 원리금상환부담, 담보확보에 지장등 농림사업의 건전한 경영체 육성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총지원사업비중 리스로 도입한 시설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사업비지원에서 제외

라. 이월(제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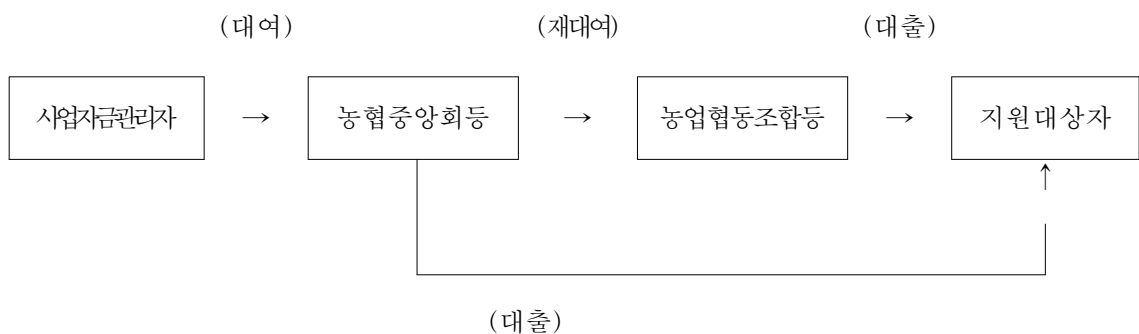
- 당해 회계년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부득이 지출하지 못한 사업자금은 사업자금의 예산을 담당하는 과가 사업지원과의 신청을 받아 이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음(제5조)
  - 농협중앙회등에 이미 대여한 금액은 당해 회계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이월할 수 있음(제10조 제1항 제3호)
  - 이월은 다음 회계년도 1월 30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함
  - 이월한 사업자금은 다시 이월할 수 없음

마. 용자의 절차(제6조 내지 제8조제5항)

1) 지원조건은 사업자금과가 이를 결정 및 변경함(제6조제1항)

- 지원대상자의 대출기간 연장 요구에 따른 용자조건 변경은 사업지원과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에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제6조제2항)
  -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자금과와의 합의를 거쳐 직접처리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사업자금과와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함
- 지원대상자의 대출기간 연장요구에 따라 용자조건을 변경할 경우는 사업자금과가 세입담당과와 사전 협의해야 함(제6조제3항)

2) 용자의 방법(제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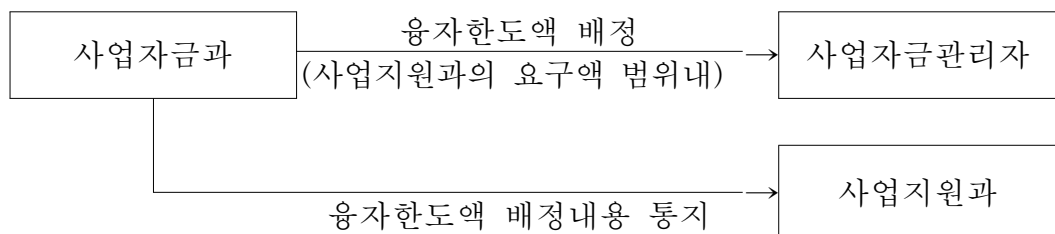
(3) 용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제7조의2)

- 사업지원과는 매월 다음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용자한도액 배정 요구(제7조의2제1항)
  - 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인 경우는 시도
  - 기타의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
- 시도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함(제7조의2제2항)
- 사업주관기관(시군등 포함)은 『회계년도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게 함(제7조의2제3항 내지 제5항)

[주] 사업추진상황과 관계없이 자금을 앞당겨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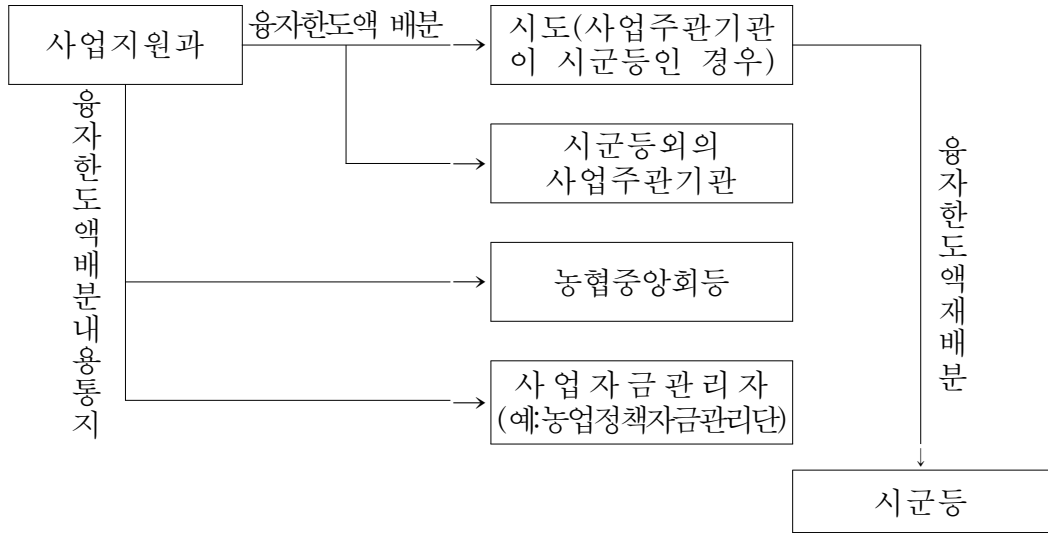
(4) 용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제7조의3)

- 용자한도액 배정 절차(제7조의3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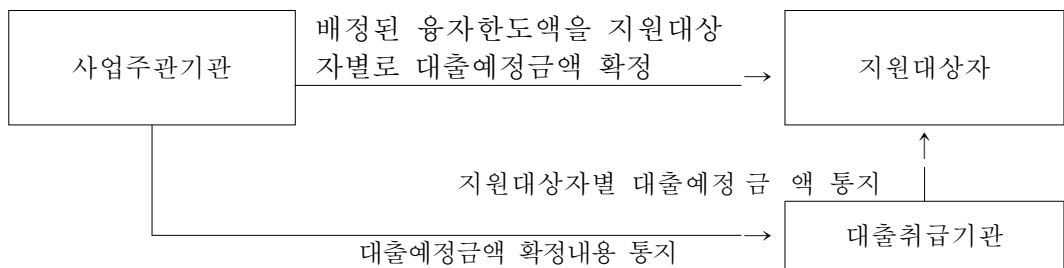
[설명]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경우는 정부가 직접 집행관리를 하므로  
사업자금 관리자에 대한 배정절차가 없음

- 배정된 용자한도액의 배분 및 재배분(제7조의3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항 별지 제2호서식)



- 시도는 시군등에 용자한도액을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시도단위)에 통지

- 대출예정금액의 확정(제7조의3제4항 별지 제3호서식, 제7조의3제5항 내지 제7항)



- 대출취급기관은 매월 2회이상 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하게 대출을 완료하도록 촉구(제7조의3제6항)
- 대출촉구시는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제7조의3제7항)

(5) 대여 및 대출의 실행(제8조)

-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지원과가 용자한도액을 배분하였다는 내용을 통지받은 후 농협중앙회등으로부터 대여신청이 있는 경우에 자금을 대여하여야 하며, 용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여하여서는 안됨(제8조제1항)
  -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는 농협중앙회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대여신청을 한 경우 사업자금관리자는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함(제8조제2항)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성격상 사업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실적을 확인받아 대출을 실행함**(제8조제3항)

바. 대출불가능한 대여금의 반납(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 1)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이 매월 2회이상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신속한 대출을 촉구한 내용과 **매분기말** 현재의 사업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년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당해 금액에 상응하는 용자한도액(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을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도 알려야 함**(제8조제4항 별지 제4호서식)

<반납시 다음의 금액을 함께 납부 : 제8조제6항>

-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내 반납시는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금액
-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반납일의 전일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

2) 대출취급기관은 매분기말 현재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년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당해 회계년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0일 이내의 반납기한을 정하여 당해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함(제8조제5항 별지 제4호서식)

<반납시 다음의 금액을 함께 납부 : 제8조제6항>

-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날후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금액
-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

사.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의 배정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원장을 관리하여야 함(제8조제7항)

[설 명]

- 종전에는 융자한도액 잔액기준으로 대출원장을 관리함에 따라 배정된 융자한도액의 지원대상자를 알지 못하여 대출촉구 등 신속대출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대출지연요인으로 작용

아. 회계년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제10조)

- 1) 당해 회계년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함. 다만, 사업주관기관은 현저한 사정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년도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별로 그 사유 및 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사업지원과에 대출마감일 연장을 요청한 후 대출마감일 연장승인을 받아 대출(제10조 제1항)

- 2) 대출취급기관은 당해 회계년도 말까지 대출되지 않은 용자한도액(대여금)을 지체없이 농협중앙회 등, 사업자금관리자,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함(제10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않는다는 뜻을 지원대상자에게 지체없이 개별 통지함(제10조제5항 별지 제6호서식)
- 3) 농협중앙회 등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회계년도를 경과한 용자한도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지체없이 반납해야 함(제10조제3항)

<반납시 다음의 금액을 함께 납부 : 제10조제4항>

-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
  1. 20(1. 10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 또는 대출마감일 경과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금액
- 다음 회계년도 1. 21부터 또는 대출마감일 경과 11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금액

[설 명]

- '96. 7. 31까지는 『용자종결기한』제도를 두어 용자한도액(대여금)을 다음 회계년도내에서 매분기 단위로 연장했고, '98. 8. 1.부터는 『용자종결기한』을 폐지하는 대신 대출불가능한 대여금의 매분기말 반납제도를 채택하였으나 實效性이 적어 '98. 1. 1.부터는 배정된 용자한도액(대여금)이 당해 회계년도내에 대출되지 않으면 반납하도록 하였으나, 획일적으로 회계년도 종료후 미대출된 용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99. 12. 19부터는 현저한 사정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마감일 연장조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으나, 대출마감일 연장기한(최소한의 범위내에서)이 불명확하여 연장 가능기한을 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로 명시
- 또한, '02. 11. 20일부터 대출마감일 연장부서를 사업자금과에서 사업지원과로 변경

자. 대여금 또는 대출금의 이자는 대여일 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함(제1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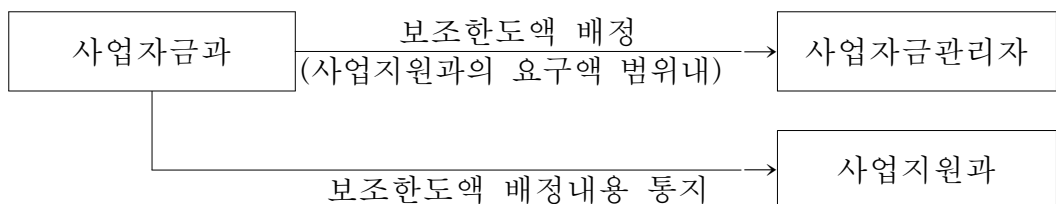
- 1) 대여금의 이자는 개별규정에 납부일자를 따로 정할 수 있음(제11조제1항)
- 2) 다음의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의 이자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음(제11조제2항)
  - 금융기관외의 기관이 대출취급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차. 보조금의 집행(제13조)

- 1) 보조금 교부결정시 붙여야 할 조건(제13조제1항)
  -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사업을 다른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보조금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
  - 부당사용으로 제재대상이 될 경우는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 집행자에게 반환하게 한다는 사항
  -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간중 그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자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
  - 기타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이나 사업지원과 또는 보조금 집행자가 정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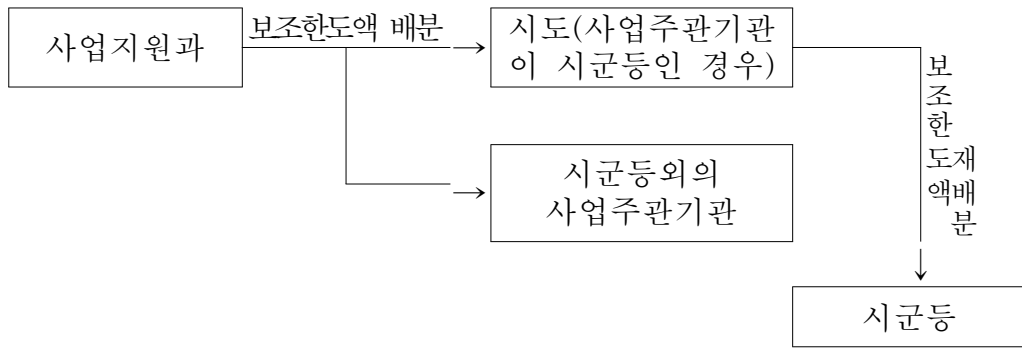


- 2) 보조금은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함(정산지급 원칙)(제13조제2항)
  - 사업의 성격상 실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는 개산 지급후 정산할 수 있음
- 3)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제13조제3항)
- 4) 보조금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의 검정실시내용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함(제13조제4항)
- 5) 보조한도액의 배정절차 등 (제13조제5항)
  - 사업지원과는 매월 다음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보조한도액 배정요구(제7조의제1항 준용)
    - 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인 경우는 시도
    - 기타의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
  - 시도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금액을 제출하게 함(제7조의제2항 준용)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로부터 『회계년도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게 함(제7조의제2항 준용)
  - 보조한도액 배정, 배분, 재배분
    - 배정(제7조의제3항)



[설명] 국고,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등은 정부가 직접 집행관리를 하므로 사업자금관리자에 대한 배정절차가 없음

- 배정된 보조한도액의 배분 및 재배분(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



타. 제재(제14조 내지 제18조)

1) 부당사용한 대출금의 회수(제14조)

- 대출취급기관은 여신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부당사용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대출금을 회수해야 함(제14조제1항)

<부당사용사유>

-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농림수산업외의 용도(농림수산업 관련분야 사용목적 지원 시는 지원목적외 용도. 이하 같음.)로 변경한 때
-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수산업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수산업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때
-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 지원후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대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 위의 사유로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가 있을 때

- 천재지변, 중대한 재해,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개별규정에 회수하지 않는 범위 및 기간 등을 따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회수일의 전일까지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 이자를 징수하여야 함(제14조제2항)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대출일부부터 적용
    -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부당사용의 개시일부부터 적용
    - 부당사용의 개시일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는 부당사용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적용
- (주) 부당사용의 개시일부부터 연체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지원대상자가 부당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함

## 2) 부당사용한 대여금 및 보조금의 반납(제15조)

- 농협중앙회등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부당사용한 대출금의 회수사유 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통지받은 때에는 다음의 시기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 대출금 상당의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함(제15조제1항)
  - 통지일 또는 회수일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제15조제2항제1호)
  -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제15조제2항제1호)
- 보조금집행자는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매분기별로 확인하여 **부당사용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보조금을 회수하여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고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해야 함**(제15조제3항)
  -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는 대출금의 부당사용사유를 준용함

3) 지원의 제한(제16조)

- 사업주관기관은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대하여 다음 기간중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되며 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농협중앙회 등·대출취급기관·보조금집행자가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지원 제한사항을 통지받은 때에도 같음(제16조제1항 및 제2항)

사	유	지원제한기간
① 부당사용 금액이 10억원이상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50%이상인 때		5년(비율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② 부당사용 금액이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인 때		3년
③ 부당사용 금액이 1억원이상 5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이상 30% 미만인 때		2년
④ 부당사용 금액이 1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미만인 때		1년

- 2이상에 해당될 경우는 그중 기간이 긴 것을 적용(제16조제1항)
- 2이상의 사업 또는 2회계년도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동시에 확인될 경우 당해 사업별 금액을 합산하여 제한기간 산출(제16조제2항)
  -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원비율에 따라 부당사용금액 산출(제16조제3항)
- 지원제한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기여도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사업지원과의 승인을 얻은 경우 50%이내 기간 단축 가능(제16조제4항)
- 생산자단체등(법인제외)의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을 1인으로 봄 (제16조제1항)

[설명] 생산자단체등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당해 생산자단체등에 영향이 없음

- 지원제한 기간의 기산일(제16조제5항)
  - 대출금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통지서가 사업주관기관에 도달된 날
  -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자의 경우는 당해 지원제한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제16조제6항)
  -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집행자가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날
  - 다만, 지원제한 기산일 이전에 이미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시설물 설치공사가 착공되어 진행중인 사업은 사업지원과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사업주관기관이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때에는 당해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제재내용, 제재 개시 및 종료 년월일, 제재사유 등을 당해인, 사업자금과, 사업지원과, 농협중앙회등, 대출취급기관, 보조금 집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제16조제7항)
- 농식품부 장관은 농림수산사업자금중 일반회계 이차보전사업, 농특회계 용자사업에 대한 검사업무를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 위탁(제17조의 1)

#### 파. 보칙(제18조)

- 1) 지방자치단체, 농협·산림조합(법인연합회 포함) 및 그 중앙회, 정부투자기관 등은 지원액을 회수하거나 지원제한기간중에도 **정부사업 대행 가능**(제18조제1항)
  - 정부사업 : 손익이 사업자금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 공공성이 강하여 정부가 시행하지 않으면 관련분야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
- 2) 사업자금과는 다음의 전산처리계획을 마련하여 직접 또는 농협 중앙회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음(제18조제2항)
  - 대출과 동시 대여 방안
  - 지원대상자별 사업자금집행실적 및 사용실태를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 3)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실행시와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 교부결정시 지원대상자로부터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실적을 차후에 공개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뜻의 서류를 받아야 함(제18조제3항)



## IV.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69호)





##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 1996. 6. 13. ┐

└ 훈령 제862호 제정 ┘

개정 1996. 8. 8. 훈령 제864호

개정 1996. 10. 19. 훈령 제875호

개정 1997. 10. 29. 훈령 제912호

개정 1997. 12. 30. 훈령 제925호

(농림업무평가규정)

개정 1998. 3. 9. 훈령 제932호

개정 1998. 7. 23. 훈령 제948호

개정 1998. 12. 19. 훈령 제967호

개정 1999. 11. 8. 훈령 제1002호

개정 2000. 11. 13. 훈령 제1049호

개정 2002. 11. 20. 훈령 제1120호

개정 2003. 9. 5. 훈령 제1141호

개정 2003. 11. 10. 훈령 제1143호

개정 2005. 12. 22. 훈령 제1221호

개정 2007. 2. 28. 훈령 제1265호

(농림사업집행관리기본규정)

개정 2008. 8. 1. 훈령 제39호

개정 2008. 12. 8. 훈령 제57호

개정 2008. 12.24. 훈령 제69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농림수산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8.8., 개정 2008.8.1>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 8. 8.>

1. “농림수산사업자금”이라 함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국고, 기금, 자금,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집행관리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감독 권한이 있는 것(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6.8.8, 1996.10.19, 1997.10.29., 2008.8.1>
2. “지원대상자”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 및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임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어업인,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어업관련 생산자 단체등(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림업과 수산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산업과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원양산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농촌 및 어촌어항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어촌과 관련되는 자로서 사업자금의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1996.8.8, 1997.10.29, 2000.11.13, 2002.11.20, 2008.8.1>
3. “지원”이라 함은 융자, 보조, 투자, 출자, 출연,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집행관리”라 함은 지원에 따른 사업자금의 배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결정, 수표의 발행, 지급, 융자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수납 등의 행위(사업자금 상호간의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된 세부 사무 처리 절차 및 사후 관리 지침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0.29.>
5. “사업자금관리자”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농촌진흥청·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1996.10.19,1997.10.29 ,2008.8.1>

6. “사업자금과”라 함은 농림수산물식품부 또는 청의 과 단위 보조 기관(직제상 과와 같은 급의 담당관을 포함하며. 이하 “과”라 한다.)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 <개정 1996.10.19, 1997.10.29, 1998.3.9, 2008.8.1>
7. “사업지원과”라 함은 농림수산물식품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개정 1996.10.19, 2008.8.1>
8. “사업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제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예정금액의 확정을 포함한다.)하는 행정기관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협중앙회등으로서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0.29.>
9. “개별규정”이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 외에 개별적으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개정 1996.8.8.>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이 이 훈령에 위배되는 때에는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은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다. 다만, 농업종합자금,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산림사업종합자금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6.8.8, 1997.10.29, 1999.11.8, 2007.2.28, 2008.8.1, 2008. 12.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금, 농축산경영자금, 영어자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의2, 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제10조, 제16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0.29, 1999.11.8, 2008.8.1>

**제4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① 사업자금은 그 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과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가지는 개별규정·사업시행지침 또는 예산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7.10.29.>

② 사업주관기관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이외에 사업자가 추가 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특정 기관에 예치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10.29, 1998.7.23, 1999.11.8>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하고 나머지 자부담 금액은 사업실적이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용자집행시마다 자부담 비율만큼 분할 집행 <개정 1996.10.19, 1997.10.29, 2003.9.5.>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개정 1996.8.8, 1997.10.29.>

③ 사업주관기관은 자부담금에 따른 사업의 실적(세부 사업 내용 또는 세부 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업시행지침과 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자부담 비율을 제외한다.)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29, 1998.7.23.>

④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여금을 반납한 경우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금액만큼 용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0.29, 1999.11.8>

⑤ 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마친 자(이하 “사업자등록증소지자”라 한다.)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이하 “금융기관 거래자료”라 한다), 기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따라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 등)은 사업대상자가 사업비(자부담금 포함)를 전액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2.11.20, 개정 2005.12.22>

다만, 농림사업자금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미만 또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원과가 금액을 정한 경우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농산물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본다. <신설 2002.11.20, 개정 2005.12.22>

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직접 노무비에 한한다.)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경우, 당해 증빙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인정하되,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 등)은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1998.7.23, 개정 2003.11.10, 2005.12.22>

다만, 사업비의 1/6의 한도내에서 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1인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하에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3.11.10>

⑦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증거 자료(진실성을 확인한 것에 한한다.)에 따라 검정(부가가치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한다.)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집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7.23, 1999.11.8>

⑧ 제7항의 검정에 관하여 사업별로 필요한 사항은 이를 사업시행지침에 정한다.<신설 1998.7.23.>

⑨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사업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리스금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만큼 용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11.8>

**제5조 (사업자금의 이월)** ① 사업자금중 당해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협중앙회등에 이미 대여된 금액을 제외한다.)은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다른 법률에서 특례 규정을 정한 경우는 당해 특례 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의 예산을 담당하는 과(이하 “예산과”라 한다.)가 사업지원과의 신청을 받아 이를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개정 1997.10.29.>

② 예산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을 이월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회계년도 1월 30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한 사업자금은 이를 다시 이월할 수 없다.

**제6조 (용자 조건의 결정)** ① 용자 조건은 사업자금과가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 받은 자로부터 대출 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지원과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에 용자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자금과와의 합의를 거쳐 직접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6.10.19, 1997.10.29.>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자금과는 미리 사업자금의 세입을 담당하는 과 및 예산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0.19, 1997.10.29.>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지원과가 용자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사업자금과와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1996.10.19, 1997.10.29.>

**제7조 (용자의 방법)** ① 용자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사업자금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자금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기타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용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농협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한다. <개정 1996.8.8, 1996.10.19, 1997.10.29, 2000.11.13, 2008.8.1>

② 농협중앙회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대출하거나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 재대여한다.<개정 1997.10.29, 1999.11.8, 2000.11.13, 2008.8.1>

③ 농업협동조합 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한다. <신설 1997.10.29.>

**제7조의2 (융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 ① 사업지원과는 매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융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시·군·자치구(이하 “시군등”이라 한다.)를 사업주관기관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당해 시군등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2. 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관기관

② 시도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파악한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군등이 지원대상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회계년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이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회계년도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0.29, 1999.11.8>

**제7조의3 (융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① 사업자금과는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지원과가 요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융자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지원과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지원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융자한도액중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배분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지원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분 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시군등에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④ 시군등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배분된 융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지원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이하 “대출예정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이하 “대출예정금액확정일”이라 한다.) 및 대출예정금액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지원대상자 및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이하 “대출취급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

⑤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할 때에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중 “시군등”은 “사업주관기관”으로, “제3항”은 “제2항”으로 한다.<개정 1999.11.8>

⑥ 대출취급기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통지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후에도 신속하게 대출을 완료하도록 매 월 2회 이상 지원대상자에게 촉구하여야 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촉구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7.10.29.>

**제8조 (대여 및 대출의 실행 등)** ①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지원과로부터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농협중앙회등으로부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한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로서 농협중앙회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당해 금액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한 지를 확인 받아야 하며, 그에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따라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실적확인전 지급사유”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7.23, 2008.8.1>

④ 사업주관기관은 제7조의3제7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취급기관의 통지내용과 매 분기 말 현재 지원대상자의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년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10일 이내의 반납기한을 정하여 농협중앙회등이 당해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농업협동조합등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대출취급기관은 매분기말 현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가 있기 전에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대출예정금액을 당해회계년도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3.9, 1998.7.23, 1999.11.8>

⑥농협중앙회등이 제4항 및 제5항의규정에 따른 금액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

1. 대여일로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금리율이 이보다 높은 경우는 약정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은 제7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관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용자한도액의 배정 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 원장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10.29.>

제9조 <삭제 1997. 10. 29.>

제10조 (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① 농협중앙회등은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 월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8.12.19., 2002.11.20>

1. 사업지원과는 사업주관기관의 요청을 받아 사업추진상황과 현저한 사정 변경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익년 6월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2.11.20>
2. 사업지원과는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아니한 자금은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익년 8월말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2.11.20>
3. 사업지원과는 대여된 자금 중에 다음 회계연도 7월1일 이후에 대출이 예상되는 자금은 당해 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02.11.20>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때에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주관기관 및 농협중앙회등에 제1호의 경우 1월15일까지, 제2호의 경우 대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고, 농협중앙회등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자금과에 연장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2.11.20>

②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중 당해 회계연도말(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라 연장된 금액은 대출마감일)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금액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농협중앙회등, 사업자금관리자 및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19., 2002.11.20>

③ 농협중앙회등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월20일까지, 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대출마감일로부터 10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8.12.19., 2002.11.20>

④ 농협중앙회등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19>

1.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1월 20일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또한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대출마감일 경과 10일(10일이 되는 날 이전에 반납할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 금리율이 이보다 높을 경우는 약정 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 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19., 2002.11.20>

2.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21일 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대출마감일 경과 11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 현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19., 2002.11.20>

⑤ 사업주관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원 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1997.10.29.>

**제11조 (이자의 납부)** ① 대여금(대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여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개별규정에 납부 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0.29.>

② 대출금(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지원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96.10.19, 1997.10.29.>

**제12조 (여신관리계좌의 운용)** <삭제 1999. 11. 8>

**제13조 (보조금의 집행)** ① 법령 또는 개별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의 권한이 있는 자(이하 “보조금집행자”라 한다.)는 보조금을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사업별로 교부 결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 사업의 내용 및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2. 보조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보조금 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집행자에게 반납하게 한다는 사항

4.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사업 시행지침에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기간중 그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하게 하여야 하며 보조금집행자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

5. 기타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거나 사업지원과 또는 보조금 집행자가 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은 당해 사업의 실적(사업시행지침과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단서의 실적확인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지급한 후 정산할 수 있다.<개정 1997.10.29, 1998.7.23.>

③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집행자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제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1998.7.23.>

⑤ 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보조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준용 규정중 “용자한도액”은 “보조한도액”으로 하고, 제7조의2제3항중 “대출”은 “지급”으로 하며, 제7조의3제2항중 “농협중앙회 등”을 삭제한다. <신설 1997.10.29.>

**제14조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회수)** ① 대출취급기관은 여신 관계 규정(대출과 관련된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제1호에서 같다.)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부당사용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제6호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에 대한 통지를 제외한다.)하고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개별규정에 회수하지 아니하는 범위 및 기간 등을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0.29, 1997.12.30, 1998.7.23.>

1.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농림수산업 외의 용도(농림수산업과 관련되는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 목적 외의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수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수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개정 1996.8.8, 1997.10.29, 2008.8.1>
3. 관계 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4. 부도, 폐업, 사업 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개정 1997.10.29, 1998.3.9.>
5.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 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6.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가 있을 때<개정 1998.7.23.>

② 대출취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수일의 대출취급기관(금융기관에 한한다)의 여신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 대출 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1998.7.23.>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출일<신설 1998.7.23.>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고의성 또는 의도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부당 사용의 개시일(다만, 부당 사용의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신설 1998.7.23.>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계규정에 정한 기한의 다음 날<신설 1998.7.23.>

③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 실태를 수시(사업이 완료되지 전까지는 매 분기를 말한다.)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제1항제6호를 제외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신설 1998.7.23.>

**제15조 (부당 사용에 따른 대여금 등의 반납)** ① 농협중앙회등이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부당사용사유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통지 받은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시기로부터 10일 이내에 부당 사용한 대출금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29, 1998.7.23, 1999.11.8>

1.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는 부당 사용 사실을 통지 받은 날
2. 제1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이 당해 대출금을 회수한 날(대출취급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대여금의 상환 기한이 도래한 경우는 대여금의 상환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농협중앙회등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7.23, 1999.11.8>

1. 통지일 또는 회수일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율(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보조금집행자는 지원대상자의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 실태를 매 분기 말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하며,부당사용사유(제14조제1항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 보조금을 회수하여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10.29, 1997.12.30, 1998.7.23.>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당사용의 경우 제14조제1항 단서·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중 “대출금”은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제14조제1항제3호중 “대출”은 “보조”로 하며, 준용 규정(제14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중 “대출금”은 “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1998.7.23, 1999.11.8>

**제16조 (지원의 제한)** ①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당해 인(생산자단체등으로서 법인이 아닌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을 1인으로 본다.)에 대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농협중앙회등·대출취급기관·보조금집행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0.29, 1997. 12.30, 1998.7.23.>

1.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부당사용금액”이라 한다.)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당해 사업비 지원액에 대한 부당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부당사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때 : 5년(다만,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는 3년으로 한다.)<개정 1998.7.23.>

2. 부당사용금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때 : 3년<개정 1998.7.23.>
3.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미만인 때 : 2년<개정 1998.7.23.>
4.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때 : 1년<개정 1998.7.23.>

② 2 이상의 사업 또는 2 회계년도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동시에 확인된 경우 당해 인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98.7.23.>

③ 지방비 및 자부담금 등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경우는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부당사용금액을 사업자금의 부당사용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 및 보조금의 금액은 대출금 및 보조금의 지원비율에 따라 산정한다.<신설 1998.7.23.>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지원하여서는 아니되는 기간(이하 “지원제한기간”이라 한다.)이 2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사업지원과의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제한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97.12.30, 2008.8.1.>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대출금의 경우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취급기관의 통지서가 사업주관기관에 도달된 날(다만, 제14조제1항제6호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이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당사용사유를 확인한 날을 말한다.)<개정 1998.7.23.>
2.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집행자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실을 확인한 날

⑥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의 경우는 당해 지원제한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원제한기간을 기산한다.<신설 1998.7.23.> 다만, 지원제한 기산일 이전에 이미 보조



금 교부결정으로 시설물 설치공사가 착공되어 진행중인 사업은 사업지원과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08.12.8>

⑦ 사업주관기관이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때에는 당해 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지원제한기간의 개시 및 종료 연월일,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당해 인·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농협중앙회 등·대출취급기관·보조금집행자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과장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0, 1998.7.23. 2008.8.1>

**제17조** <삭제 1997. 10. 29.>

**제17조의 1 (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사업자금의 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를 할 수 있다. <신설 2008.12.8>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일반회계 이차보전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용자사업에 대하여 검사업무를 (재)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8.12.8>

**제18조 (보칙)** ①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등(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라서 설립된 것으로서 법인에 한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회사, 기타 정부 사업(손익이 사업자금에 귀속되거나, 사업비의 전부를 지원하거나, 공공성이 강하여 이를 정부가 시행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시행지침에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7.10.29, 2000.11.13. 2008.8.1>

② 사업자금과는 사업자금의 효과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산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0.29.>

1.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하는 시점에 맞추어 사업자금관리자가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하는 방안<신설 1997. 10.29.>

2. 지원대상자별 사업자금의 집행 실적 및 사용 실태를 관계 기관이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신설 1997.10.29.>

③ 대출취급기관이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을 실행할 때와 보조금집행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금의 지원 내용을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신설 1997.10.29.>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6. 8. 1.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2항과 부칙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1996. 8. 1. 이후에 확인한 것부터, 제4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2조제4항의 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 개별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도 사업자금 예산부터 각각 적용한다. <개정 1996.8.8.>

② (다른 훈령의 개정)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34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1996.8.8.>

제27조 및 제40조제4항 내지 제6항을 삭제한다.

③ (다른 훈령의 개정) 농림수산사업평가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25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1996.8.8.>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 (경과조치)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금융 45160-5, 1995. 1. 13.)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1-나”중 “융자종결기한까지”를 삭제한다.

“Ⅱ-2-바”를 삭제한다.

⑤ (경과조치) 1996년도 사업시행지침에 사업주관기관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에 대하여는 사업지원과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개정 1996.8.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10.19.>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과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은 1997년도 사업자금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 조치)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금융 51060-145, '96. 8. 1.)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2-(4)”중 “20%를 초과하고”를 “20% 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한다.

“Ⅲ-4-(2)” 단서중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농·수·축·임·삼협중앙회(회원조합 포함)인 경우 및 사업지원과에서 별도로 정하는”을 삭제한다.

“Ⅲ-4-(7)”중 “이자 회수 시기를 대출 기한 내에서”를 “이자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로 한다.

제3조 (경과 조치) 산림개발기금융자업무지침(산림청 일정 51060-302, '96. 8. 19.)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2-(4)”중 “20%를 초과하고”를 “20% 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한다.

제4조 (다른 훈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개선사업실시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중 “100분의 20을 초과하고”를 “100분의 20 이상이고”로,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100분의 20 이하”를 “100분의 20 미만”으로, “2억원 이하”를 “2억원 미만”으로 한다.

② 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개선사업실시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중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자금과의 의견을 받아

처리한다”를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지원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금과에 요구한다.”로 한다.

제5조(다른 훈령의 개정)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100분의 20을 초과하고”를 “100분의 20 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한다.

부 칙 <개정 1997.10.29.>

① (시행일) 이 훈령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금융 51060-145, '96. 8. 1.)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4-(4)”중 “- 이월된 사업의 융자 예산의 경우 계상 년도는 당초 계상 년도가 아니고 이월된 연도로 본다.”를 삭제한다.

부 칙 <개정 1997.12.30.>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개정 1998.3.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7.23.>

이 훈령은 발령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12.19.>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998회계년도의 대여된 융자금은 제10조제1항 본문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3월 31일까지 대출할 수 있다.

부 칙<개정 1999.11.8 >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 조치) 이 훈령 제12조에 의한 신규사업에 대한 여신관리계좌 운영은 1999. 12. 31일까지 운영하고, 2000년.1.1부터 폐지한다. 다만, 1999.12.31일까지 여신관리계좌운영은 농림부 훈령967호('98.12.19)에 규정된 사항을 준용하여 운영하며, 1999년 12월 31일까지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이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때에는 예산에 계상된 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 여신관리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00.11.1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11.20.>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0조 제1항 각 호의 대출마감일 연장기한 및 재연장기한은 2002년 이후 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3.9.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11.10.>

이 훈령은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12.22. >

이 훈령은 2006.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2.28.>

이 훈령은 2007.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8.1.>

이 훈령은 2008.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12. 8 >

이 훈령은 2008. 12. 8.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12.24>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2009.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 조치) 이 훈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자부담금 우선집행원칙은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유보하되, 2009년도 자부담금 집행은 공사진도에 따라 국고분 집행시 마다 자부담 비율만큼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 제7조의3제2항 관련]

## (사업자금명) 용자한도액 배분 통지서 (사업지원과 용)

수신 :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  
사업자금관리자,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발신 : 사업지원과

접수 확인 일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20 . . .	확인자	농림수산식품부(또는청)○○ 과	○○○
	피확 인자	사업주관기관(또는사·도) ○○과	.
	.	.	.

1. 사업명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 원	이미 배정 : ② 천 원
3. 事業資金課의 배정일	20 . . .	4. 事業資金課의 배정액	이번 배정 : ③ 천 원 (“3”의 배정일분)
5. 事業支援課의 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 원
6.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별 재배분액 명세			

(주) ○ ①=②+③+④,    ③=③①    합계 :            ③①            천 원

- 사업자금과의 용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지원과는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75-011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 제7조의3제4항 관련]

##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의 대출예정금액 확정 통지서

수신 : 대출취급기관, 지원대상자

발신 : 사업주관기관

접수 확인 일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20 . . .	확인자	사업주관기관 ○○과	○○○
	피확 인자	○○조합 ○○부서	.
	.	.	.

1. 사 업 명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4. 事業資金課 의 배정액	이미 배정 : ② 천원
3. 事業資金課 의 배정일	20 . . .		이번 배정 : ③ 천원 (“3”의 배정일분)
5. 事業支援課 의 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6. 시 도 의 재 배 분 일	20 . . .		
7. 대출예정금액 확 정 일	20 . . .		

8.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 확정 명세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dotted black; margin-bottom: 5px;"></div>		
------------------------	--	--	--

(주) ○ ①=②+③+④, ③=③① 합계 : ③①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대출취급기관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6”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3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제8조제6항 관련]

## (사업자금명) 대출 불가능한 용자한도액 통지서

경유 : 대출취급기관  
 수신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발신 : 사업주관기관

접수 확인 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시·군·자치구○○ 과	○○○○	○○○
. . .	○○조합 ○○부서	.	.
. . .	.	.	.
. . .	.	.	.

사업명	주 소	성 명	연 간 예산액 (천원)	사업자 금과의 용자한 도액 배정일	사업지 원과의 용자한 도액 배분 일	시·도 의 용자 한도액 재배분 일	대출예정금액		대출 불가능한 용자한도액		
							확정일	확정금액 (천원)	금 액 (천원)	반납 기한	사 유
○○○○ 사 업		김삿갓	10,000,000	'98. 5.20.	'98. 5.21.	'98. 5.22.	'98. 5.23.	5,000,000	5,000,000	'98. 7. 3.	사업포기
○○○○ 사 업		김개동	500,000	'98. 7.21.	'98. 7.22.	'98. 7.23.	'98. 7.24.	100,000	80,000	'98. 10. 5.	폐업
<b>합 계</b>											

(주) ○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의 접수 여부를,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시도의 용자한도액 재배분일” 난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4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 제10조제4항 관련]

## (사업자금명) 용자한도액 대출 마감 통지서

주 소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번지	통 반
성 명 또는 명 칭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p style="text-align: center;">2000. 00. 00. 귀하에게 대출하기로 확정 한 바 있는 0000                  사업의 용자한도액 00,000,000천원중 00,000,000천원                  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어 귀하에게 대출하지 아니함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 . .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0px;">( 사 업 주 관 기 관 의 장 ) (직인)</p>					

275-016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V. 농림수산사업별 주요변경사항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제2권            식량·원예분야            [식량분야]            &lt;생산기반확충&gt;            1-① 영농규모화            사업            ○ 지원대상자</p> <p>○ 신규 대상자            선정</p>	<p>○ 경영규모 : 발전업            농육성대상자 시설  <u>채소 0.3ha</u></p> <p>○ 쌀전업농육성대상자            로 발전가능성 있는            농업인(신규선정대            상자)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한국농            촌공사(이하 “공            사”라 한다) 지사            장이 영농경력, 경            영규모 등을 종합            평가하여 평점            600점 이상인 자            를 선정 (평가항            목 및 평가방법 :            별표1)</p> <p>&lt;신 설&gt;</p>	<p>○ 경영규모 : 발전업농            육성대상자 <u>시설작물            0.3ha</u></p> <p>○ 한국농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지사            장은 사업 신청자중  <u>영농규모화사업 추진            위원회</u> 심의를 거쳐            다음의 요건을 갖추            고 <u>별표 1 평가기준            에 따라 60점 이상으            로 전업농으로 발전가            능성이 있는 자를 전            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u></p> <p>※ <u>공사 지사장은 전업            농육성대상자 선정            등 효율적인 사업추            진을 위하여 영농규            모화사업 추진위원회            를 구성·운영</u>            · 위원장(공사 지사            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내            의 위원(관계 행정            기관 공무원, 쌀전            업농단체 임원, 기            타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자)            으로 구성            · 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p>	<p>○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경쟁력 강화 목적</p> <p>○ 신규 쌀전업농업농육            성대상자 선정절차            규정            -지원대상자의 공정            한 선정을 위하여 영            농규모화사업 추진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 지사장이 선정            하도록 함</p> <p>-위원회는 위원장(공            사 지사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관            계 행정기관 공무원,            쌀전업농단체 임원,            기타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으로 구성</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 농업법인 지원 자격	<p>○ 농업법인 지원자격          벼 또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출자액의 50% 이상을 농지로 출자</li> <li>· 조합원, 사원 또는 주주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li> <li>· 구성원 2/3이상이며 또는 밭작물 재배 경력 3년 이상인 법인</li> </ul>	<p>공사 영농규모화사업 업무지침에 의함          『농지법』 제2조 제3호 및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8조(농업법인의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p> <p>&lt;삭제&gt;</p> <p>&lt;삭제&gt;</p> <p>&lt;삭제&gt;</p>	<p>○ 농업법인이 영농규모화사업을 지원 받기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지원 실적이 극히 미미</p> <p>* 지원실적은4건, 22.7ha (0.016%), 1,358백만원 (0.024%)에 불과</p> <p>-대상법인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업법인으로 하되, 전업농 육성대상자와 형평성 유지를 위해 총출자액, 운영실적 및 영농규모는 현행 유지</p>
○ 농지임대차선 급금사업 지원 대상자	<p>&lt;신 설&gt;</p>	<p>-『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09년만 인정)</p>	<p>○ 태안유류피해자 요구사항 반영</p> <p>*임대차사업은 자기 부담없이 영농후 임대차료를 납부하는 등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어 건의사항 부분 수용</p>
○ 지원 제외자	<p>&lt;신 설&gt;</p>	<p>○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 포함)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상인 자(국세청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서로 확인)</p>	<p>○ 부부합산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p> <p>-법 개정안 국회심의 중          -제외금액 : 35백만원          -연내 법개정이 안될 경우 금액은 사업승인</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 농지 매매사업 지원대상 농지</p> <p>○ 지원 제외농지</p>	<p>○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매입 가능 지역</p> <p>1)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다만,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원대상자의 소유 밭과 연결된 밭의 경우는 집단화를 위해 지원 가능</p> <p>2)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밭의 경우 다음 요건을 갖춘 농지</p> <p>- <u>해발 500m이하, 경사도 15%이하 일 것</u></p> <p>○ 공사 지원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p> <p>- 전매동의 사유에 해당하여 회수하는 농지 (<u>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사고, 장기간 해외체류,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으로 영농이 불가능하거나 전업하는 경우, 파산 등에 따른 채권 확보를 위해 매입하는 경우에 한함</u>)</p> <p>- <u>군사시설보호구역내 논·밭은 관할 군부대에서 영농 가능여부 확인</u></p> <p>&lt;신 설&gt;</p>	<p>○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매입 가능 지역</p> <p>-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u>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밭으로 경사도 15% 이하인 밭</u></p> <p>○ 공사 지원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p> <p>- 전매동의 사유에 해당하는 다음의 농지</p> <p>· <u>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사고로 영농이 불가능한 경우</u></p> <p>· <u>파산등에 따른 채권 확보를 위해 매입하는 경우</u></p> <p>&lt;삭 제&gt;</p> <p>- <u>만 76세 이상인 자가 주작목의 농지를 경영이양하고자 하는 경우(영농승계자가</u></p>	<p>시 포함 시행</p> <p>○ 고도제한을 폐지하여 고랭지농업 지역에 대한 지원, 경사도 15%이상은 현행 유지</p> <p>* 우리나라 고랭지농업 지역의 경지면적 73,971ha('05 KREI 연구자료)</p> <p>* 경사도 15%이상인 경우 토양유실과 기계화 영농에 어려움이 있고 한계농지에 해당</p> <p>○ 지원한 농지중 재매입 가능한 농지를 질병·사고 또는 파산으로 한정</p> <p>* 장기간 해외체류,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은 제외</p> <p>○ 기존에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매입하여 해당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함으로써 군부대 협의 불필요</p> <p>○ 효율적인 구조개선 추진을 위해 상환 최고연령인 75세를 초과하고, 주작목의 농지를 이양하고자할 경우 공사에서 매입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함</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 매매사업 지원 상한</p> <p>○ 임대차선급금 사업 지원상한 폐지</p> <p>○ 매매대금의 납부</p> <p>○ 자연재해에 따른 납부연기 및 입차료 감면</p>	<p>○ 다음의 경우에는 15ha이상 지원가능</p> <p>㉠ ... 우수경영체로 ...</p> <p>㉡ 지원신청 금액 이상을 상환기일 이전에 조기 상환한 경우</p> <p>농지임대차선급금사업 - 전업농 30ha, 법인 40ha, 창업농 10ha</p> <p>&lt;신 설&gt;</p> <p>○ 분할납부 가) 납부기간 :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5년까지 <u>균분상환·거치식상환·체증식상환부</u> · 만40세이하 : 30년, 41~55세이하 : 20년, 56~60세이하 : 15년 나) 납부방법 : 원금 균등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u>농가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2년 거치 후 잔여기간 원금 균등분할납부</u></p> <p>○ 지원받은 농지의 <u>필지별 농작물 피해를 적용</u></p> <p>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p>	<p>없는 경우에 한함)</p> <p>○ 다음의 경우에는 15ha이상 지원가능</p> <p>㉠ ... 우수경영체로 ...</p> <p>㉡ &lt;삭제&gt;</p> <p>농지임대차선급금사업 &lt;삭제&gt;</p> <p>지원하한 : 0.2ha</p> <p>○ 분할납부 · 납부기간 :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5년까지 분할 납부</p> <p>㉠ <u>농업인 납부기간 = 75 - 지원당시 연령(1월 1일 기준)</u> *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p> <p>㉡ <u>농업법인 납부기간 : 20년</u> · 납부방법 : 원금 균등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u>2년 거치 후 상환 잔여기간 동안 원금 균등분할상환</u></p> <p>○ 지원받은 자의 <u>농가 단위 농작물 피해를 적용</u></p> <p>농림수산식품부 '농업재</p>	<p>○ 우수경영체로 자력 확대 실적이 있는 전업농만 예외 허용</p> <p>○ 은퇴농 등 농지소유자에 지원사업으로 임차인에 대한 제한 불필요</p> <p>○ 분산지원 방지</p> <p>○ 연령 구간별 동일 상환기간 설정으로 형평성 문제 대두됨에 따라</p> <p>○ 상환기간 종료 연령(75세)과 현재연령의 차이를 상환기간으로 설정</p> <p>○ 법인에 대한 상환기간을 20년으로 함</p> <p>○ 체증식 상환은 삭제 * 이용율 미미 : 2건</p> <p>○ 상환기간 개선에 따라 복잡한 거치 요건도 단순화</p> <p>○ 납부여력이 있는 농가의 감면 혜택 방지</p> <p>* 농업재해 복구비 지</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권 확보 (연대보증 가능 금액)</li> <li>○ 지원농지전용</li> <li>○ 전업농관리</li> </ul>	<p>인정하는 병충해로 인하여 지원받은 농지의 필지별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p> <p>&lt;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차료 및 교환·분합 지원금 채권확보를 위해 연대보증인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천만원이하 1인 보증</li> <li>- 1~3천만원이하 2인 보증</li> </ul> </li> <li>○ 전용시 대체농지 구입 또는 지원금 반납 &lt;신설&gt;</li> <li>○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취소 사유에서 제외 &lt;신 설&gt;</li> <li>&lt;신 설&gt;</li> <li>&lt;신 설&gt;</li> </ul>	<p>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자연재해에 준하는 재해로 인정하는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p> <p>농업재해보험 품목은 본 사업 2년차부터 혜택 미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차료 및 교환·분합 지원금 채권확보를 위해 연대보증인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천만원이하 1인 보증</li> <li>- &lt;삭제&gt;</li> </ul> </li> <li>○ 전용시 대체농지 구입, 미구입시 자격 취소 다만,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에 따른 신고시설은 미 구입시 지원금 회수로 대체</li> <li>○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취소 사유에서 제외 ③공사에서 지원받은 자가 주작목 이외의 농지를 매도·임대·전용하는 경우 ④ 농업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지원받은 농지의 경우 상환완료 후 출자) ⑤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에 따른 신고시설로 전용한 경우(지원 농지</li> </ul>	<p>원 : 농가단위로 피해를 산정, 농가별 재난지수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충해의 기준 강화</li> <li>○ 자구노력 유도 등</li> <li>○ 연대보증인 피해 방지와 부실채권 방지를 위해 연대보증 가능금액을 1천만원으로 한정</li> <li>○ 전용 사후관리 강화 -경영에 필요한 신고시설은 현 규정 적용</li> <li>○ 주작목 이외의 농지는 공사에 매도·임대·전용 가능하도록 함</li> <li>○ 전업농 등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하여도 해당농지를 계속 농업경영에 이용하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출자할 경우 지원금은 상환토록 하고, 신규지원은 허용하지 않음</li> </ul>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 전업농 사유	○ 소유 논 또는 밭을 증여·매도, 임대·전대하여 경영 규모를 축소한자로서 축소 익년도부터 2년 이내에 종전면적으로 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경우	○ 소유 논 또는 밭을 증여·매도, 임대·전대, <u>전용하여</u> 경영 규모를 축소한자로서 축소 익년도부터 2년 이내에 종전면적으로 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경우	○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대체농지를 구입하지 못할 경우 전업농 자격취소
○ 대상자 선정시 사전통지 등 실시	<신설>	○ 집단화를 위해 대상농지의 인근 전업농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통지 등 실시	○ 집단화 추진 및 지원대상자 선정을 더욱 객관적·공개적으로 결정 목적으로
○ 고객만족도 조사 및 수요조사	○ 고객만족도조사 ·매년 8월~9월, 지원농가를 대상으로 실시 - 수요조사 ·12월~익년 1월, 쌀전업농을 대상으로 실시	○ 고객만족도조사와 수요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매년 8월~9월, 쌀전업농육성대상, 등을 대상으로 실시	○ 사업추진 만족도 설문조사와 수요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 수요조사 시기를 앞당겨 익년도 지역별 예산배정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
2-② 경영회생 지원 농지 매입사업 ○ 지원대상지원 제외자	< 신 설 >	○ <u>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미만인 자</u> ○ <u>경영면적이 1.5ha 미만인 자. 단, 연간농업소득이 1천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 가능</u> ○ <u>71세 이상으로 영농 후계인력이 없는 자</u>	○ 사업목적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농가 제외 *감사지적사항 개선
○ 매입제외 농지	○ <u>최근 2년간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u>	< 삭 제 >	○ 확인곤란하며, 대체조항이 있어 삭제 * 일제점검결과 개선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 매입 순위	<p><u>지 않고 있는 농지</u></p> <p>② <u>집단화된 농업진흥지역밖 농지</u></p> <p>③ <u>농업진흥지역밖 수리안전 농지</u></p> <p>④ <u>기타 농지</u></p> <p>※ 우선 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u>필지규모가 큰 농지순위로 매입</u></p>	<p>② <u>농업진흥지역밖 경지 정리 또는 기반 정비 농지</u></p> <p>③ <u>농업진흥지역밖 기타 농지</u></p> <p>※ 우선 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u>부채금액, 농지상태 등을 고려하여 매입</u></p>	* 감사지적사항 개선
○ 지원한도	○ 농가부채의 <u>2배</u>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지원	○ 농가부채의 <u>1.2배</u>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지원	○ 과다 지급 방지 * 감사지적사항 개선
○ 지원대상자 선정	<p>○ 공사 지사에서는 <u>농지은행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적격자를 결정하고 경영실태 평가점수 확정</u></p> <p>○ <u>지사는 지원적격 대상자를 도본부에 추천하고 도본부는 당해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경영실태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u></p>	<p>○ 공사 지사는 <u>자체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지역본부에 대상자 추천</u></p> <p>○ <u>공사 지역본부는 농지은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u></p>	<p>○ 업무 효율화를 위해 지사 농지은행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지역본부 농지은행심의위원회 심의로 일원화</p> <p>* 감사지적사항 개선</p>
○ 사후관리	○ 영농관리상황 조사 - 조사기간 : <u>매년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u>	○ 영농관리상황 조사 - 조사기간 : <u>매년 11월30일까지</u>	○ 연중 조사관리 체계 도입 * 감사지적사항 개선
○ 임차료 감면	<신설>	○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인정 한 병해충도 감면	○ 규모화사업과 동일 기준 적용
○ 농업경영실태 평가 기준	<p>○ 재해 피해를</p> <p>- <u>작물(시설물) 피해 80% 이상 : 20</u></p> <p>- <u>작물(시설물) 피해 70%~80%미만 : 15</u></p>	<p>○ 재해 피해를</p> <p><u>10+(피해율-50)/5 (최저 10점, 최고 20점)</u></p>	○ 평가점수의 세밀화로 우선순위 결정 변별력 제고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물(시설물) 피해 70% 미만 : 10</li> <li>○ 채무이행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리금 상환 6개월 이상 연체 : 20</li> <li>-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연체 : 15</li> <li>- 기타 : 10</li> </ul> </li> <li>○ 부채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 미만 : 15</li> <li>- 100~150% 미만 : 10</li> <li>- 150% 이상 : 5</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 신 설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무이행 상황 10+연체율×10점</li> <li>○ 부채비율 35-부채비율/5(최저5점, 최고 15점)</li> </ul> <p>* 단수처리 : 소수점 이 하는 소수 첫째자리 에서 반올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점수의 세밀화로 우선순위 결정 변별력 제고</li> </ul> $\text{연체율} = \frac{\sum (A_i \times B_i)}{\text{부채총액} \times 180}$ <p>A:부채금액, B:연체일 수(B≥180, B=180), i:대출계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점수의 세밀화 로 우선순위 결정 변별력 제고</li> </ul>
4. 농업용수 수질 조사개선 ○ 수질 개선사업 위주로 지침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질조사, 수질개선사 업으로 나누어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질조사 :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수질조 사 시행관련 내용 (한국농촌공사 본사 업무 관련)</li> <li>- 수질개선 : 농업용 저 수지 수질개선사업 관련 내용(지자체, 농 촌공사 관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질개선사업 내용으 로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질조사 : 삭제</li> <li>- 수질개선 : 퇴적물처 리사업을 추가하여 지침 운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 단체 등과 연관성이 미흡한 내 용은 삭제</li> <li>- 농촌공사 본사와만 관련성이 있는 수질 조사 지침 내용은 삭제</li> </ul>
○ 보고서류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사업별로 보고서 식 첨부</li> <li>○ 사업시행인가(승인), 추진상황, 준공결과, 예산배정, 입찰결과 보고서식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서식 통합 및 간 소화</li> <li>○ 사업시행인가(승인), 추진상황, 준공결과 보 고서식만 존치</li> <li>*예산배정, 입찰결과 보고서식은 삭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자율편성 방 식의 균특예산을 지 원함에 따라 불필요 한 서식 삭제</li> </ul>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6. 우수품종 증식 보급사업 ○ 사업대상자	(신설)	○ 화훼종묘 보급센터(1개소)	○ 화훼종묘보급센터를 육성하여 농가의 우량 신품종 재배를 확대하기 위함
<b>II. 농업기계화</b>			
7. 농기계구입지원사업 ○ 공급대수/용자지원액	○ 40.3천대/ 5,430억원	○ 50.7천대 /7,100억원	○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확대
○ 지원대상 농업기계	○ 형식검사, 견정, 안전검정, 자유화로 구분	○ 형식검사, 종합검정 대상기종 축소	○ 품질이 향상된 기종은 제조업체의 자체 성적 인정등으로 신제품개발 촉진
○ 용자지원대상 농기계 선정	○ 농식품 주관, 선정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선정	○ 생산자단체 조합에 이관하여 시장원리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함
○ 기종별, 규격별 용자지원 한도액 결정	○ 농식품 주관, 결정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결정	○ 생산자단체 조합에 이관하여 시장원리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함
○ 용자지원 신청서류 양식	-	○ 농협 전산망에 적합하게 보완	○ 용자지원 업무의 효율성 제고
8. 농기계 임대사업 ○ 사업단가	○ 800백만원/ 개소	○ 1,000백만원/ 개소 - 800~1,200백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	○ 임대농기계 구입 등 지원확대 ○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업운영 유도
○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 사업계획서 변경시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단, 총 사업비, 임대농기계 구입비 및 구입 내역, 보관창고 설치비 및 설치면적이 승인된 사업	○ 사업의 효율성 제고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 구비서류	-	계획서보다 많을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변경 승인한 후 농수산식품부에 그 결과를 제출함  ○ 농기계임대차계약서 임대차관리대장 등 구비서류를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 비치토록 완화	○ 사업의 효율성 제고
9. 농기계생산및사후관리지원사업			
○ 사업시행 지침	○ 생산지원사업과 사후관리지원사업 지침을 각각 운용	○ 생산지원사업과 사후관리지원사업 지침을 통합 운용	○ 농림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 생산자금 지원액	○ 400억원	○ 600억원	○ 농기계가격 안정 유도를 위해 지원확대
○ 수리용부품 장비확보자금 지원액	○ 168억원	○ 210억원	○ 수리봉사 원활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 확대
○ 생산자금 지원 대상자선정 세부기준절차 및 신청양식 등	○ 농식품부 결정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결정, 통보	○ 생산자단체 조합에 이관하여 시장원리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함
○ 수리용부품장비확보자금 지원 대상자선정 세부기준, 절차 및 신청양식 등	○ 농식품부 결정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결정	○ 생산자단체 조합에 이관하여 시장원리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함
○ 용 자 지 원 신청서류 양식	○ 농식품부 결정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결정	○ 생산자단체조합에 이관하여 시장원리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함
10-① 고품질쌀 브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랜드육성사업 ○ 지원방법	○ 교육·홍보비 : 국고 50%, 지방비 50	○ 교육·홍보비 : 국고40%, 지방비 40, 자담 20	○ 자율적인 교육·홍보 역량강화
10-② 건조·저장 시설 지원사업 ○ 지원대상	○ RPC, DSC, 비RPC 조합	○ 국산밀 생산자단체 지원대상 포함 ○ 도축세 폐지 대상 시·군 우대지원	○ GAP시설 설치 의무화로 고품질쌀 생산 유도 ○ 제2 녹색혁명 성공을 위하여 국산밀 생산자단체 지원대상 포함 ○ 도축세 폐지 시·군의 우대지원 방침에 따라 포함
10-③ 미곡종합처리장 비매입자금 지원사업 ○ 비 매 입 자 금 지원	○ RPC 통합시 시·군내 RPC간 통합만 인정 ○ 신규RPC 신청자격 요건 : 신청일 현재 1년이상 정상운영중인 업체	○ 권역별, 도별 통합시 인정 ○ 농협RPC와 개인 RPC간 통합시 인정 ○ 신규RPC 신청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2년이상 정상운영중인 업체	○ RPC통합 방식을 확대·다양화하여 경쟁력 강화 ○ 신규RPC 신청자격요건 강화로 RPC 경쟁력제고
<b>[원예분야]</b> <b>I. 생산 및 유통 개선</b> 13.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 사업시행기관 일원화	○ 물류기기구입지원 : 시·도 ○ 물류기기공동이용 : 농협	○ 농협중앙회로 일원화 지원	○ 농협에서 통합하여 시너지효과 거양
○ 지원자격 및 요건	○ 물류기기구입지원을 단일품목 지원방식	○ 사업대상자선정 우선순위 마련	○ 물류시스템적 지원을 통해 중복지원방지 및 효율제고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 지원기준 차등화	○ 공영도매시장지원율 : 보조70%, 자담30	○ 공영도매시장지원율 : 보조75%, 자담25	○ 물류유통혁신·농물화를 위해 공영도매시장 출하량 확대
14.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 지원대상 품목	○ 곡류,두류,축산물,임 산물,콩나물,녹두나 물을 제외한 농산물	○ 사과,배,포도,팽이버 섯,곡류,두류,축산물, 임산물,콩나물,녹두 나물을 제외한 농산물	○ 최근 3년 표준규격 출하율 95%이상 품 목에 대한 지원제외
○ 지원형태 - 포장재비 지원	○ 포장재비 40% 지원 품목 - <u>꽃호박,수박,쪽파,대 과,마른고추,열무,부 추,알타리무(7품목)</u>	○ 포장재비 40% 지원 품목 - <u>꽃호박,수박,마른고 추,부추(4품목)</u>	○ 표준규격출하율이 저조한 쪽파,대과, 알타리무를 우대품목 으로 변경하여 제외
	○ 포장재비 10% 지원 품목 - <u>사과,배,포도,참다 래,감귤,단감,방울 토마토,애호박,쥬키 니호박,풋고추,짜리 고추,토마토,메론, 감자,장미,백합,팽 이버섯(17품목)</u>	○ 포장재비 10% 지원 품목 - <u>방울토마토,감귤,풋 고추,짜리고추,감자, 참다래,토마토,단감, 메론,거베라,백합,장 미,피망,참외,카네이 션,가지,오이,상추,자 두,애호박,쥬키니호 박,복숭아(22품목)</u>	○ 표준규격출하율 80% 이상인 품목은 지원비율을 축소하 고, 95%이상인 품 목은 지원제외
	○ 우대 지원품목 확대 - 마늘을 공영도매시 장에 출하하는 경우 60% 지원	○ 우대 지원품목 확대 - 마늘, <u>쪽파, 대과, 알 타리무</u> 를 공영도매 시장에 출하하는 경 우 60% 지원	○ 표준규격출하율이 저조한 쪽파,대과,알 타리무를 우대품목으로 지정하여 지원확대
○ 지원형태 - 공동선별비 지원	○ 당도표시 가산지원 - 당도표시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당도를 선별 표시· 유통한 조직에 대하 여 해당품목의 국고 보조금 지원비율을 15% 추가 가산지원	○ 당도표시 가산지원 - 당도표시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당도를 선별 표시· 유통한 물량에 한하 여 지원비율을 20% 가산하여 지원	○ 실제 당도표시 물량에 대해서만 가산지원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 지원형태 -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지원	○ 지원비율 조정 - 공영도매시장에 결구배추·무를 출하하는 경우 <u>골판지상자 60%, 그물망·PE·PP대 90%지원</u> - 농안법에 의한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출하시 <u>40% 지원</u>	○ 지원비율 조정 - 공영도매시장에 결구배추·무를 출하하는 경우 <u>골판지상자 50%, 그물망·PE·PP대 70%지원</u> - 농안법에 의한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출하시 <u>20% 지원</u>	○ 결구배추·무의 포장유통화사업이 진전됨에 따라 연차별 지원계획을 반영하여 포장유통비 지원비율을 축소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 공동선별비 신청	○ 공동선별비 신청 - 공동선별·계산·정산 완료후 사업대상자는 매월 5일까지 <u>농협 시·군지부장에 신청</u>	○ 공동선별비 신청 - 공동선별·계산·정산 완료후 사업대상자는 매월 5일까지 <u>농관원 출장소장에 신청</u>	○ 사업비 집행의 연속성 유지 및 조기집행 유도를 위하여 사업비 신청기관을 변경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 포장재비 최고사업 단가 조정	○ 포장재비 사업단가 - 사업단가는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납품가격을 적용하되, <u>최고사업단가는 1,200원을 초과할 수 없음</u>	○ 포장재비 사업단가 - 사업단가는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납품가격을 적용하되, <u>최고사업단가는 1,300원을 초과할 수 없음</u>	○ 원자재 값 상승 등을 반영하여 최고사업단가를 조정
<b>【붙임1-1】</b> ○ 생산자조직 평가표	○ <u>자율검사원 활동(10점)</u>  ○ <u>공동계산물량(5점), 포장 재신청의 적정성(5점)</u>  ○ <u>특별가점</u> - 잔류농약 분석결과 적합건수(3점)  ○ <u>특별감점</u> - 잔류농약 부적합 및 행정처분건수(3점)	○ <u>삭 제</u>  ○ <u>공동계산물량(10점), 포장 재신청의 적정성(10점)</u>  ○ <u>특별가점</u> - 잔류농약 분석결과 적합건수(5점)  ○ <u>특별감점</u> - 잔류농약 부적합 및 행정처분건수(5점)	○ 자율검사원 활동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여 제외  ○ 공동계산 확대 및 사업신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배점 확대  ○ 소비자보호 및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가점 확대  ○ 소비자보호를 위해 부적합농산물에 대한 감점 강화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b>【붙임2】</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별 공동 선별비용 지원단가</li> </ul> <p>17. 산지유통종합 자금지원</p> <p>①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대상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마케팅조직 자격요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유통전문 조직 자격요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선별비용 지원단가 - <u>67품목</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합병조합, 지역조합, 품목조합, 품목조합연합회, 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법상 법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공동출자한 법인에 한함),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농협연합사업단 등</li> </ul>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기금지원 대상 사업자중 거점산지유통센터,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사업대상으로 선정·지원. 다만, <u>익년도 1월중 산지유통전문조직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별도 실시하여</u> 요건 미달시 전문조직 선정취소 및 자금회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선별비용 지원단가 - <u>72품목(선별비용 조정)</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li> <li>○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u>시군 유통회사, 상법상 법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공동출자한 법인에 한함)</u>, 지방공사 등 농산물 유통조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이후부터 연합사업단의 매출액 기준을 <u>100억원으로 상향조정</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기금지원 대상사업자중 거점산지유통센터,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사업대상으로 <u>지원이 가능</u>하되, <u>자금지원 1년 후 산지유통종합평가에서 전문조직 요건 미달시</u> 선정 취소 및 자금 회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선별 신규소요 및 품목별 선별비용을 조사하여 재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년부터 설립을 추진하는 시군 유통회사를 사업대상에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합사업단의 자격요건을 타 조직의 자격요건과 일치시키되, 사업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10년부터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체계를 산지유통종합평가로 일원화</li> </ul>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 지원자격 및 요건(공통)	-	○ <u>상위조직에 참여하 는 산지유통전문조 직 및 산지유통일반 조직은 상위조직을 통해서 자금신청(단, 상위조직을 통해서 출하하는 물량에 대 해서만 상위조직의 금리 적용)</u> * <u>상위조직 순 : 공동마 케팅조직 &gt; 산지유통 전문조직 &gt; 산지유통 일반조직</u>	○ 자금의 중복지원 방 지 및 조직간 연계 강화를 위해서 상위 조직을 통한 자금지원 체계의 일원화 추진
○ 지원자격 및 요건 (산지유통일반조직)	-	○ <u>2010년부터 산지유 통일반조직 중 산지 유통 종합 평가결 과 하위 10% 조직은 차년도 지원 대상에 서 제외(다만, 농 협·법인별 사업대 상 개소수가 20개소 이하일 경우에는 적 용제외)</u>	○ 산지유통일반조직에 대해서 산지유통종 합평가결과 적용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 율성 증대
○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 <u>농가에 출하선도금으 로 활용하는 자금의 대출취급수수료(대여 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는 1.5%를 적용 (대 농업인 적용 금 리)하되, 정부지원 금 리에 추가금리 부과 금지</u>	○ 선급금에 대해서 정 부지원 금리에 추가 하여 금리를 부과하 는 행위 금지함으로써 농업인의 이익 증 대하고, - <u>대여금리를 대농업인 기준으로 인하(2.8% → 1.5%)함으로써 대출 취급기관의 손실 방지</u>
○ 지원한도액 기 준 및 범위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	-	○ <u>2010년부터 무이자 인센티브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기 지원된 사업비 중 일 정금액을 금리 인하 하는 것으로 변경</u>	○ 무이자 인센티브 자 금의 지원조건 변경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대상조직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사업신청 조직에 대해서 선정평가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를 받은 재신청 조직은 동 평가 결과를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신청 조직에 대한 평가 간소화</li> </ul>
<p>18. 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지 저온시설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개소지원(1,896백만원) - 조건 : 국고50%, 지방비50 - 대상: 가락·순천도매시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년이후 소비지 저온시설메뉴 지원중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 통합되어 유사지원방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온수송차량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 2.5톤이하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톤 미만, 2.5톤이상도 지원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차량을 상향조정하여 물류효율화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훼류 습식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훼류 습식유통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훼습식유통용기구 입비 신규지원으로 경쟁력제고</li> </ul>
<p>19. 인삼계열화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자금의 사용용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매사업 - 인삼농협이 농가와 계약재배한 물량에 대해서만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일반업체는 자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매사업 - 일반업체는 생산자단체(농협)의 계약재배 의무물량을 구입하여 유통 및 가공을 할 경우에도 구매자금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업체의 인삼계열화사업 직·간접 참여로 적극적인 사업 참여 유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업체 사업 참여방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확기 도래시 일반업체는 업체자금으로 전량구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업체도 구매자금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의 계열화사업 적극 참여를 위해 진입장벽 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매기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11월까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지원 구매자금 회전운용 및 수삼판매활성화, 연중구매로 구매물량의 원활한 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금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신설&g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업체는 구매물량 판매후 회수한 자금에 대해 회전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업체의 자금관리에 대한 부담 완화</li> </ul>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당금 계정 적립금 사용용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안전성 분석비 등 행정비</li> <li>○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별도 지정하는 사업</li> </ul>	<p>및 사업대기자금에 대한 운용수익 적립 대신 수매자금의 20%를 익년도부터 매년 12월 20일과 최종상환일에 농협중앙회 상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안전성 분석비 등 행정비</li> <li>○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별도 지정하는 사업</li> <li>○ 사업추진에 따른 손실(가격차)보전</li> <li>○ 사업추진 및 사업활성화에 소요되는 비용(수매상자 규격표준화, 수매프로그램개발비, 교육홍보비용, 회원농협 현 지도비용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당금 계정 사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사업추진 및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용도 확대 필요</li> </ul>
<p>22. 소비자유통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대상자</li> <li>○ 지원자격 및 요건</li> <li>○ 지원한도액 및 배정기준</li> <li>○ 사업 의무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li> <li>○ 공판장 및 소속 중도매인</li> <li>○ 산자유통인</li> <li>○ 종합유통센터</li> <li>○ 화훼공판장의 경우 거래금액이 3%이상 신장한 경우</li> <li>○ 화훼공판장 별도 기준 없음</li> <li>○ 공판장은 지원금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li> <li>○ 공판장 및 소속 중도매인</li> <li>○ 경매식집하장</li> <li>○ 산자유통인</li> <li>○ 전년도 보다 감소 하지 않은 공판장</li> <li>○ 최근 1년간 취급 금액의 1/12이내</li> <li>○ 공판장의 출하선도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포장유통(마늘포장) 촉진을 위해 지원대상 포함</li> <li>○ 종합유통센터는 소비지-산지 상생협력 사업으로 변경 지원</li> <li>○ 국내경기 위축 등에 따른 화훼소비량 감소 등을 반영</li> <li>○ 별도 사업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기준을 사업지침에 반영</li> <li>○ 도매시장법인과</li> </ul>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23. 농산물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중 출하하선도금을 50%이상 운영	운영기준을 40%로 완화	비교하여 과도한 수준을 완화 *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출하하선도금 운영 의무 없음
○ 성과목표 및 지표	○ 화훼공판장 결제자금 운영 의무기준은 별도로 없음	○ 화훼공판장 결제 자금 운영실적 100% 이상(연간 1/12회전 기준)	○ 별도 사업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기준을 사업지침에 반영
○ 지원대상 및 요건	○ '17년까지 브랜드 농 산물 점유율을 20%까지 확대	○ '17년까지 브랜드 농 산물 점유율을 10%까지 확대	○ 사업대상품목이 당 초 양념채소에서 원 예작물, 발작물로 확대되어 지표 하향 조정
○ 지원자금의 용도	○ 신청 당시 독립법인 이 아닌 경우 법인 설립 추진계획 제시	○ '09년 신규사업체가 지역통합 브랜드 경 영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 우 원예작물은 6월말까지 <u>법인설립·등록</u> - <u>법인화 전에는 주관조 직 지정, 사업추진</u>	○ 신규사업체 법인화 지연에 따른 사업추 진 부진 등 문제점 을 해소하기 위해 법 인화 기한을 명시하 고, 법인화 전단계에 도 사업시행 주체를 정함.
○ 지원자금의 용도	○ 용자금의 용도 - 원료확보, 개별생산 시설	○ 용자금 용도 확대 - <u>언론매체 홍보비, 포 장재 구입비 등 상 품의 판매원가에 포 함되는 판매사업 제 경비도 사용가능</u>	○ 용자금 지원용도를 확대하여 사업 활성 화 도모
○ 지원 형태 및 의무량	○ 조직운영 및 마케팅, 용자사업비 지원 * <u>지원제한 없음</u>	○ 브랜드경영체가 <u>시·군유통회사와 동일주체인 경우</u> - <u>조직운영 및 마케팅</u>	○ 시·군유통회사와 지원내용이 경합되 는 분야에 대해 지 원 제외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형태 및 의무량</li> <li>○ 용자금 사업의무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기반 조성 및 종합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원부담비율</li> <li>* 기금보조 40%, 지방비 40%, 자부담 20%</li> </ul> </li> <li>○ 원료 <u>수매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100%</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기간 : 대상자 선정 후 1년 이내</li> <li>* 기한 내 미집행 시 미집행액 및 이자 환수 조치</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u>사업비 지원 제외</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용자금은 개별생산 시설만 지원</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기반 조성 및 종합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체의 자부담 능력이 미약할 경우 <u>지방비부담가능</u></li> </ul> </li> <li>○ 대출금액을 <u>지원용도로 100% 집행</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기간 :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li> <li>* 연차별 지원되는 용자금 중 <u>원료수매자금과 판매사업 제경비는 집행기간(1년) 만료시점에서 대출기준일을 재설정</u></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단계 경영체의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경우 지자체 부담으로 시설설치 후 위탁 운영 등 관리</li> <li>○ 원료수매자금 이외의 용도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이행 의무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기간은 대출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용자금 지원취지에 부합</li> <li>- 순환사용이 가능한 용자금은 매년 대출기준일을 재설정하여 의무량 부과</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기간 및 연차별 사업비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명시하지 않음</u></li> </ul> </li> <li>○ 개소당 사업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원예작물 200억원</u></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기간 : 원예작물 3년간, 발작물 1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사업비 배분(원예)</u></li> <li>* 1~2년차 30%씩, 3년차 40%</li> </ul> </li> <li>○ 개소당 사업비(원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년 신규사업자는 <u>165억원</u></li> <li>* <u>시·균유통회사와 동일주체: 155억원</u></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기간 및 연차별 사업비 배분기준을 명시</li> <li>○ 용자금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u>용자금 지원 규모 축소</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5억원 → 70억원</li> </ul> </li> <li>○ 시·균유통회사와 동일주체에 대해 <u>조직 운영 및 마케팅 지원 제외 : △10억원(국고 4)</u></li> </ul>
<p>Ⅲ. 표준프로세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신청단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 사업신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제한없음</u></li> </ul> </li> <li>○ 지자체의 원예발전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u>원예산업 발전계</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예브랜드 <u>시·도 신청량을 1개소로 한정</u></li> <li>○ 지자체의 원예발전심 의위원회를 전문가 심의 위원회로 명칭 변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량에 비해 신청량이 많아 심사평가 부담이 큰 문제점 개선</li> <li>○ 지자체 심의절차 등 사업신청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별도 계</li> </ul>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 선정단계</li> <li>○ '09년 세부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획에 포함될 내용을 자세히 예시</u></li> <li>○ <u>법인화 일정에 대한 제한 조항이 없음</u></li> <li>○ 심사평가 절차, 평가기준(별지 2호)을 세부적으로 제시</li> <li>○ 농식품부 실무검토 확정, 시행</li> <li>○ 사업계획에 포함될 주요내용에 대해 포괄적인 방향 제시</li> <li>○ 사업계획 수립단계에 사업비 제한규정은 없음 * 평가결과 환류단계에서 “조직 운영비”의 일정 비율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li> <li>○ 사업계획 변경절차 - 세부사업비 30%이상 변경시 농식품부 사전 승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위원회 역할과 발전계획 내용 예시 삭제</u></li> <li>○ 신설법인은 '09. 6월말까지 출자지분, 시설부지 등을 확정,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에 <u>포함</u></li> <li>○ <u>심사평가 기본계획 별도 시행('08.12월)</u></li> <li>○ 농식품부 실무검토·조정 의견을 <u>사업추진심의회에 상정, 확정 시행</u></li> <li>○ 세부사업계획 작성요령 별도 시행</li> <li>○ <u>원예작물 2~3년차 사업시행 경영체는 보조사업비 중 100백만원(국고 40)을 감액, 사업계획 수립</u> - 감액 사업비는 <u>연차평가 결과 환류재원으로 활용 계획</u></li> <li>○ 사업계획 변경절차 - <u>단위사업간 사업비 변경시에도 농식품부의 사전승인토록 함</u> * 단위사업(중분류), 세부사업(소분류) 용어 정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획으로 시행</u> * <u>지침 간소화</u></li> <li>○ 신규사업체 법인화 지연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준비가 부족한 경영체에 대해 평가제한 조치</li> <li>○ 지침서 간소화 조치 - 심사평가 기본계획을 별도 문서로 시행하고, 지침에서는 개요만 제시</li> <li>○ 외부 의견 수렴 등 전문가 심의절차 추가</li> <li>○ 시행지침 간소화</li> <li>○ 경영체별 조직운영 사업비 규모가 다르고, 사업계획 수립확정(1~2월), 연차평가(3월) 시점이 달라 일정액을 미리 감액한 후 평가결과에 따라 환류</li> <li>○ 단위사업(중분류)간 사업비 변경시에도 농식품부 승인을 얻도록 사업계획 변경요건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배정단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배정 신청서, 자금집행원칙 등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배정 관련 <u>공통사항은 삭제</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침서 간소화 -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필요시 별도</li> </ul>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 이행점검단계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u>용자금집행실태 중 간점검 실시</u>	○ <u>해당 조항 삭제</u>	문서로 제시 ○ 농식품부와 유통공사 <u>합동점검시 용자금 집행실태도 점검</u>
○ 만족도 조사	○ 조사대상 - 브랜드경영체 ○ 조사방법 : 자체	○ 조사대상 - 브랜드경영체, 지자 체, 브랜드경영체의 주거래 업체, 소비 자, 농산물 유통중 사자, 대학교수 등 전문가 ○ 조사방법 : 용역	○ 조사대상을 확대하 <u>고, 외부기관 용역 조사를 통해 객관성 확보</u>
○ '10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안내	○ -	○ '10년사업부터 용자 <u>금 지원 않음</u> - <u>산지유통활성화사업으 로 통합지원</u>	○ 경영체의 초기단계 용자금 수요가 적어 집 행실적 부진 - 매년 예산 배정방 식보다 자금이 필 요한 시기에 신청하 여 지원받을 수 있는 체제로 개편
○ 기타사항	○ 원 예산업 발전 계 획 작성(예시문), 선정 심사평가표, 자금배 정 신청서, 예산이 월 현황 서식	○ 삭제 - 사업신청 및 선정평 가계획을 별도 문 서로 시행	○ 지침 간소화 조치
29. 농식품시설현 대화			
○ 성과목표 및 지표	○ 시설현대화업체 매 출액 증가율(%)	○ 식품제조업체 시설 현대화업체 매출 증 가율(%) ○ 생 산자단체의 소매 유통 점유비(%) ○ 열처리가공장 준공 (개소)	- 지침통합에 따른 (신규) 사업 목표 및 지표 추가 * ('09 신규)돼지고기 열처리 가공장
○ 사업대상자	○ 식품 및 수출업체	○ 식품제조·신선편이 - 식품제조 및 신선업체 ○ 소비자유통 : 지역조합	○ (신규)사업 추가에 따른 사업대상 변경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 지원규모	○ 15,000백만원	○ 돼지고기 열처리공장 - 돼지가공공장  ○ 70,000백만원 - 식품제조업체:35,000 - 신선편이: 11,000 - 소비지 유통:10,000 - 돼지고기 열처리:14,000	○ (신규)사업 추가에 따른 사업대상 변경
○ 업체지원 한도	○ 1,000백만원 - 자부담 포함	○ 식품제조·신선편이: 2,500백만원 ○ 돼지고기 열처리:10,000	○ 업체평균 지원한도에 따른 한도 조정
○ 사업시행주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 시·도,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 (신규)사업 추가에 따른 사업대상 변경
○ 사업시행 절차	○ 기본계획 공모 및 안내(1~3월)→사업자 접수 및 심사(4~월)→사업자 선정(5월)→사업시행(6~12월)	○ 사업안내 및 접수(12~1월)→사업자 선정(1~2월)→사업시행(3~12월)	○ 예산 집행 효율화를 위해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
○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제재	○ 별도내용 없음	○ 중도 포기자에 대한 일정 제재기간 등 페널티 부여	○ 예산의 효율화 및 집행을 제고
31. 우수농산물관리제도			
○ 지원대상자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 농산물 생산·유통 시설	○ 농산물산지유통센터로 한정된 사업대상자를 법에 명시된 우수농산물 관리대상시설로 확대
II. 과수생산 및 유통개선			
33-① 고품질생산 시설현대화			
○ 지원자격 및 요건	○ 공동브랜드 참여농가 우선지원	○ 공동브랜드 및 GAP 등 참여농가 우선지원	○ 우선 지원대상 농가의 기준 세분화
III. 담당기관역할	[농가]	[농가]	
○ 사업신청단계	<신설>	○ <u>융자희망농가는 거래</u>	○ 융자를 희망하는 농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 사업자 선정단계</p>	<p>[시·군]</p> <p>○ 사업시행주체에서 추천한 농가의 우선순위 적정성(선정순위 준수 등) 등을 검토한 후 <u>농정심의회(과수분야 산·학·연·관 협의회 등으로 대체 가능)의 심의를 거쳐 확정(전년도 12월 20일)</u></p> <p>* 선정절차 관련규정 : <u>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수산물부 훈령) 제18조 내지 제23조 참조</u></p> <p>○ <u>농림수산물부의 사업비 가내시(안) 결정 후 농정심의회, 단가 조정심의회 등을 개최하여 내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을 12월 25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물부에 보고</u></p> <p>&lt;신설&gt;</p>	<p><u>농협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가능액 확인</u></p> <p>[시·군]</p> <p>○ <u>농림수산물부의 사업비 가내시(안) 결정 후 사업시행주체에서 추천한 농가의 우선순위 적정성(선정순위 준수 등) 등을 검토한 후 과수발전협의회(농정심의회 대체 가능) 등을 개최하여 내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을 12월 20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u></p> <p>* 선정절차 관련규정 : <u>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수산물부 훈령) 제23조 내지 제25조 참조</u></p> <p>&lt;삭제&gt;</p> <p>○ <u>다음연도 1월말까지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개시 통보를 완료하여 영농철 이전에 공사를 개시할 수 있는 여건 마련</u></p>	<p>가는 사전에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가능여부 등을 확인토록 안내</p> <p>○ 사업대상자 선정 업무 등을 과수발전협의회로 변경하여 업무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내실화 도모</p> <p>○ 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p> <p>○ 중복 기재에 따른 삭제</p> <p>○ 영농철 이전에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조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는 여건 마련</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선정 순위]</p> <p>○ 2순위 : 사업시행주체와 3년 이상 장기출하계약을 체결한 농업인</p> <p>[지원대상자 선정시 준수사항]</p> <p>① 대상자 선정 순위를 지킬 것 - 생산량 대비 출하량 비율을 우선기준으로 판단</p> <p>&lt;신설&gt;</p> <p>② 대상자의 필요사업량을 나누어 지원하지 말 것</p> <p>* 사업대상자 선정시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하여야 하며, 20% 이내에서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p> <p>* 또한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농가는 선정이 자동 취소되며, 예비대상자에게 사업을 지원하여야 함.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p>	<p>[선정 순위]</p> <p>○ 2순위 : 사업시행주체와 3년 이상 출하권 위임을 장기계약 체결한 농업인</p> <p>[지원대상자 선정시 준수사항]</p> <p>①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농가는 지원제외</p> <p>② 대상자 선정 순위 준수(생산량 대비 출하량 비율을 우선기준으로 판단)</p> <p>③ 심사기준표는 표준(안)을 활용하여 지역별, 사업별 여건에 맞게 보완하여 사용</p> <p>④ 대상자의 필요사업량을 나누어 지원 금지</p> <p>⑤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미개시, 포기자 발생 등을 대비하여 최대한 사업대상자 선정 후보자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하되 사업대상자 기준 30% 전후로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p> <p>⑥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농가와 사업을 주어진 기간 내에(시군별로 사업완료 기간을 정함) 완료하지 않는 농가는 선정이 자동으로</p>	<p>○ 장기출하계약을 출하권 위임으로 명확히 하여 유통규모화 및 농가조직화 촉진</p> <p>○ 선정순위에서 이동</p> <p>○ 심사기준표를 표준(안)을 활용토록 안내</p> <p>○ 문구 수정</p> <p>○ 예비대상자 선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선정 범위를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p> <p>○ 사업을 주어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는 농가도 선정을 취소토록 하여 농가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예산집행을 제고 도모</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회(또는 과수발전협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 선정할 수 있음.</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취소됨. 단, 천재지변 등 과수발전협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p> <p>⑦ <u>사업개시 및 완료여부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취소 및 유예기간을 부여하여야 함. 다만, 자부담금 우선집행(시공업체 계약금, 자재 구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개시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를 생략할 수 있음</u></p> <p>⑧ <u>선정 취소(미개시자 및 미 완료자) 또는 사업포기자 발생시 우선순위에 따라 예비대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함. 또한 당해 연도에 지원을 받지 못한 예비대상자는 가급적 다음연도에 우선하여 지원됨을 예고하여 행정 및 농가의 투자 예측성 강화</u></p> <p>⑨ <u>참여조직별로 사업량을 분배하여 추진 금지</u></p> <p>- <u>참여조직은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등 제한적인 업무만 수행</u></p> <p>- <u>시행주체가 우선순위 선정, 유통업무 등을 수행하여 유통규모화 도모</u></p>	<p>○ 취소 대상자 중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토록 개정</p> <p>○ 사업개시 및 완료여부에 대한 일제조사 규정 및 예외조항 신설</p> <p>○ 당해연도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예비대상자는 가급적 내년도에 우선 지원토록 하여 행정의 예측성 강화</p> <p>○ 사업시행주체와 참여조직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 세무계획수립 및 시행단계</p>	<p>[사업계획 변경절차]</p> <p>- <u>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금액)를 기준으로 세부사업비를 30% 초과 변경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전승인 후 변경집행</u></p> <p>○ “붙임” 세부사업별 단가는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생략)</p> <p>[지원단가의 조정절차]</p> <p>- <u>단가 상향조정의 범위는 30%이내이며, 30% 초과 조정할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u></p> <p>○ 단가 조정시에는 행정·지도·농협·농가대표·관계전문가 등으로 “사업비 단가 조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조정된 단가를 적용</p> <p>[시공방식 결정 등]</p> <p>○ <u>사업대상 시·군과 생산자조직은 농업인이</u></p>	<p>[사업계획 변경절차]</p> <p>- <u>단, 지원단가 총액을 30% 초과 증가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전승인 후 변경집행</u></p> <p>○ “붙임”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 실정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농협중앙회 계통 구매단가, 종합물가 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생략)</p> <p>[지원단가의 조정절차]</p> <p>&lt;삭제&gt;</p> <p>○ 행정·지도·농협·농가대표·관계전문가 등으로 “과수발전협의회(사업비 단가 조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세부사업별 지원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조정</p> <p>[시공방식 결정 등]</p> <p>○ <u>사업추진 시·군과 사업시행주체는 세부사</u></p>	<p>○ 농식품부의 승인사항을 지원단가 총액에 대해서 30% 초과하여 증가할 경우로 관련 규정 완화(세부사업간 물량조정, 지원단가 내 세부단가 조정 등은 시군 자체조정토록 위임)</p> <p>○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을 지역실정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내실을 도모하고, 단가산출근거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농협계통구매단가 또는 종합물가정보를 이용토록 안내</p> <p>○ 중복기재에 따른 삭제</p> <p>○ 과수발전협의회를 통하여 세부사업별 지원단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안내</p> <p>○ 시공방식 결정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세부</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사업추진시 업체 선정에 혼란이 없도록 산·학·연·관 협의체를 거쳐 사업별로 공신력 있는 지역 업체를 선정·공지</p> <p>&lt;신설&gt;</p> <p>○ 조합 등 사업시행주체가 사업추진 농가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는 자재구입 및 입찰의 일괄 추진 등이 가능하되,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추진</p> <p>○ 작업 공정이 간단하여 농가 자체 시공으로 추진하여도 부실시공 등의 우려가 없는 사업은 공동 자재 구입 후 개별시공이 가능. 다만, 사업시행주체가 개별시공이 어려운 농가를 위한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p> <p>○ 작업공정이 전문기술</p>	<p>업별로 시공주체(업체 또는 농가)를 검토 한 후 과수발전협의회에 승인요청, 과수발전협의회는 적정성(부실시공 우려 등)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p> <p>○ 시공업체를 통해서 시공하여야 하는 세부사업의 경우 농업인의 업체선정 편의 제공과 책임시공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공지</p> <p>○ 선정된 시공업체는 반드시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p> <p>○ 조합 등 사업시행주체가 사업추진 농가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는 자재구입 및 시공을 공동입찰 또는 공동계약으로 일괄추진 가능</p> <p>&lt;삭제&gt;</p> <p>&lt;삭제&gt;</p>	<p>사업별로 시공주체를 검토 후 상부기관의 승인을 통해 사업추진 내실화 도모</p> <p>○ 시공업체 선정을 민간 전문가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하여 공정성 및 내실화 도모</p> <p>○ 하청시공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차단하여 사업의 내실화 도모</p> <p>○ 예산절감을 위한 공동구매 및 공동시공 안내</p> <p>○ 시공주체 선정이 의무화 되어 삭제</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이행점검단계</p> <p>&lt;붙임&gt; ○세부사업별 지원 단가</p>	<p>을 갖춘 업체가 수행하여야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한 사업은 전문업체를 통해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사업시행주체인 조합 등에서 공동입찰·계약을 통해 수행할 수 있음</p> <p>[시·도(시·군)] &lt;신설&gt;</p> <p>&lt;신설&gt;</p> <p>○ <u>폐업보상 대상 품목의 경우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이 가능하나 생산시설현대화사업비를 지원받은 후 폐업할 경우 폐업지원금에서 생산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한 보조금을 차감하고 지급해야 함으로 폐업 지원사업기간(2008년까지) 동안 별도관리</u></p> <p>&lt;신설&gt;</p>	<p>[시·도(시·군)]</p> <p>○ <u>사업비 집행(인건비, 자재구입 등)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무통장 입금표, 통장사본 등)로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현금 거래 불가)</u></p> <p>○ <u>직접노무비는 3천만원 미만의 사업에 한해 사업비의 1/6 한도내에서 지원대상 농가에서 1인에 한해 지급 가능</u></p> <p>○ <u>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받은 과원을 폐업할 경우 폐업지원금에서 생산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한 보조금을 차감하고 지급</u></p> <p>○ <u>주요 기계·장비는 가급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보증을</u></p>	<p>○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에 대한 안내</p> <p>○ 직접노무비 지급기준에 대한 안내</p> <p>○ 폐업지원기간 종료에 따라 별도관리 규정 등 삭제</p> <p>○ 주요 기계·장비를 가급적 전문기관의 보증 받은 제품을 구</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33-②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p> <p>○ 지원한도액 기 준 및 범위</p> <p>III. 담당기관역할</p> <p>○ 사업자 선정단계</p> <p>○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p>	<p>○ 지원단가 - 조사설계비 : 419천원/ha - 기반조성 사업비 : 25,410천원/ha · I유형 : 22,809백만원/ha II유형 : 25,410, III유형 : 27,951</p> <p>[한국농촌공사] - 주요 검토내용 : 지구 집단화 정도, --(생 략)--, 사업추진 상 문 제점 등</p> <p>[시도] ○ 시·도지사는 계획내 용을 검토하여 농림 수산식품부장관과 협 의를 한 후 기본계획 을 수립(확정)함</p>	<p>받은 기계·장비를 구 입하여야 한다.</p> <p>○ 모든 시설은 각 지역 별 내재해 기준을 충 족하여야 함(농림수산 식품부 지정고시 제 2008-76호 참고)</p> <p>○ 농가별 지원단가 산출 시 면적과 관련 없는 기본 장비 등은 기본 단가를 근거로 산출하 고, 면적증감과 관련 있는 자재는 면적에 비례하여 산출</p> <p>* 단, 농가가 지원내역 과 별개로 추가로 시 설자재를 투입하는 것 은 제외</p> <p>○ 지원단가 - 조사설계비 : 461천원/ha - 기반조성 사업비 : 32,520천원/ha · I유형 : 29,268백만원/ha II유형 : 32,520, III유형 : 35,722</p> <p>[한국농촌공사] - 주요 검토내용 : 지구 집단화 정도, --(생 략)--, <u>공동선별 공동계 산 실적</u>, 사업추진 상 문제점 등</p> <p>[시도] ○ 시·도지사는 계획내 용을 검토하여 <u>농림 수산식품부장관과 협 의를 한 후 기본계획 을 수립(확정)하되 기 본계획(안)의 주요사 항을 변경시에는 한</u></p>	<p>매토록 안내</p> <p>○ 내재해 기준을 충족 토록 안내</p> <p>○ 기본자재와 추가자재 를 구분하여 지원금 액을 산출하여 농가 의 추가 자부담 발생 방지</p> <p>○ 물가상승 등을 감안 하여 지원단가 조정</p> <p>○ 현지조사시 공동선별, 공동계산 실적을 조 사하여 유통규모화가 진행된 지역 우선 지원</p> <p>○ 한국농촌공사의 기본 계획(안)의 주요사항 을 변경하여 기본계 획을 수립할 경우 농 촌공사와의 사전협의 를 통해 내실화 도모</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33-③ 권역별 거점 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 ○ 지원자격 및 요건</p> <p>○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 조건)</p>	<p>○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1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2만톤 내외)--(생략)--</p> <p>&lt;신설&gt;</p> <p>○ 지원비율 - 일반유형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중액가능), 자부담 30% * 한·미 FTA 비준 이후 신규사업자부터 적</p>	<p><u>국농촌공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함</u></p> <p>○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1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1~2만톤 내외)--(생략)--</p> <p>&lt;지원기준&gt; * 다음 기준중 하나에 해당 될 경우만 지원 ① 先 조직화, 後 시설지원 원칙 준수 - 운영주체가 정부지원 유통회사일 경우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지원 공동마케팅조직일 경우 ② 해당 시군에 경합되는 규모화된 조직이 없고 다음조건에 해당 될 경우 - 농축산물 연간 생산액이 3천억원 이상인 시군 - 과실류의 연간 생산량이 3만톤 이상인 시군 - 운영주체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고, 3년 이내 후자가 가능한 경우</p> <p>○ 지원비율 - 일반유형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자부담 원칙 준수) * 한·미 FTA 비준 이후</p>	<p>○ 거점APC 건립 지원 활성화 및 중규모 지원에 대한 기준 구체화</p> <p>○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p> <p>○ 일반유형의 지원비율 변경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표기</p> <p>○ 일반유형의 운영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부담 원칙 준수토</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용하며 비준 이전까지는 종전 지원비율(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로 지원</p> <p>○ 사업기간 : 3년 - 년도별 지원비율 : 1년차 5%, 2년차 35%, 3년차 60%(신규사업 선정시부터 적용) * 예산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p>	<p>신규사업자부터는 지원비율 변경(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총사업비 증가시 지방비 추가 부담 가능</p> <p>○ 사업기간 : 3년 - 년도별 지원비율 : 1년차 5%, 2년차 35%, 3년차 60%</p> <p>&lt;삭제&gt;</p>	<p>록 안내</p> <p>○ 사업기간은 3년으로 관련부서와 협의완료</p>
<p>Ⅲ. 담당기관역할</p> <p>○ 사업신청단계</p> <p>○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p>	<p>[시·군]</p> <p>○ 사업성 진단신청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생략)--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신청(1월 말 기한)</p> <p>《성능검사》</p> <p>○ 선별시설·저온저장고에 대한 공공기관의 성능검사 실시 - 선별시설과 저온저장고를 설치 후 검수 전에 전문 공공기관(국립농업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등)이나 학술단체(수확 후 관리연구회 등)의 성능검사 실시(별첨 참조) - 선별기 및 저온저장고 설치 → 성능검사 의뢰 → 성능검사 → 검수 및 대금지급 * 선별기의 경우 형식검사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는 형식검사 승인을 받은 기계를 설치하여야 함</p>	<p>[시·군]</p> <p>○ 사업성 진단신청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생략)--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신청(2월 말 기한)</p> <p>《성능검사》</p> <p>○ 선별시설 : 국립농업과학원(농업공학부)의 형식검사에 합격된 모델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선별시설 전체에 대하여 전문 공공기관(국립농업과학원 등)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국립농업과학원 시험방법 참조) - (설치 전) 형식검사 확인 → 선별기 설치 → (설치 후) 성능검사 → 검수 및 대금지급 &lt;삭제&gt;</p>	<p>○ 사업성진단 신청기한을 1개월 연장하여 사업추진 편의 도모</p> <p>○ 선별기에 대한 형식검사 시스템이 구축되어 형식검사에서 합격한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후에는 전문 공공기관의 성능검사를 통해 선별시설 전체에 대한 검증을 실시</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lt;신설&gt;</p> <p>《입찰의 방법(공공 및 일반유형)》</p> <p>가. 제한경쟁 입찰방식 선택의 경우</p> <p>1) 설계 및 감리의 발주</p> <p>○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생략)--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별 엔지니어링기술」 중 <u>아래 표와 같이</u> 기술부문별 전문분야 면허를 소지한--(생략)--</p>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술분야</th> <th>전문분야</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기계부문</td> <td>공조냉동기계, 기계공정설계, 산업기계</td> <td>건축사법, 전관측량법, 전력기술관</td> </tr> <tr> <td>전기전자 부문</td> <td>공업계측제어</td> <td>라법, 정보통신법, 소등</td> </tr> <tr> <td>통신정보 처리부문</td> <td>정보통신</td> <td>관련 법령</td> </tr> <tr> <td>건설부문</td> <td>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td> <td>등록 또는 신고를 필한 업체</td> </tr> </tbody> </table>	기술분야	전문분야	비 고	기계부문	공조냉동기계, 기계공정설계, 산업기계	건축사법, 전관측량법, 전력기술관	전기전자 부문	공업계측제어	라법, 정보통신법, 소등	통신정보 처리부문	정보통신	관련 법령	건설부문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등록 또는 신고를 필한 업체	<p>○ <u>주요 기계·장비는 가급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u></p> <p>《입찰의 방법(공공 및 일반유형)》</p> <p>가. 제한경쟁 입찰방식 선택의 경우</p> <p>1) 설계 및 감리의 발주</p> <p>○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생략)--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별 엔지니어링기술」 중 기술부문별 전문분야 면허를 소지한--(생략)--</p> <p>&lt;삭제&gt;</p>	<p>○ 주요 기계·장비를 가급적 전문기관의 보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토록 안내</p> <p>○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삭제</p>
기술분야	전문분야	비 고																
기계부문	공조냉동기계, 기계공정설계, 산업기계	건축사법, 전관측량법, 전력기술관																
전기전자 부문	공업계측제어	라법, 정보통신법, 소등																
통신정보 처리부문	정보통신	관련 법령																
건설부문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등록 또는 신고를 필한 업체																
별첨 2	<p>○ 선별시설·저온저장고에 대한 공공기관의 성능검사 실시기준</p>	<삭제>	○ 국립농학공학원의 “시험방법” 적용에 따른 삭제															
33-④과 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Ⅲ.담당기관역할	<p>○ 사업자 선정단계</p> <p>&lt;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gt;</p> <p>&lt;2단계 : 현장평가&gt;</p> <p>&lt;3단계 : 공개발표평가&gt;</p>	<p>&lt;1단계 : 서면 및 현장평가&gt;</p> <p>&lt;2단계 : 공개발표평가&gt;</p>	○ 행정처리의 효율화 및 업무간소화를 위하여 평가단계 통합 실시															
○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시도(시군), 연합회] 나. 사업계획 변경절차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시도(시군), 연합회] 나. 사업계획 변경절차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 용어 변경을 통한 이해 도모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에 부합되는 범위내에 서의 <u>지원단가</u> 내 품 명과 <u>세부단가</u> 등의 조정이--(생략)</p> <p>○ 세부계획수립 및 시 행단계사업주관기관 은 사업비(금액)를 기 준으로 <u>세부단가</u>의 30%를 초과 <u>변경할</u> --(생략)</p> <p>[<u>지원단가의 조정 절차</u>]</p> <p>○ “붙임” 세부사업의 항 목별 <u>단가</u>는 지역 실 정에 맞게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u>단가산출근</u> <u>거(견적서, 원가계산</u> <u>서 등 세무서에서 인</u> <u>정하는 것에 한함)</u>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 준<u>단가</u>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 거서류를 제시하면 <u>지원단가</u>를 조정할 수 있음.</p> <p>- 단, 단가 <u>상향조정</u>의 범위는 30% 이내이 며, --(생략)</p> <p>○ <u>단가</u> 조정시에는 행 정·지도·농협·농 가대표·관계전문가 등으로 “<u>사업비 단가</u> <u>조정심의회</u>”를 구성 하여 조정된 <u>단가</u>를 적용</p>	<p>에 부합되는 범위내에 서의 <u>기준사업비</u> 내 품 명과 <u>세부사업비</u> 등의 조정이--(생략)</p> <p>○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금액)를 기 준으로 <u>세부사업비</u>의 30%를 초과 <u>증감할</u> --(생략)</p> <p>[<u>사업비 조정 절차</u>]</p> <p>○ “붙임” 세부사업의 항 목별 <u>사업비</u>는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하 되,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u>사업비산</u> <u>출근거(종합물가정보,</u> <u>원가계산서 등 세무서</u> <u>에서 인정하는 것에</u> <u>한함)</u>를 첨부하여야 하며, <u>기준사업비</u>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 하면 <u>사업비</u>를 조정할 수 있음.</p> <p>- 단, <u>사업비 증감조정</u> 의 범위는 30% 이내 이며, --(생략)</p> <p>○ <u>사업비</u> 조정시에는 행 정·지도·농협·농가 대표·관계전문가 등 으로 “<u>과수발전협의회</u> <u>(사업비 단가 조정심</u> <u>의회)</u>”를 구성하여 세 부사업별 <u>사업비</u>의 적 정성을 검토한 후 조정</p>	<p>○ 용어 변경을 통한 이해 도모</p> <p>○ 용어 변경을 통한 이해 도모</p> <p>○ 단가산출근거의 객 관성 확보를 위하 여 종합물가정보를 이용</p> <p>○ 농식품부 승인 사항 을 30% 증감 조정 으로 강화하여 사 업추진의 내실화 도모</p> <p>○ 세부사업별 사업비 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여 예산집 행의 효율성 및 객 관성 도모</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lt;심사평가지침&gt;</p> <p>34. 과원영농규모화사업</p> <p>○ 과원매매사업 지원 제외자</p> <p>○ 과원임대차사업 지원 제외자</p>	<p>※가감점부여 &lt;신설&gt;</p> <p>○ 지원 제외자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자기 경영과원을 고의로 매도 또는 임대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 다만, 종전면적으로 자력 확대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 임대지원 제외자 : 과원매매사업 지원제외자와 <u>같음</u></p>	<p>※가감점부여</p> <p>⑤ <u>소비지 대형유통업체와 브랜드를 함께 표시해 판매하는 출하, 납품 약정을 체결한 경우(3점)</u></p> <p>(2) 지원 제외자</p> <p>○ 좌동 - 다만, 「<u>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에 따른 시설로 전용한 경우와 종전면적으로 자력 확대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u></p> <p>○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u>최근 3년 동안 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자</u></p> <p>○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 포함)이 「<u>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u>」에 따라 <u>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상인 자(국세청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서로 확인)</u></p> <p>○ 지원 제외자 - 과원매매사업 지원 제외자와 <u>같음.</u></p>	<p>○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MPB 브랜드의 경우 가점 부여</p> <p>○ 과수농가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기구·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전용하여 경영규모가 축소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함</p> <p>○ <u>최근 3년 동안 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u> - 허위·담합의 경우 영구 제외</p> <p>○ 부부합산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u>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u>」에 따라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 개정안 국회심의 중 - 고시 예정금액: 35백만원 - 연내 법개정이 없을 경우 금액은 사업승인 시 포함 시행</p> <p>○ 경영회생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경영회생지원농가에 임</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 지원제외 과원</p> <p>○ 지원대상자 선정</p>	<p>○ 매입 제외 과원 - 공사에서 과원 및 농지매매사업자금으로 지원한 과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 가능 · 전매동의 사유에 <u>해당하여 회수하는 과원</u></p> <p>○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과원</p> <p>○ 지원대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기 전에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1인 신청시는 생략)를 정하여 선정 · 과원폐업지원사업에 의해 양도하는</p>	<p>다만, <u>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는 경영회생 기간에도 농지임대차 지원 가능</u></p> <p>(3) 매입 제외과원 ○ 공사에서 과원 및 농지매매사업자금으로 지원한 과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 가능 - 전매동의 사유에 <u>해당하는 다음의 과원</u> ·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의 <u>질병·사고로 영농이 불가능한 경우</u> · <u>과산등에 따른 채권 확보를 위해 매입하는 경우</u></p> <p>○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과원. <u>다만, 국가기간 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매입예정자가 인정(인정서 징구)하고 공사의 채권 확보에 지장 없는 경우에는 매입 가능</u></p> <p>(가) 지원대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기 전에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1인 신청시는 생략)를 정하여 선정 <u>&lt;삭 제&gt;</u></p>	<p>대차 지원 - 매매사업 지원 제외</p> <p>○ 지원한 과원중 재매입 가능한 농지를 질병·사고 또는 파산으로 한정 * 장기간 해외체류,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은 제외</p> <p>○ 국가 기간시설물로 인한 지상권 등의 설치되어 있는 경우 매입예정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 대상에 포함</p> <p>○ 폐업지원사업 종료로 삭제</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 매매대금의 납부	<p>과원을 매입코자 하는 자 &lt;신 설&gt;</p> <p>○ 분할납부 • 납부기간 :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5년까지 원금 분할 납부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 만 40세이하 30년, 41세~55세이하 20년, 56세~60세 이하 15년)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p> <p>• 납부방법 : 원금(이자포함) 균등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농가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거치 후 잔여기간 원금(이자포함) 균등분할 납부 또는 체증식 분할 납부</p>	<p>-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시행주체(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등)와 공동선별·공동계산 등을 출하약정을 한 과수 농가</p> <p>○ 분할납부 • 납부기간 :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5년까지 원금 분할 납부 ① 지원당시 연령(1월1일 기준)에서 만 75세에 달하는 기간으로 합 ② 농업법인 : 20년</p> <p>*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p> <p>• 납부방법 : 원금 균등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2년 거치후 상환잔여기간동안 원금 균등분할상환 가능</p>	<p>○ 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APC 참여과원에 지원우선순위 부여</p> <p>○ 연령 구간별 동일 상환기간 설정으로 형평성 문제 대두됨에 따라</p> <p>○ 상환기간 종료 연령(75세)과 현재연령의 차이를 상환기간으로 설정</p> <p>○ 법인에 대한 상환기간을 20년으로 함</p> <p>○ 체증식 상환의 경우 이용실적이 없어 삭제</p> <p>○ 상환기간 개선에 따라 복잡한 거치 요건도 단순화</p>
○ 자연재해에 따른 납부연기 및 임차료 감면	<p>○ 지원받은 농지의 필지별 농작물 피해를 적용</p> <p>○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충해로 인</p>	<p>○ 지원받은 자의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를 적용</p> <p>○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p>	<p>○ 납부여력이 있는 농가의 감면 혜택 방지 *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 농가단위로 피해를 산정, 농가별 재난지수 적용</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차료 채권 확보</li> <li>○ 행정기관 통보</li> <li>○ 지원과원 관리</li> </ul>	<p><u>하여 지원받은 농지의 필지별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차료 지원금 채권확보를 위해 연대보증인 보증한도 : 3,000만 원 이하</li> <li>○ 매매 또는 임대농지의 행정기관 통보 - 공사는 과원영농규모화사업(매매·임차) 지원자의 과원에 대한 매매·임차내역을 과원소재지 행정기관(시·군·구)에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통보하여 과원폐원사업 등과 중복 수혜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li> <li>○ 농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 시설부지로 과원을 전용하는 경우에 전용동의</li> <li>○ 전용면적에 해당면적 이상의 과원을 새로이 구입하거나 조성해야 함</li> <li>○ 해당면적 이상 과원을 구입하거나 조성할 수 없을 경우 부족면적에 대한 지원금 회수</li> </ul>	<p><u>에서 자연재해에 준하는 재해로 인정하는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차료 및 교환·분합 지원금 채권확보를 위해 연대보증인 보증한도 : 1,000만 원 이하</li> <li>&lt;삭 제&gt;</li> <li>○ 「농지법」 제35조에 따라 과원을 전용하는 경우에 전용동의</li> <li>○ 공공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공사의 동의를 받아 과원을 전매하거나 농지전용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 지사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해당면적 이상의 과원을 새로이 구입하거나 조성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대보증인 피해 방지와 부실채권 방지를 위해 연대보증 가능한 금액을 1천만 원으로 한정</li> <li>○ 폐업지원사업 종료로 삭제</li> <li>○ 지원받은 과원을 전할 경우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대체 과원을 구입하거나 조성토록 함</li> <li>* 다만,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자기의 농업경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기구·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li> </ul>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 과원농가 관리	<p>○ 다음의 경우에는 경영규모 축소로 간주하지 아니함</p> <p>- 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매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lt;신 설&gt;</p> <p>&lt;신 설&gt;</p>	<p>-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에 따른 신고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면적 이상 과원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는 부족면적에 대한 지원금 회수로 대체</p> <p>○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해제·해지 사유에서 제외</p> <p>- 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매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p> <p>③ 농업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지원받은 농지의 경우 상환완료 후 출자)</p> <p>④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에 따른 신고 시설로 전용한 경우(지원 농지는 지원금을 회수한 경우)</p>	<p>치하는 시설의 경우 지원금 납부시 지원금회수로 대체</p> <p>○ 전업농 등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하여 해당농지를 계속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때문에 경영규모축소로 보지 않음</p> <p>* 출자할 경우 지원금은 상환토록 하고, 신규지원은 허용하지 않음</p> <p>○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대체과원을 구입하거나 조성토록 함</p> <p>- 다만, 신고시설인 농산물 보관·건조 및 농자재 생산·보관 시설은 과원을 구입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회수로 대체</p>
○ 수요조사	<p>○ 당해년도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지원요건을 기준으로 한 사업대상 과수전업농 등에 대한 사업참여의향 등을 설문조사하여 2009년도 사업물량 및 소요사업비 추정에 반영</p> <p>- 조사시기 : 매년 12월~익년 1월</p>	<p>○ 사업참여 의향 등을 설문조사하여 익년도 사업물량 및 소요사업비 추정에 반영</p> <p>- 사업추진에 관한 만족도 조사시 병행 실시</p>	<p>○ 사업추진 만족도 설문조사와 수요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고</p> <p>- 수요조사 시기를 앞당겨 익년도 지역별 예산배정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 별지 서식</p> <p>36. 과수원정비지원사업</p> <p>○ 사업자 선정단계</p> <p>제3권 농촌개발 및 임업 산촌분야 [농촌개발분야] I. 생산및유통개선</p> <p>37.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p> <p>○ 사업자 선정 과정</p> <p>○ 사업시행 요령 5항(v)호</p>	<p>- 조사대상 : 사업대상 과수전업농 등</p> <p>- 조사방법 : 현지면담조사</p> <p>○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p> <p>○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년도 예산(안) 범위내에서 사업 우선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우선 순위 확정</p> <p>○ 시도에서 평가표와 함께 신청한 조직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적정평가 여부 심의</p> <p>○ 나~다항목중 1개 항목이 전체 사업비의 1/2를 초과할 수 없음</p>	<p>&lt;삭 제&gt;</p> <p>&lt;추가&gt;</p> <p>○ 농정심의회 우선순위 확정후 대상자 변경 등으로 인한 순위 변경시에는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 사후에 농정심의회에 일괄 보고 가능</p> <p>○ 농림수산식품부의 평가표 심의과정을 생략하고</p> <p>○ 시·도지사 책임하에 평가 및 대상자 선정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p> <p>○ 나~다항목중 1개항목이 전체 사업비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나 가, 나항목을 갖추고 유기·무농약농산물을 50ha이상 인증받아 생산·유통하는 조직은 다항목의 시설·장비</p>	<p>○ 시행시침 간소화 방침에 따라 삭제</p> <p>○ 사업 우선순위 확정 이후 사업 대상자가 수시로 변경되는 여건을 감안하여 농정심의회 심의를 일괄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완화</p> <p>○ 시·도와 농림수산식품부의 평가기준이 같아 평가의 차이가 없으며 행정력 낭비 방지</p> <p>○ 친환경농자재 생산 시설·장비와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가 갖추어진 경우와 인증농산물 생산면적이 일정수준 확대된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유통시설·장비분야에 투자를 확</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 평가 기준</p>	<p>○ 참여농경지의 무농약, 유기재배농산물 인증 면적비율(3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이상 : 30점</li> <li>· 20%이상 : 20점</li> <li>· 10%이상 : 10점</li> <li>· 10%미만 : 0점</li> </ul> <p>○ 세부메뉴사업별 투자 계획의 적정성(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 5점</li> <li>· 보통 : 3점</li> <li>· 미흡 : 1점</li> </ul> <p>○ 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 이용한 액·퇴비화 사업계획의 적정성(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정 : 5점</li> <li>· 미흡 : 2점</li> <li>· 미수립 : 0점</li> </ul>	<p>를 70%까지 지원가능 (대상지구의 인근 지역에 기설치된 시설을 공동활용 약정한 경우 갖추어것으로 간주)</p> <p>○ 참여농경지의 무농약, 유기재배농산물 인증면적비율(2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이상 : 20점</li> <li>· 20%이상 : 10점</li> <li>· 10%이상 : 5점</li> <li>· 10%미만 : 0점</li> </ul> <p>○ 세부메뉴사업별 투자 계획의 적정성(1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 10점</li> <li>· 보통 : 7점</li> <li>· 미흡 : 3점</li> </ul> <p>○ 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액·퇴비화 사업계획의 적정성(1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정 : 10점</li> <li>· 미흡 : 5점</li> <li>· 미수립 : 0점</li> </ul>	<p>대하기 위함</p> <p>○ '10년부터 저농약인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과수농가의 인증획득에 어려움이 많아 인증 비율을 낮춤</p> <p>○ 세부메뉴사업별 투자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상향조정</p> <p>○ 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액·퇴비화 계획의 중요성 상향조정</p>
<p>39. 녹비작물종자 대지원</p> <p>○ 사업명칭</p> <p>○ 회계성격</p> <p>○ 공급초종</p>	<p>○ 푸른들가꾸기사업</p> <p>○ 균형발전특별회계</p> <p>○ 3종류(자운영, 호밀, 헤어리벳치)</p>	<p>○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p> <p>○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p> <p>○ 3종류의 녹비효과가 있는 클로버, 수단글라스, 들묵새 등 * '10년이후 공급초종</p>	<p>○ 예산확대 및 사업량 확대를 통한 사업효과 거양</p> <p>○ 지자체수요 가능한 수용</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자공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종별 농가희망량에 따라 공급</li> </ul>	<p>재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희망량을 기초로 초종별 공급량 다소 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해외종자 공급여건, 녹비효과등을 감안적의 조정</li> </ul>
<p>40. 친환경비료지원(토양개량제보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양개량제 공급비종의 형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상 및 입상 공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량 알갱이 형태의 입상으로 공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에서 희망하는 입상으로 전환하여 살포편의 및 미살포 방지문제 해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비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에는 규산질비료 공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양검정결과 논에도 석회공급이 필요한 경우 농가의 신청을 받아 공급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산과 석회를 필요로하는 논의 경우 농가의 신청에 따라 희망하는 비종으로 공급이 가능토록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지급을 토양개량제 공급 완료후 50%, 나머지 50%는 살포완료 확인후 지급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개량제 공급완료 확인후 보조금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료공급업체는 비료 공급만하고 살포와는 무관하므로 비료 공급 확인후 보조금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대상 업체 기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회비료의 품질관리 및 우수제품 공급을 위하여 폐화석은 GR 인증제품, 석회고토는 우수단체 표준제품을 우선 구매·공급(단, 보훈단체는 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09년은 유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에게 우수한 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 제25조(인증제품의 우선구매)에 따른 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공급할 수 있도록 보완</li> </ul>
<p><b>Ⅲ. 인력육성</b></p> <p>45-① 창업농업경영인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명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칭 변경</li> </ul>
<p><b>I.사업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년도에 선정된 창업</li> </ul>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1. 사업대상자	○ 3년 자금대출제 대상 - '08년도~'06년도에 선정된 후계농업인	<u>농업경영인과 '07~'08년도에 선정된 창업 또는 신규후계농업인 중 3년 자금대출제 대상인 자</u>	○ 대출자격 대상범위 규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 창업후계농업경영인 - <u>35세미만, 영농경력 5년 미경과자</u> ○ 신규후계농업경영인 - <u>45세미만, 영농경력 10년 미경과자</u>	○ 창업농업경영인 - <u>45세 이하인 자</u> *영농경력은 제한하지 않음	○ 대상연령 완화 및 영농경력 제한규정 삭제
○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귀농정착자금, <u>사료구매자금 제외</u> )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귀농정착자금, <u>사료구매자금 제외</u> )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제외대상 정책자금 추가	
3. 지원대상	(추가)	○ 축산분야 - <u>축산신축용 토지구입 (축사신축을 한 경우에 한해 지원)</u>  (삭제)  (삭제)	○ 지원대상 추가   ○ 지원대상에 제외
4.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u>대형농기계(지원금의 50%이내)</u> *중고농기계 포함  ○ 창업농업경영인 - 2천만원~1억 2천만원 ○ 신규후계농업경영인 - 2천만원~5천만원	○ <u>35세 이하</u> - 2천만원~1억 2천만원 ○ <u>36세이상~45세이하</u> - 2천만원~5천만원	○ 연령별 지원단가 차등
6. 융자시 기타 유의사항	○ 경종분야 농지구입자금은 지목상 논·밭에	○ 경종분야 농지구입자금은 지목상 논·밭·과	○ 농지구입 대상추가 및 축사신축자금 지원단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II. 표준프로세스 (SP)에 따른 담당 기관 역할</p> <p>1. 사업신청단계</p> <p>○ 구비서류 (추가)</p> <p>2. 사업자 선정단계</p> <p>○ 후계농업인은 농 식품부 및 <u>지자</u></p>	<p>한하며, 논은 12,100원 /m<sup>2</sup>, 밭은 15,125원/m<sup>2</sup> 까지 지원(기 식재된 과수·묘목 등은 제외)</p> <p>○ '08년 신규후계농업인은 '08.2.10까지 신청</p> <p>○ <u>직업 확인에 필요한 재직증명서(신청일 기준 재직 중인 자)</u></p> <p>○ 농업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하여 가진 자에 대하여는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다만, 농업 회사법인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는 농업종사로 봄)</p> <p>○ 사업대상자 추천을 위해 읍·면등의 심사위원회와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군실무협의회 개최</p> <p>○ <u>창업농업경영인은 농림 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u></p>	<p>수원에 한하며, 논은 12,100원/m<sup>2</sup>, 밭은 15,125원/m<sup>2</sup>까지 지원 (기 식재된 과수·묘목 등은 제외). 단 <u>축사신축자금</u>은 농지구입 <u>최고한도 15,125원/m<sup>2</sup>의 70%까지 지원</u></p> <p>○ '09추가로 선발 창업농업경영인은 사업 시행년도 2월 10일 까지 사업신청</p> <p>○ 직업 확인</p> <p>○ 공공기관 및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는 창업농업경영인 선발대상에서 제외. 다만, 정규직 근로자이더라도 급여수준이 낮은 경우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선발가능</p> <p>○ 읍·면등의 심사위원회와 시·군실무협의회는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운영</p> <p>○ 교육회수 축소 (4회→1회)</p>	<p>가 규정</p> <p>○ '09년도 창업후계농업경영인을 추가선발</p> <p>○ 선발제외 대상규정</p> <p>○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간소화</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체가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 이수하여야 함</p> <p>-기본교육, 전문교육, 경영기술교육(창업농), 공통집합교육(신규농)</p>	<p>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p>	<p>*기본교육, 경영기술교육, 공통집합 교육 폐지</p>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p>○ 사업대상자가 사업추진 전에 자금요청 시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일정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에 사업추진계획서 발급</p>	<p>○ 사업대상자가 자금요청 시 <u>사업실적을 확인한 후 사업추진 확인서 발급</u></p>	<p>○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발급요건 강화</p>
5. 이행점검단계	<p>○ 시장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영농상담 및 기술교육 실시 (영농조사여부는 지속적으로 실시)</p>	<p>(삭제)</p>	<p>○ 사후관리 카드 작성생략</p>
○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을 지원.....제출(익년 1월말)해야 하며, 시장군수는.....영농상담 및 영농기술교육을 실시	<p>(삭제)</p>	<p>○ 사업자의 경영장부 제출 생략</p>	
○ 시장·군수는 자금지원 후 3년이 도래되는 연도에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	<p>(삭제)</p>	<p>○ 경영성과 평가 삭제</p>	
○ 회사, 공공기관	<p>○ 공공기관 및 회사의 정</p>	<p>○ 사업취소 대상규정</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 자(단, .....)</p> <p>45-② 농 산업인턴제</p> <p>○ 지원자격 및 요건</p>	<p>규직 근로자, 다만, 정규직 근로자이더라도 급여 수준이 낮은 경우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겸직 허용 가능</p> <p>(신설)</p>	<p>○ 농림수산물부의 도시민 농업창업과정을 이수한 자는 <u>연령제한을 폐지</u>하되, 이수 후 3년간 <u>사업신청 가능</u></p>	<p>○ 신청자격 예외인정</p>
<p>45-③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p> <p>○ 지원대상</p>	<p>(지원대상 추가)</p>	<p>○ 축산분야</p> <p>- <u>축산신축용 토지구입 (축사신축을 한 경우에 한해 지원)</u></p> <p>*농지구입자금의 최고 지원한도인 15,125원/㎡의 70%까지 지원</p>	<p>○ 축산분야 지원대상 범위 확대</p>
<p>○ 대형농기계(지원금의 50%이내) 및 중고농기계구입 자금지원</p>	<p>(삭제)</p>	<p>○ 지원대상 제외</p>	<p>○ 농 기계 임대사업과 중복</p>
<p>○ 융자시 기타 유의사항</p>	<p>○ 경종분야 농지구입자금은 지목상 <u>논·밭에 한하며</u>, 논은 12,100원/㎡, 밭은 15,125원/㎡까지 지원(기 식재된 과수·묘목 등은 제외)</p>	<p>○ 경종분야 농지구입자금은 지목상 <u>논·밭·과수원에 한하며</u>, 논은 12,100원/㎡, 밭은 15,125원/㎡까지 지원(기 식재된 과수·묘목 등은 제외). <u>단 축사신축자금은 농지구입 최고한도 15,125원/</u></p>	<p>○ 지원대상추가 및 축사신축 지원단가 규정</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Ⅲ. 표준프로세스 (SP)에 따른 담당 기관 역할</p> <p>2. 사업자 선정단계</p> <p>○ 이행점검단계</p>	<p>○ 시장·군수는.....한농연 시·군조직으로 송부하고, 한농연은.....200%에 해당하는 인원의 지원 대상 후보자를 시장·군수에게 추천</p> <p>○ 시장·군수는 관리카드 (별지 제5호 서식)..... 지원대상자로 선정된지 3년이내인 자는 매년.....,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p> <p>○ 시장·군수는 자금지원 후 3년이 도래되는 연도에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p> <p>○ 회사, 공공기관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 자(단, .....) )</p>	<p>m<sup>2</sup>의 70%까지 지원</p> <p>○ 한농연과 외부 평가기관은 평가지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지표와 평가결과를 시·군에 제출</p> <p>(삭제)</p> <p>(삭제)</p> <p>○ 공공기관 및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 다만, 정규직 근로자이더라도 급여수준이 낮은 경우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겸직 허용 가능</p>	<p>○ 평가절차 간소화</p> <p>○ 사업취소 대상 규정</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b>[별표1]</b> 우수농업경영인 추가 지원평가지표 및 평 가기관			
○ 발전가능성(30점) - 사업계획서	- 한국농업경영인증양연 합회와 시·군(농업기 술센터)이 각각 평가	- 시·군이 평가	○ 평가기관 단일화
46. 농업경영컨설팅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 농가, 법인, APC, RPC 등  (지원대상 추가)	○ 어업경영체 추가 - 어가, 어선어업, 어 촌계 등	○ 어업경영체도 경영 컨설팅 대상으로 추가 - 180 어가 이내
○ 컨설팅업체	○ 농업분야컨설턴트  (지원대상 추가)	○ 어업분야 컨설턴트 추가 - 어선어업, 양식어업, 친환경어업	○ 어업분야 컨설턴트 자격 추가
○ 업체 재인증 조 건 부과	○ 인증 2년 경과 후 평가하여 재인증 - 업체 평가 및 컨설 팅실적 미달인 업 체 2년 후 탈락	○ 업체간 경쟁유도 및 컨설팅 질 향상 유도	
○ 별표 및 서식	○ 지침에 등재	○ 일부서식 및 별표는 agrix에 등재 - [별표 1] ~[별표 3] -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 지침간소화 및 agrix 운영활성화 유도
47. 농촌출신대학 생학자금융자 지원사업			
○ 학자금융자 지 원대상 확대	○ 학부모가 농어촌에 거주해야만 융자 대상에 포함	○ 학부모가 도시지역 에 거주하더라도 대학생 본인이 농 어업에 종사하면 융자대상에 포함	○ 농어업인 대학생 학자금부담 경감 및 전문농어업 인력 육성
○ 학자금융자 우선	○ 3자녀이상 학부모	○ 농어촌거주 국민	○ 농어촌의 취약계층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지원대상 확대	자녀만 동일순위 내에서 우선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우 학생, 3자녀 이상 학부모 자녀는 순위에 관계 없이 우선지원	보호와 용자재원의 효율적 운용 도모
○ 성적부진 학생에 대해서는 용자금 신청자격을 제한	○성적으로 학자금 신청자격을 제한하지 않음	○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만 신청 * 보완책으로 대학의 「특별추천제도」를 도입	○ 무이자 학자금 이용 학생의 학업성취도 제고
○ 학자금 부정수혜자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 제재근거 없음	○ 1회 부당수혜 : 용자금회수 및 다음 1학기 신청자격 제한 ○ 2회 부당수혜 : 용자금회수 및 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 ○ 3회 부당수혜 : 용자금회수 및 향후 신청자격 제한	○ 무이자 학자금 부당 신청방지를 위한 실효성 확보
○ 동일순위내 우선지원 기준	○ 3자녀 이상 학부모 자녀 우선	○ 성적우수자 우선	○ 용자재원부족시 동일순위내에서 대상자 선정기준 명확화
48. 취약농가인력 지원			
○ 영농도우미 신청 대상 연령 확대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69세 이하의 농업인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70세 이하의 농업인과 그 배우자	○ 고령농의 은퇴연령에 맞춤 - 경영이양직접지불제 대상년령을 현행 69세에서 70세로 상향추진 반영
○ 영농도우미 이용농가는 자부담액을 부담	○ 자부담액을 이용농가가 자율적으로 부담	○ 자부담액은 도우미 파견전에 이용농가가 농협에 납부	○ 예산편성 내용과 일치 ○ 불필요한 신청을 방지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 영농도우미 이용 신청기간 폐지	○ 180일 이내 신청	○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이용농업인 편의제고
○ 영농도우미 임금과 파견일수를 지역농협이 산정	○ 일률적으로 36,400 원/일을 지급하고, 10일동안 파견	○ 농협이 작업내용, 해당지역 임금수준, 상해·부상 정도등을 감안하여 산정	○ 영농도우미 임금과 파견일수를 농협이 합리적으로 산정
○ 가사도우미 지원대상 조정	○ 65세 이상 농어촌 단독가구나 조손가구 및 장애인 동거 부부가구 ○ 65세 미만 농가중 사고발생으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농가	○ 65세 이상 농어촌 단독가구나 조손가구 및 장애인 동거 부부가구 ○ <삭제>	○ 65세 미만 사고발생 농가는 영농도우미 지원대상 ○ 65세 미만 농가에 대한 영농과 가사도우미 이중지원 방지
○ 가사도우미 지원일수를 10일 이내로 제한	○ 지원일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음	○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로 제한	○ 예산편성 내용과 일치시키고, 특정가구 편중지원 방지
○ 가사도우미 부대비용 지원제외	○ 고령농가 위로행사비, 유급지원자 임금, 사무용품비 지원	○ 지원제외	○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시 지원방안 재검토
○ 도우미 지원대상 선정기준 설정	○ 기준없음	○ 농협이 당해연도 사업비, 질병·부상정도, 작업량, 가사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 설정
<b>IV. 소득보전</b> 49. 경영이양직접 지불제			
○ 사업대상자 - 연령, 영농경력	○ 63~69세 ○ 10년이상(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 이양직전 3년)	○ 65~74세 ○ 신청직전 10년이상(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 8년이상)	○ 사업활성화를 위해 '09년도에 한해 74세 까지 포함
○ 잔여농지 면적	○ 자급 또는 취미경작	○ 자가소비량 생산 목적	○ 대상농지 확대와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 대상농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으로 1,000㎡이하의 답을 계속 경작</li> <li>○ 농업진흥지역 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으로 3,000㎡이하의 소유농지를 계속 경작</li> <li>○ 농업진흥지역 논·밭·과수원</li> <li>○ 경지정리가 완료된 논·밭·과수원</li> <li>○ 3ha 이상 집단화된 지역의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논·밭·과수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가소비 목적의 경작 면적을 고려하여 확대</li> <li>○ 실질적인 농업경영은퇴 유도</li> </ul>
○ 단계별 경영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약정 체결이후 경영이양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를 공사에 제출할 것. 이 경우 소유하는 답중 농업진흥지역안의 답은 1년 이내에, 그 밖의 답은 3년 이내에 경영이양을 완료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삭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농지를 밭, 과수원으로 확대하고 경영이양방법으로 농지은행 위탁을 포함하여 따라 단계별이양계획 불필요</li> </ul>
○ 지급단가 및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매 289.6원/㎡/연 70세까지 지급(최고 8년간)</li> <li>○ 임대 297.7원/㎡/1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매,임대 300원/㎡/연 75세까지 지급(최고 10년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이양활성화를 위해 임대이양보조금 확대</li> </ul>
○ 지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매 : 매월 지급</li> <li>○ 임대 : 약정시 1회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 지급 (매매,임대 동일)</li> </ul>	<p style="text-align: center;">"</p>
○ 약정자가 사망한 경우 보조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조금수령자의 배우자 또는 상속인에게 보조금 지급</li> <li>○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보조금수령자의 배우자 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수령자의 배우자가 당초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지급을 중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유지하도록 하고, 전업농업인등의 영농규모 확대에 계속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조금 승계를 허용</li> </ul>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인에게 보조금 지급</li> <li>○ 심의위원회 구성운영</li> <li>○ 농지관리위원 또는 이장의 의견수렴 및 확인</li> <li>○ 사후관리 기간</li> <li>○ 대상자 선정기간</li> <li>○ 약정의 해지·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략)</li> <li>○ (생략)</li> <li>○ 1월 ~ 9월</li> <li>○ 신청일부터 20일 이내</li> <li>○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지</li> <li>○ 폐지</li> <li>○ 1월 ~ 10월</li> <li>○ 신청일부터 60일 이내</li> <li>○ 기존 임대이양 약정 농지 대한 재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임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해당 농지를 이양하지 않는 경우</li> <li>○ 임대약정 농지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형질변경, 기타 전업농업인등의 영농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절차 단순화로 사업 추진 효율화</li> <li>○ 조사 직원에 대한 책임감 부여 및 사업 추진 효율화</li> <li>○ 농지은행 조사와 일치 시킴</li> <li>○ 대상자 검증 강화 및 사업추진 효율화</li> <li>○ 지침 보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이양보조금전부 반환 및 가산금 부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경영이양보조금을 수령하여 약정이 해제된 경우</li> <li>○ 경영이양 후 영농이 허용된 답외의 답에서 농작물을 경작함으로써 약정이 해제된 경우</li> <li>○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체결시의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의 내용대로 경영이양완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정의 상대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약정을 체결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39호, 2008.8.1) 제 14조 제 2항 제 1호를 준용하여 변경</li> </ul>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50.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p> <p>○ 성과목표 및 지표</p> <p>○ 사업 신청기관</p> <p>○ 이행점검단계 &lt;제재&gt;</p> <p>○ 지급대상자 사업 선정(변경)신청서 서식</p> <p>○ 대상자 선정통지서 서식</p>	<p>예정일까지 이행치 않아 약정이 해제된 경우</p> <p>○ 친환경농산물 생산 비중을 2010년까지 전체농산물 생산량의 10%로 확대</p> <p>○ 거주지 읍·면·동</p> <p>○ 사위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조치 하고, 농업인은 향후 참여를 제한</p> <p>○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칙 제14조 등의 규정에 근거</p> <p>○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p>	<p>○ 친환경농산물 생산 비중을 2013년까지 전체농산물 생산량의 10%(저농약제외)로 확대</p> <p>○ 농지소재지 읍·면·동</p> <p>○ 사위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조치 하고,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참여를 제한</p> <p>○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제20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근거</p> <p>○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p>	<p>친환경농산물 중장기 육성목표의 재설정 에 따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의 성과목표 변경 적용</p> <p>○ 사업 신청기관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변경하여 사업신청자의 친환경농업 실천(실경작 등)여부, 사후관리 등 사업대상관리 및 자금집행의 투명성 제고</p> <p>○ 사위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농업인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참여 제한기간을 향후 3년간으로 명확하게 규정</p> <p>○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 변경</p> <p>○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 변경</p>
5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 시장·군수의 승인없이 마을활성화 비용으로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마을공동기금액	○ 당년 마을공동기금의 10%이하 금액 또는 당년 기금 100만원 까지 -이 경우에도 마을회의 등을 거쳐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게 사용	○ 당년 마을공동기금의 10% 또는 당년 기금 100만원 중 적은 금액은 시장·군수의 승인없이 마을활성화 비용으로 자율적 집행 가능(마을회의 등을 거쳐 공동이익에 부합하게 사용)	○ 마을공동기금 조성액이 많은 마을(1억원 수준/연)의 재정집행 투명성 확보
○ 지원자격	○ 지원대상 법정리 소재 읍·면에 실거주(주민등록상 일치, 법인의 경우 사무소가 경작지 읍·면에 소재)	○ 지원대상 법정리 소재 읍·면에 실거주(주민등록상 일치, <b>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가 경작지 읍·면에 소재</b> )	○ 개별 농가와의 형평성 유지
○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 구성	○ 사업대상지역 선정·신청단계 -마을대표를 중심으로 주민의 참여를 통해 마을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을 통하여 시장·군수에게 2월 말까지 제출  ○ 운영위원회 대표 명칭 : 마을대표	○ 사업대상지역 선정·신청단계 -조건불리지역 마을에서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등(이하 “구성원” 이라 한다)은 조건불리지역 운영 위원 회 ( 이 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 운영위원회 대표 명칭 : 운영위원장	○ 동 직불제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신청단계부터 구성·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 확보
52.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 근거법령	○ 삶의질법 농업농촌기본법 <신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u>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시행규정</u>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시행규정에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제5장 신설
○ 용어의정의	○ 초화류, 동계작물, 하계작물 <신설>	<현행과 같음> ○ <u>마을경관보전활동</u>	○ '09년부터 경관작물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 지원조건	○ 동계작물 : 100만원/ha, ○ 하계작물 : 170만원/ha <u>&lt;신설&gt;</u>	집단화 농업인등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u>마을경관보전활동비</u> ○ <u>협약면적 비례 30만원/ha</u>	재배 외에 마을경관 보전활동비 지원 추가  ○ '09예산부터 마을경관 보전활동비 반영
○ 대상마을 선정 요건	<u>&lt;신설&gt;</u>	○ <u>철도 및 지방도급 이 상 도로변 농지 활용 유도</u>	○ 경관작물 재배면적 확대 및 공익적 측면 고려
○ 추진위원회 구성	○ <u>경관보전직불추진위 원회</u>	○ <u>마을경관보전추진위 원회</u> * 위원장 1명을 포함 <u>10명 이내</u> * <u>경관작물 재배농가 외에 마을이장 등 주 민 3인이상 참여</u>	○ 경관작물 재배외에 마 을주민 참여를 통한 경관보전활동을 협약 대상에 포함
○ 마을경관보전 협약 체결기간	○ <u>1년</u>	○ <u>3년연속 시행지구 중 우수한지구는 3년까 지 허용하되, 시군 전 체시행면적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u>	○ 안정적인 축제 및 도농 교류 기반지원을 위함
○ 보조금지급 요건	○ <u>경관작물재배관리 요 건 이행기준 제시</u> <u>&lt;신설&gt;</u>	<현행과 같음>  ○ <u>마을경관보전활동 내 용 및 이행요건 추가</u>	○ '09년 마을경관보전활 동비 지원 추가에 의함
53. 농업인재해공 제사업			
○ 사망 보상수준 (재해공제)	○ 45백만원(단일형)	○ 40,50,60(선택형)	○ 농업인이 부담능력 과 보상수준을 고려 하여 선택할 수 있 는 기회 제공
○ 장제비특약 (재해공제)	-	○ 공제기간 중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기본공제료 외 특약 추가 공제료 : 22,000원)	○ 산재보험에서도 장 제비를 지원(100만 원)하고 있으므로 현 제도에도 신규도입 필요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 상시직장보유자 지원제한 (재해공제)	○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만, 국고 예산이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4/4분기 이후 지원 가능)	○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자는 국고지원(공제료 50%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업 농업인만 지원
○ 사업 대상자, 지원자격 요건 (농기계종합공제)	○ 공제대상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 분무기, 관리기, 이앙기)를 소유, 관리하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	○ 공제대상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 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를 소유, 관리하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자 (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 기종 및 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농협 추가
○ 사후관리 (농기계종합공제)	-	○ 지역농협이 소유하는 단기임대용(농작업대행포함) 농기계,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등의 공제료를 농업인에게 부담시킬 경우 공제료를 환수	○ 공제료 국고 지원으로 농업인 부담경감
54.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 건강보험료 지원자 일제조사	○ 지자체 읍·면·동에서 실시	○ 지자체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 지자체간 교차점검	○ 일제조사의 정확성 및 내실화 제고
○ 지원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농식품부로 연2회	-	○ 건강보험공단에서 점검한 지원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농식품	○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자에 대한 점검 확인강화로 사업의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상·하반기) 제출		품부로 연2회(상·하반기) 제출	내실화 제고
○ 농어업인 확인서에 『농어업인 해당일』 명기	-	○ 『농어업인 해당일』 명기란 신설	○ 건강보험료 지원 적용일 결정에 따른 민원발생 방지
○ 농어업인 확인서에 『개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 명기	-	○ 『개인정보의 제공·활용동의』란 신설	○ 개인정보 보호강화에 따라 개인정보를 사업추진시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함
55. 농어업인연금 보험료지원사업			
○ 연금보험료 지원자 일제조사	-	○ 지자체를 통한 일제 조사 실시 및 지자체 간 교차점검	○ 지원자에 대한 적격성 확인강화로 사업의 내실화 제고
○ 지원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농식품부로 연2회(상·하반기) 제출	-	○ 연금공단에서 점검한 지원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농식품부로 연2회(상·하반기) 제출	○ 연금공단에서 지원자에 대한 점검 확인강화로 사업의 내실화 제고
○ 농어업인 확인서에 『개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 명기	-	○ 『개인정보의 제공·활용동의』란 신설	○ 개인정보 보호강화에 따라 개인정보를 사업추진시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함
<b>V. 소득원개발</b>			
56-② 관광농원			
○ 담당기관 역할			
○ 사업계획변경	○ 시장·군수는 면적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농원면적의 20%이상농장조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계획변경여부 결정 - 사업자의 능력에 비	○ 시장·군수는 면적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농원면적의 20%이상농장조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계획변경여부 결정 - 사업자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투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	○ 기 조성된 관광농원이 사업장(면적)확장시 연접에 관한 사항을 명시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58. 농업경영회생 자금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재난지역의 신청일 기준 완화</li> <li>○ 일시적 경영위기 기준(예시) 완화</li> <li>○ 지원제외 대상자 세부기준 마련</li> <li>○ 이행점검단계 - 부채정리의무 부과대상</li> </ul>	<p>해 과다한 투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 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설)</li> <li>○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한 자</li> <li>○ 5년 이상 연체기간이 발생하지 않았던 농업인이 최근 1년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li> <li>○ 농업협동조합 상임 임·직원</li> <li>○ 비농업용 부동산 보유자</li> <li>○ 점검결과 비농업용 자산이 있을 시는 자산 매각 등을 통한 부채정리 의무부과</li> </ul>	<p>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기성농원의 사업장(면적)확장시에는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연결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변경승인여부를 결정</u></li> <li>※ <u>기성농원에 연결하여도로, 농로, 소하천 등이 있는 경우</u></li> <li>○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자</li> <li>* 시행일자 : '08.12.1</li> <li>○ 2년 이상 연체기간이 발생하지 않았던 농업인이 최근 6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li> <li>* 시행일자 : '08.12.1</li> <li>○ 본인 또는 배우자가 -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및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li> <li>- 비농업용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li> <li>* 시행일자 : '08.12.1</li> <li>○ 점검결과 비농업용 자산이 있을 시는 자산 매각 등을 통한 부채정리 의무부과</li> <li>- 단 비농업용 부동산은 '07.7.1 이후, 골프회원권은 '08.12.1 이후 신규 대출농가에 한함</li> </ul>	<p>변경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재난지역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신청기한을 1년으로 연장</li> <li>○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농업경영위기(예시)의 일시적 경영위기 기준 완화</li> <li>○ 지원대상 농업인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 등 지원제외 대상자 세부기준 마련</li> <li>○ 부채정리 의무부과대상을 지침개정시기와 일치하여, 개정지침의 소급적용문제를 해소</li> </ul>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59. 농축산경영자 금지원 ○ 일반농업경영 자금과 전문농 업경영자금 통 합운용	○ 벼농사 위주 농가 는 일반농업경영자금 으로, 과수,채소,원예, 특작 등은 전문농업경 영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 일반농업경영자금과 전문농업경영자금을 통 합하여 ‘농업경영자금’ 으로 운용	○ 지원금액이 농가당 10백만원으로 축소 되어 ‘전문’이라는 용어 부적절 ○ 지원대상이 대부분 중소규모의 복합농 이기 때문에 구분하 여 지원할 실익이 없음
<b>VI. 생활환경개선</b>			
60. 농어촌주택개 량사업 ○ 성과목표 및 지표	○ '09년 ~ '13년 까지 34,000동의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개량 및 정비를 지 원하여 농촌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 고, 농촌으로의 도 시민 이주 촉진	○ '07년 ~ '13년 까지 45,600동 29,440억원 (119조 투융자 계 획)의 노후·불량주 택에 대한 개량 및 정비를 지원하여 농 촌주민의 주거환경 을 개선하고, 농촌 으로의 도시민 이주 촉진	○ 사업기간 및 목표물 량 조정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자금 이용시: 3%(농 업인, 일반인 구분 없음) ○ 농촌주택정비자금(이 차보전) 이용시: 농업 인 3%, 일반인 4%	○ 3%(농업인, 일반인 구 분 없음)	○ 대출금리를 농업인, 일반인 구분 없이 3% 로 단일화
○ 담당기관 역할 2. 사업계획 수 립단계	○ 시·도의 전년도 집 행량, 신청량, 사업 우선순위, 지방비 분 담분 확보상황 등을 종합검토	○ 시·도의 전년도 집 행량, 신청량, 사업 우선순위, 지방비 분담분 확보상황, 빈집정비 실적 등을 종합검토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계획 확정 시달 시 빈집정비 실적도 고려하도록 변경
3.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 시·군·구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신청	○ 시·군·구에 농어 촌주택개량사업 신 청(전년도 12월 1	○ 신청기간 명시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단계	<p>○ 1순위: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전원마을조성, 농·산·어촌마을종합개발, 마을하수도정비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등)과 연계하여 추진이 필요한 지구(권역) 내에서 주택개량을 신청한 자</p> <p>○ 2순위: 공공사업 등으로 기존 주택이 수용되거나 철거되어 새로운 주택건축을 위해 주택개량을 신청한 자(공공사업사업시행부서의 확인서 첨부)</p> <p>○ 3순위: 기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와 무주택자 또는 귀농·귀촌자</p> <p>※ 동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박공·모임형 지붕과 개방형·투시형 담장으로 설치하면서 시·군·구에서 권장하는 색채 등 경관계획에 따라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자를 우선 선정</p> <p>○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지역의 1년 이상 무주택 주민의 주거안정과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타 시·군·</p>	<p>일~당해년도 1월 31일까지)</p> <p>① 타 시·군·구 농어촌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당해 농어촌에 거주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확정 물량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해야 한다.</p> <p>- 다만, 신청자 중 이에 해당하는 자가 20%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 희망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p> <p>② 일반 희망자에 대해서는 i)주택 노후도(노후도 높을 수록 우선 지원), ii)소득수준(소득수준 낮을 수록 우선 지원), iii)신청자 연령(연령 높을 수록 우선 지원), iv)가족원 수(가족원 수 많을 수록 우선 지원), v)농어촌 경관과의 조화(경관계획 등에 부합시 우선 지원)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신청자를 선발한다.</p> <p>- 각 기준별 배점 및 세부 항목 등은 지역 여건에 맞게 결정·운영할 수 있고, 이외에 추가 기준을 반영할 수 있다. 단, 노후불량주택 개량이라는 사업의 취지 및 농어</p>	<p>○ 귀농·귀촌자, 신재생에너지주택 개량 희망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수정</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3.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단계</p> <p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시·도</p>	<p>구 농어촌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당해 농어촌에 거주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자에게 당해년도 사업량의 20% 범위 안에서 대상자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p> <p>○ 시·군·구별 대상자 선정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p> <p>○ 시·도지사는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p>	<p>촌 지역개발 정책의 방향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p> <p>- 시·군·구에서는 시·도에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시(3.15) 구체적 선발 기준표를 함께 제출해야하며,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시(3.31) 이를 취합하여 제출해야 한다.</p> <p>○ 시·군·구별 대상자 선정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매년 3월 15일까지)</p> <p>○ 시·도지사는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p>	<p>○ 제출기한 명시</p>
<p>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p> <p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주민(사업신청자)</p> <p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시·군·구</p>	<p>○ 건축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득하여 지정 농협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농협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일부 대출 가능</p> <p>○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주택 건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택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p>	<p>○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지정 농협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농협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일부 대출 가능</p> <p>○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주택 건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택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사용승인서)를 발급</p>	<p>○ 관련법(건축법 제22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수정</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5. 자금배정단계</p> <p>시·도</p>	<p>○ 지자체는 지방비 부담금에 대하여 2/4분기 안에 전액 주거환경개선자금으로 농협중앙회에 기탁</p>	<p>○ 시·도지사는 지방비 부담금에 대하여 2/4분기 안에 전액 주거환경개선자금으로 대여하고 해당 시·군에 사업추진을 독려</p> <p>○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상황 및 대출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매 분기말 기준, 익월 5일까지, &lt;서식 3&gt;</p>	<p>○ 시·도 역할 명시</p>
<p>시·도</p>	<p>○ 지자체는 지방비 부담금에 대하여 2/4분기 안에 전액 주거환경개선자금으로 농협중앙회에 기탁</p>	<p>○ 지자체는 지방비 부담금에 대하여 2/4분기 안에 전액 주거환경개선자금으로 농협중앙회에 기탁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매 분기말 기준, 익월 5일까지</p>	<p>○ 지방비 기탁여부를 보고하도록 명시</p>
<p>6. 이행점검단계</p> <p>사군구/시·도</p>		<p>○ 대출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금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대출마감일 연장신청 : 매년 12월 15일까지, &lt;서식 4&gt;</p> <p>- 연장 기간 : 당해 회계연도 익년 6월 말까지</p> <p>* 매년 11월 30일까지 원인행위(착공, 대출신청 등)를 하지 않은 사업대상자는 연장대상에서 제외시키되 대출을 포기한 사업대상자는 지자체별로 포기각서 등을 징구하여 관리</p> <p>* 일괄연장은 인정하지 않으며 시·군·구는</p>	<p>○ 대출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자금에 대해 연장 신청토록 명시 (농림수산사업자금관리기분규정)</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7. 성과지표 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p>	<p>○ 성과지표('08) - 불량주택 정비(실적) : 95% ○ 성과지표 측정 - 측정 방법 · 불량주택 정비 실적: 융자금 지원 및 건축실 적(주택 건축착공 실적 /계획×100, 지자체의 추진 실적 보고서, 12월 말 기준)</p>	<p>농협의 시·군지부(시 도는 시·도지역본부) 에 사업대상자별로 대 출실적을 파악한 후 정 확한 연장수요를 제출 할 것</p> <p>○ 성과지표('09) - 불량주택 정비(%) : 78 - 주민 만족도(%) : 70 ○ 성과지표 측정 - 측정 방법 · 불량주택 정비: (융자 지원 대상주택개량 실적 누계치 / 전체 주택개량 목표치)×100, 지자체의 추진 실적 보고서, 12월 말 기준 · 주민 만족도(%) : (전체 주민수 불만족 주 민수)/전체 주민수 × 100, 12월말 기준</p>	<p>○ '09년도 성과관리시행 계획에 따라 변경</p>
<p>IV. 2010년도 사업 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사 항</p> <p>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p> <p>[임업·산촌분야] I. 생산및유통개선 63. 산림사업종합 자금지원</p> <p>○ 이차보전대상 융자금의 취급 절차 간소화</p>	<p>가. 사업신청 ○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사업신청(2009 년 1~2월)</p> <p>○ 시행전 산림청으로 부터 융자한도액 배정승인을 받은후</p>	<p>가. 사업신청 ○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사업신청(2009년 12월 1일~2010년 1 월 31일) ○ 대출조건 : 3%(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p> <p>○ 이차보전대상 사업 에 한하여 연초 산 림청에서 총 융자한</p>	<p>○ 사업신청기간 변경 ○ 대출조건 명시</p> <p>○ 이차보전대상 융자 금의 경우 산림조합 자체자금으로 대출</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 경작여부 가능 증빙서류 확대</li> </ul>	<p>산림조합에서 대출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빙 가능서류 - 임대차계약서</li> </ul>	<p>도를 배정하면 시행 전 별도의 융자한도 승인 절차 없이 산림조합에서 자체 대출하도록 하여 신속한 대출로 임업인의 편의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빙 가능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원부</li> </ul>	<p>되므로 총 융자한도배정액내에서 산림청 승인없이 산림조합에서 자체 대출하도록 하여 자금 집행의 신속성 및 효율성 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경수·분재, 표고 등 농지 경작여부 확인용 증빙서류로 농지원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효율성 도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사업 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사업 - 사립자연휴양림 조성 - 임업기계장비 생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에게 쾌적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의 진흥발전 도모</li> <li>○ 임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개발·보급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산림소득 지원사업의 세부사업 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되는 세부사업 - 밤나무 노령목관리, 친환경밤생산, 밤·잣 생산장비, 조경수 관정시설, 임산물표준출하, 공동선별비 지원, 임산물 가공지원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산림소득지원의 보조수반사업 중 자부담 및 보조금 일부를 국고융자로 전환한 융자 대상사업 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융자 사업의 확대 및 구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융자 - 전문임업인육성(장기수조림, 숲가꾸기, 임야매입, 기타사업 중 운영자금), 사립수목원조성</li> <li>○ 자부담후 잔액융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융자 - 전문임업인육성(전체사업)</li> <li>○ 자부담후 잔액융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임업인육성 전체사업에 대하여 사전융자 가능하도록 하여 전문임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립수목원조성은 시설자금성격이 강하므로 사후융자에 포함</li> <li>○ 단기산림소득자금</li> </ul>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산림투자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산림소득자금</li> <li>○ 정책자금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조림</li> <li>- 탄소배출권조림</li> <li>- 바이오에너지조림</li> <li>- 조림지 육림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산림소득자금 (순수용자사업)</li> <li>○ 사후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산림소득자금 (보조수반 용자사업), 산림수목원조성</li> </ul> </li> <li>○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조림</li> <li>- 탄소배출권조림</li> <li>- 바이오에너지조림 (고무나무, 팜유나무)</li> <li>- 조림지 육림비</li> <li>- 벌채 직접사업비(사업비의 70%, 20억 이내)</li> <li>- 임산물가공시설 직접사업비(사업비의 70%, 20억 이내, 목질계 바이오매스 생산시설 포함)</li> </ul> </li> <li>※ 해외조림 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림부문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고 벌채 및 가공부문은 7월 이후 신청 및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을 순수용자와 보조수반 용자사업으로 구분하고 순수용자사업에 한하여 사전용자 가능하도록 하여 효율성 도모</li> <li>○ 해외산림자원개발은 초기 투자 비용이 높아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투자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산림자원 확보사업 참여와 개발로 해외산림자원 확보에 기여</li> </ul>
<p>64. 산림소득증대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대상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잣나무 조림지 등 작업로 장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실류 조림지를 경영 관리하는 산주</li> </ul> </li> <li>○ 독립가·임업후계자 경영임지 작업로시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가·임업후계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삭제</li> <li>○ 삭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없음</li> <li>○ 경영지원사업으로 이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자격 및 요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경영체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경영체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농조합법인, 농업</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르도록 함</li> </ul>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 지원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경영체를 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출자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li> <li>·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li> <li>·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 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로 출자한 법인</li> <li>·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li> </ul> </li> <li>※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한하여 적용</li> <li>-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법인경영체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li> <li>· 법인경영체가 생산하는 주생산 품목과 관계없이 일반적 필요에 의한 별도의 사업 하나만을 지원할 수 없음.</li> <li>- 지원대상자 선정시 1회에 3일 이상 시·군의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등 교육을 이수한 법인경영체 우선 선정</li> </ul> <p>○ 보조율(국고:지방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법인을 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별표 4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li> <li>-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법인경영체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li> <li>- 법인경영체가 생산하는 주생산 품목과 관계없이 일반적 필요에 의한 별도의 사업 하나만을 지원할 수 없음.</li> </ul> <p>○ 보조율(국고:지방비):</p>	<p>○ 사업별로 세분화되</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 2010년도 사업 신청</p> <p>65. 임산물 유통 개선 지원</p> <p>○ 지원비율</p>	<p>용자:자부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밤나무노령목관리 (2:2:0:6)</li> <li>- 밤방제장비(2:2:5:1)</li> <li>- 밤작업로(2:2:3:3)</li> <li>- 밤 나무 토양 개 량 (8:2:-:-)</li> <li>- 밤 · 잣 생산 장 비 (2:2:-:6)</li> <li>- 친 환 경 밤 생 산 (2:2:-:6)</li> <li>- 관 상 수 토 양 개 량 (8:2:-:-)</li> <li>- 조 경 수 관 정 시 설 (5:2:-:3)</li> <li>- 산 립 복 합 경 영 (2:2:3:3)</li> </ul> <p>○ 2008년도 사업시행 지침서 내용을 준 용하여 신청</p> <p>○ 임산물 표준화지원</p>	<p>용자:자부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밤나무노령목관리 (2:2:2:4)</li> <li>- 밤방제장비(2:2:2:4)</li> <li>- 밤작업로(2:2:2:4)</li> <li>- 밤 나무 토양 개 량 (7:2:-:1)</li> <li>- 밤 · 잣 생산 장 비 (2:2:2:4)</li> <li>- 친 환 경 밤 생 산 (2:2:2:4)</li> <li>- 관 상 수 토 양 개 량 (7:2:-:1)</li> <li>- 조 경 수 관 정 시 설 (3:2:2:3)</li> <li>- 산 립 복 합 경 영 (2:2:2:4)</li> </ul> <p>○ 2009년도 사업시행 지침서 내용을 준 용하여 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공모에 의거 대상자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li> <li>- 송이산가꾸기사업 제외</li> <li>○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공모에 의거 대상자 선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li> <li>- 2008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09년도 사업자로 선정된 자에 한해서 지원</li> </ul> <p>○ 임산물 표준화지원</p>	<p>어 있는 보조율을 유사사업별로 통일</p> <p>○ 공모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업신청 방법 변경</p> <p>○ 자부담을 경감하기</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선정</li> <li>○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기계장비 구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20%, 지방비20, 자부담60%</li> <li>○ 공동선별비지원 - 국고20%, 지방비20, 자부담60%</li> <li>○ “임산물산지종합센터”사업에 대하여 지자체의 신청에 의한 지역배분형식으로 사업 대상자 선정</li> <li>○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기계장비 구매 -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구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20%, 지방비20, 용자 20%, 자부담 40%</li> <li>○ 공동선별비 지원 - 국고20%, 지방비20, 용자20, 자부담40</li> <li>○ “임산물산지종합센터”사업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공모에 의거 대상자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방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지자체를 통하여 공문으로 신청하고 심사·평가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li> <li>○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기계장비 구매 - 사업자가 기계·장비 구입시 검증장비 구매,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보증을 받은 장비를 우선 구매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하여 일부 용자 지원</li> <li>”</li> <li>○ 산림소득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상자 선정을 적극적 개념으로 변경</li> <li>○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의 기계장비구입시 보증과 효율적 사후 관리 유도</li> </ul>
<p><b>66. 산림바이오매스 사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조건(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li> <li>○ 펠릿제조시설 지원 대상자 - 민간단체(산림조합중앙회)에서 신청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조건(보조율) -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li> <li>○ 펠릿제조시설 지원 사업은 지자체 보조 예산으로 변경 되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공모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및 책임감 고취를 위해 자부담 상향 조정</li> <li>○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공모</li> </ul>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67. 벌채운재로 시설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보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li> </ul> </li> </ul>	<p>의거 대상자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보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및 책임감 고취를 위해 자부담 상향 조정</li> </ul>
<p>69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기반지원사업내용변경</li> <li>○ 표고재배(원목, 톱밥)단지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묘목비 지원</li> <li>○ 표고재배(원목, 톱밥)단지사업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삭제</li> <li>○ 삭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고 작목과 같이 부대경비 성격 제외</li> <li>○ 개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 산림소득사업에서 표고재배 단지사업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형평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상산림식물(생산기반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sup>2</sup>당 유리온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법정 단위로 변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밤나무토양개량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 및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제외 기준 명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비에 설계비 및 감리비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비에 설계비 및 감리비를 포함하여 건축비에 대한 해석 논란 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 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결산실적 결과를 회계연도가 종료한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 결산실적 결과 보고시기 명시</li> </ul>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 개인 지원한 도액	○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마을공동 사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개 인지원 한도액조정
○ 환류	○ 신설	○ 주민소득지원사업 평가결과 10% 반영 하여 도별 2009년도 사업비 차등 지원	○ 평가결과 반영 비율 구체화
70. 조림숲가꾸기 ○ 조림방법 신설	○ 경제수조림 - 용재생산을 위한 장 기수 위주 조림지원	○ 속성경제수조림(신설) - 경제수조림과 특용 수·유실수조림을 병행할 수 있는 조 림방법 신설(지자체 대행조림 또는 산주 현금보조방식)	○ 산주소득증대
○ 지원비율	○ 공공산림가꾸기 · 보조율(국비70%, 지 방비 30%)	○ 공공산림가꾸기 · 보조율(국비60%,지방 비 40%)	○ 지방자치단체의 책 임 강화를 위함
제4권 축산·수산 분야 [축산분야] I. 사육기반확충			
71. 조사료생산기 반확충사업			
○ 세부사업명	○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 * 기계·장비 및 사일 리지 제조비 지원 ○ 대규모 사료작물 재 배사업 * 기계·장비 지원	○ 조사료 사일리지 제 조지원 ○ 경영체에 대한 기계 장비 지원(보조) <삭제>	○ 현행의 두 사업은 모두 기계·장비를 보조지원하고, 보조 비율도 동일하나, 두개의 사업으로 분 리되어 있어 시·도 및 사업신청자가 혼동 ○ 각 사업을 기계·장 비 보조지원과 제조 비 지원사업으로 구 분하여 현행의 두 사업은 기계·장비 보조지원 사업으로 지원되도록 개선
○ 조사료 사일리	○ 사일리지 제조비 지	○ 사일리지 제조비 지	○ 농가부담 경감 및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지 제조비 및 유통비 지원	원대상 : <u>동계</u> 사료작물 ○ 지원단가 · 사일리지 제조비 : (동계) <u>50천원/톤</u> (하계) - · 유통비 : <u>40천원/톤</u>	원대상 : <u>동계 및 하계</u> 사료작물 ○ 지원단가 · 사일리지 제조비 : (동계) <u>60천원/톤</u> (하계) <u>20천원/톤</u> · 유통비 : <u>60천원/톤</u>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 하계 사료작물은 수확량 및 예산형편 등을 고려, 동계 사료작물 제조비 단가의 1/3 수준 적용
○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보조사업)	○ 지원기준 : <u>보조 30%, 지방비 30, 자담 40</u> ○ 지원단가 : <u>130백만원/1set</u>	○ 지원기준 : <u>보조 40%, 지방비 40, 자담 20</u> ○ 지원단가 : <u>150백만원/1set</u>	○ 농가부담 경감 및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73. 가축분뇨처리 지원			
○ 세부사업	○ 단독시설, 공동시설  < 신설 >	○ 개별시설(자금의 용도 및 지원한도액 등은 구분) - 액비성분분석기	○ 세부사업 통합 ○ '09년부터 신규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 적용사항 : 농림사업실시규정 [별표4](농업법인 지원요건) 규정은 '09년부터 적용	- 공통 적용사항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별표4](농업법인 지원요건)은 공동자원화시설만 적용	○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 대비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육상처리 기반 조기 조성을 위해 관련규정을 공동자원화시설만 적용
○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개별시설 < 신설 >  ○ 액비저장조 시설	○ 개별시설 -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 생산·이용 계획이 수립된 자, 다만,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은 '10년부터 시범사업 추진 계획) ○ 액비저장조 시설 · 고정식 액비저장조(200톤 이상 등)를 여러개 지원할 경우	○ 가축분뇨의 자원화 다양화  ○ 액비의 품질 균일화 및 관리 강화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p> <p>○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p> <p>○ 사업신청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 신청</p> <p>○ 사업자 선정단계</p>	<p>○ 공동자원화시설 : 보조30%,지방비20, 용자 50%</p> <p>○ 용자금 또는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가능</p> <p>○ 사업비 지원 한도액 · 공동자원화시설:25억원 · 액비살포비 : 150천원/ha</p> <p>○ 공동자원화시설: 시·도 &lt; 신설 &gt;</p> <p>○ 우선순위 &lt; 신설 &gt;</p>	<p>2단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p> <p>○ 공동자원화시설 : 보조50%,지방비 30, 용자 20%</p> <p>○ 용자금 또는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가능(공동자원화시설은 대체 불가)</p> <p>○ 사업비지원한도액 · 공동자원화시설 : 30억원 · 액비살포비 : 200천원/ha</p> <p>○ 공동자원화시설:시·도(시·군으로 위임 가능) - 시·군은 가축분뇨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퇴·액비 이용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당해 계획 등을 고려하여 신청 - 공동자원화시설 신청은 시·도에서 자체 평가팀을 구성하여 우선순위 결정후 신청</p> <p>○ 우선순위 · 액비저장조 : ① 전문유통주체, ② 전문유통주체와 저장조 이용·관리 계약을 체결한 농가, ③ 액비살포 농경지를 확보하고 액비살포 능력이 있는 농가 · 액비살포비는 공동</p>	<p>○ 쇠고기 수입재개 등에 따른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조율 상향조정</p> <p>○ 공동자원화시설 보조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공동자원화시설은 예외</p> <p>○ 철근, 시멘트, 유류 값 인상 등으로 인한 지원단가 조정</p> <p>- 사업주관기관의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 신청 및 사업추진 강화</p> <p>○ 액비저장조 관리 효율화 및 공동자원화 사업 활성화</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 세부계획수립	○ 시·도(시·군) < 신설 >	○ 시·도(시·군) -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사업타당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을 것(기본·실시설계 등)	○ 사업의 내실화 및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시·도의 관리 강화
○ 사업시행	○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 공동자원화시설 : 농식품부	-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 공동자원화시설 : 시·도	
○ 사업시행	○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 < 신설 >	○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 - 시스템 선정시 공법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	○ 공법선정의 투명화
○ 이행점검단계	○ 공동자원화시설 < 신설 >	○ 공동자원화시설 - '09년 6월말까지 인·허가 미획득 또는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자동취소	○ 사업의 조속한 착공
○ '10년도 사업신청	< 신설 >	○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다만,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 가스 생산하는 시설의 경우 '10년부터 공동자원화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범사업 추진 계획) ○ 액비살포면적 등 운영 실적이 미흡한 액비유통센터는 '10년부터 액비살포비 차등 지원	○ 가축분뇨 자원화의 다양화  ○ 사업비의 차등지원을 통한 사업추진 효율화
74. 마필산업육성 별표 1 ○ 사육시설 - 마사 - 관리사	지원규모(단가) - 273천원/m <sup>2</sup> - 606천원/m <sup>2</sup>	지원규모(단가) <삭 제> <삭 제>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 창고	- 182천원/m <sup>2</sup>	<삭 제>	○ 승마장 등에 사용되는 시설·장비의 다양화로 현행 단가가 현실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개선 함으로써 사업 활성화 도모 *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사업 등 유사 사례를 감안
○ 조련시설			
- 실내마장	- 303천원/m <sup>2</sup>	<삭 제>	
- 실내마장	- 30천원/m <sup>2</sup>	<삭 제>	
- 자동보행기	- 50,000천원/m <sup>2</sup>	<삭 제>	
- 원형마장	- 152천원/m <sup>2</sup>	<삭 제>	
- 약·목욕장	- 152천원/m <sup>2</sup>	<삭 제>	
- 주로	- 22천원/m <sup>2</sup>	<삭 제>	
○ 공동육성조련시설	※ 사육·조련시설의 단가를 적용	<삭 제>	
○ 장비			
- 수송차량	- 35,000천원/대	<삭 제>	
- 레이더(주조정지)	- 1,300천원/대	<삭 제>	
○ 승마장	※ 사육·조련시설의 단가를 적용	<삭 제>	
75. 송아지생산안정사업			
○ 사업시행기관 범위	(신설)	○ 사업시행기관은 농협(지역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한우협동조합, 한우협회)를 말함	○ 현행 사업시행기관인 농협(지역농축협 포함)에서 생산자단체까지 확대됨에 따라 추가 삽입
○ 사업자선정단계에서 시·군 역할 추가	○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자 부담금(10천원)과 동일한 금액을 사업시행기관에 납입(사업 참여 신청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 납부)	○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자 부담금(10천원)과 동일한 금액을 사업시행기관에 납입(해당사업년도내) * 지자체가 해당 사업년도 내에 지자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익년도부터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지자체 소속농가에 보전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 지자체 부담금 납부 전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농가 보전금 지급제한에 따른 농가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전금 지급제한 규정개정에 따라 병행 개정
	(신설)	○ 추가	상 동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 전년도 재계약우 중 이월 계약 우의 사업 참 여기간 인정범 위</p> <p>○ 사업시행기관 확대에 따른 농가·지자체 부담금 관리방 법</p> <p>○ 보전금 지급을</p>	<p>○ 전년도 사업참여시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해 당해 계약암소 의 계약송아지에 대 하여는 계약자 부담 금 면제</p> <p>○ 농협중앙회는 부담 금 관리시 최소한 축산발전기금의 예 치금 이자 수익률 수준을 유지해야 함</p> <p>○ 지역축협은 계약자 부담금과 지자체부 담금을 수납완료 후 15일 이내에 농협중 양회에 납입</p> <p>○ 농협중앙회장은 매</p>	<p>- 한우조합 및 한우협 회지부가 사업시행 기관으로 선정 요청 시 검토하여 승인 여부 결정</p> <p>- 사업시행기관이 되고 자 하는 기관은 해당 지자체(시·군)의 승 인 필요(지역농·축 협 제외)</p> <p>○ 전년도 사업참여시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당해연도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 하고, 1.1일부터 안 정사업에 참여한 것 으로 본다</p> <p>○ 농협중앙회는 부담 금 관리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를 다하여 효율적으 로 운용하여야한다</p> <p>○ 지역축협 계약자 부 담금은 청약기간 만 료 후 30일이내,지자 체 부담금은 수납완 료 후 7일이내에 농 협중앙회에 납입</p> <p>○ 지역축협의 사업시행 기관은 수납된 계약 자 부담금을 주간 단 위로 시군관할 지역 축협 안정사업자금계 정에 납입, 지자체부 담금은 지자체에 통 보하여 직접 시군관 할 지역축협 안정사 업계정에 납입토록 조치</p> <p>○ 농협중앙회장은 매</p>	<p>○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한 재계약우에 대 한 계약효력발생일 명확화</p> <p>○ 부담금별 농협중앙 회 납입기일 구체화 및 지역축협의의 사 업시행기관의 납입 방법 명확화</p> <p>○ 평균거래가격의 계</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위한 기준기간 변경	분기별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을 통보하고, 안정사업 담당자 교육 및 사업홍보 추진	기(2개월)별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을 통보하고, 안정사업 담당자 교육 및 사업홍보 추진	산기간을 매분기에 서 기(2개월)로 변경
○ 보전금 집행 기관 확대	(신설)	○사업시행기관이 다수 일 경우 각 사업시행 기관 각각에 통보	○사업시행기관확대에 따른 통보기관 확대
○ 보전금 소요액 산출	○ 정부부담액=총소요액×정부부담비율 ○ 정부부담비율=(두당보전금 지급한도액-두당 계약자 및 지자체부담금합계)÷보전금지급한도액 ○ 보전금 지급소요액 중 정부 부담액을 제외한 잔액은 농가 부담금과 지방자치단체 부담액 중에서 공평 부담(삭제)	○ 총소요액=총지급두수×두당보전금지급액 ○ 정부부담액 = 총소요액 - 농가·지자체 부담금 적립액 * 보전금 지급 소요액이 농가·지자체 부담금 적립금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부담	○ 농가·지자체 부담·적립금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개정
○ 보전금 지급제한	○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이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 납부 시까지 보전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 지자체 부담금을 당해 년도말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익년도부터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지자체 소속농가에 보전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 지자체 부담금 납부 전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농가 보전금 지급제한에 따른 농가의 선의의 피해방지
○ 안정사업자금의 구분관리	○ 지역축협은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되, 계약자와 지자체로부터 납입된 부담금을 농협중앙회의 안정사업계정에 납입	○ 사업시행기관은 별도계정을 설치하되(지역 축협외 사업시행기관은 농협중앙회가 별도 설치), 계약자와 지자체로부터 납입된 부담금을 농협중앙회의 안정사업계정에 납입	○ 사업시행기관 확대에 따른 부담금관리 체계 개선 및 규정 명확화
○ 송아지 생산신	○ 생후 14일이내 지역	○ 생후 30일이내 사업	○ 이력제 사업과 신고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고 및 확인	축협에 신고 ○ 지역축협이 생후 2개월이내 생산확인 바코드귀표부착	시행기관에 신고 ○ 사업시행기관이 신고 접수후 1개월이내 생산확인, 이력제시스템을 이용 생산확인 및 전산등록	기간 통일 및 이력제 활용을 위해 개선
76.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 시설지원	○ 사업대상자 범위	○ 브랜드 운영주체, 농가조직체, 영농조합 등	○ 개별농가의 경쟁력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농가조직화를 유도하기 위함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수산물식품부 브랜드 경영체 종합지원사업 대상 브랜드	○ 브랜드경영체, 농림수산물식품부 선정 농가조직체, 영농조합 등	상 동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국고지원(1,190.4백만원) : (보조 20%) 396.8, (융자 40%) 793.6	○ 국고지원기준 : 보조 20%(400백만원), 융자 40%(800백만원)	○ '09년 예산 기준단가 변경으로 개소당 지원한도 조정
○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평가기준 : 대상 브랜드 경영체의 자금 운용 및 매출 등에 관한 평가 추진	○ 평가기준 : 고등 등록우 현황 및 사업 추진정도	○ 사업 점검 평가시 우량송아지생산 목적에 부합한 점검·평가가 될 수 있도록 기준개정
	<신설> (환류부분)	○ 고등 등록우 증가 등 사업성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경영체는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성과달성 촉진	○ 점검·평가 결과 반영시 우량송아지생산 목적에 부합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
○ 사업대상 선정 기준표(평가표)	○ 가축공제 항목 (20점)	○ 고등 등록우 보유 두수 항목(60점)	○ 개별농가의 경쟁력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농가조직화를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함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77. 양봉산업육성 ○ 사업추가</p> <p>78. 낙농체험관광사업</p> <p>○ 사업자 제출 서류</p>	<p>○ 회원농가 사육규모 항목</p> <p>○ 브랜드 출하 물량 항목 (50점)</p> <p>○ 브랜드회원 농가 사육두수 대비 브랜드 출하비율 항목</p> <p>○ 등급판정결과 항목</p> <p>(추가)</p> <p>○ 사업계획서(별지 제 1호 서식, 사업개요, 사업 추진일정, 견적서 등)</p> <p>○ 사업 예정부지 등기 부등본 및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p> <p>○ 신용조사서(별지 제 2호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p> <p>- 신용조사서는 사업자가 대출코자 하는 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p>	<p>○ 사육규모 항목</p> <p>○ 브랜드 출하 물량 항목 (20점)</p> <p>삭제</p> <p>○ 밀원수 묘목보급사업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시·도지사)</p> <p>○ 사업계획서(별지 제 1호 서식, 사업개요, 사업 추진일정, 견적서 등)</p> <p>○ 목장부지 배치도(향후 변경사항 포함)</p> <p>○ 사업 예정부지 등기 부등본 및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p> <p>○ 신용조사서(별지 제 2호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p> <p>- 신용조사서는 사업자가 대출코자 하는 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p> <p>○ 젓소 검정사업 참여 확인서(농협중앙회 젓소개량부 발행)</p> <p>○ 축산업등록증(시·군 발행)</p> <p>○ 목장경영 경력 확인서(납유업체 발행)</p>	<p>○ '07년 하반기 중단된 밀원수 묘목보급사업 재개</p> <p>○ 신청 사업자의 적정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신청제출 서류 추가 보완</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 사업자 평가시 가산점 부여 조건	○ 시.도(지자체), 낙농 관련 기관(단체)에 서 ‘깨끗한 목장’ 또 는 ‘아름다운 농장’ 으로 선정된 농가 ○ 사료포 또는 방목용 초지가 확보된 농가 ○ 시설이 현대화되고 분뇨처리 시설이 확 보된 농가 ○ 목장형 유가공 시설 운영 농가 ○ 낙농후계자 확보 농가	○ 시.도(지자체), 낙농 관련 기관(단체)에서 ‘깨끗한 목장’ 또는 ‘아름다운 농장’으로 선정된 농가 ○ 사료포 또는 방목용 초지가 확보된 농가 ○ 시설이 현대화되고 분뇨처리 시설이 확 보된 농가 ○ 목장형 유가공 시설 운영 농가 ○ 낙농후계자 확보 농가 ○ HACCP 인증목장	○ 신청 목장의 위생환 경과 관련하여 우리 부 정책 참여도 제 고를 위해 추가
○ 사업자 평가시 감점 부여 조건	없음	○ 낙농자조금 미납부 농가	○ 의무 자조금인 낙농 자조금 미참여 농가에 대한 페널티 부여
<b>II. 생산및유통개선</b>			
<b>79. 축산물도축가 공업체지원사업</b>			
○ 도축장 시설보완 사업대상 확대	○ 닭 도축장의 경우 HACCP 시설과 오 폐수처리시설 개보수비용 지원	○ 닭 도축장의 경우 토종닭 도계라인 증설 및 개보수비 용도 지원	○ AI대책의 후속조 치로 닭 도축장의 토종닭 도축시설 확대 추진
○ 축산물가공업 체 시설사업 지원자격 확대	○ 식육가공업 영업 장을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자	○ 식육가공업(한우부 산물가공장 등 포 함) 영업장을 설 치·운영하고자 하 는 자	○ 축산업발전대책 후속조치로 한우 부산물가공장도 지원대상에 포함
○ 축산물가공업 체 시설사업 제외대상자 규 정	○ 도축장 부지 내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장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	○ 다만, 도축장이 도 축장 시설보완 사 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함	○ HACCP 운용수준 이 중위등급 이상 인 도축장내에 식 육포장처리장 설 치를 유도
○ 도축장 운영자 금 지원한도액 조정	○ 정부지원 LPC : 50억원 이내, 일반 도축장 등은 20억	○ 정부지원 LPC : 40 억원 이내, 일반도 축장 등은 10억원	○ 사업예산 축소에 따른 지원한도액 조정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80. 브랜드육 타 운조성 ○ 지원대상	원 이내 ○ 시·도, 농협중앙회	이내 ○ 시·도, 시·군, 농협중앙회 ※ 시·군 주관의 경우 ‘브랜드육 타운 추진위원회’에 관할 시·도가 참여	○ 브랜드육 유통의 조기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에 시·군을 포함함
○ 입점 브랜드 개수	○ 10개 내외	○ 5개 이상	○ 브랜드육 유통의 조기 활성화 도모 - 입점 브랜드 개소수 하향 조정
83-① 가축계열 화사업 ○ 우선지원 요건	○ (추가)  ○ 완전계열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자 ○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동 처리장과 연계하여 계열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자	○ <u>계열업체와 계열농가와의 협의체를 구성, 협의체가 활성화 된 업체</u>	○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관계 유도
○ 지원내용	○ 계열농가 생산시설	○ 계열농가 생산시설 * 단, 계열농가 생산 시설은 한미 FTA 국회비준시 이후에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지원 가능
○ ‘10년 지원기준	○ (추가)	○ 양돈의 경우 계열업체별 생산성 지표(MSY, 모든 회전율, 두당 이유두수, 두당 산자수, 생산비, 사육규모 등)를 기준으	○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해 2010년 지원금액 결정 기준 사전 안내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 일시 운용수익금 용도 및 집행기준	-	○ 일시 운용수익금은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계리 - 농협중앙회가 일시 운용수익금에 용도 및 집행기준 등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도·감독	○ 일시 운용수익금의 용도 및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정책자금 사용의 투명화 제고
○ 지원 축종	○ 한우·돼지	○ 한육우·돼지	○ 육우를 지원축종에 추가
83-③ 축산물브랜드 컨설팅지원 사업			
○ 지원비율	○ 기금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기금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기금보조 및 지방비 지원비율 조정
85. 축산공제사업			
○ 축사특약 정부지원율	○ 공제료의 30% 정부지원	○ <u>공제료의 50%</u> 정부지원	○ 농업인의 공제료 부담완화를 위해기축에 대한 지원율과 동일하게 조정(30%→50)
○ 축사의 보상재해 확대	○ 축사보상재해 : 화재, 풍수해	○ 축사보상재해 : 화재, 풍수해, <u>설해</u>	○ 축사특약의 대상재해 확대(설해피해 추가)로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사업활성화 도모
○ 대상축종 확대	○ 대상축종 : 소, 말, 돼지, 가금(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사슴, 양(산양, 면양)	○ 대상축종 : 소, 말, 돼지, 가금(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사슴, 양(산양, 면양), <u>별</u>	○ 대상축종 확대의 일환으로 농업인수요 및 보험화 가능성이 높은 “별(양봉, 한봉)” 추가
○ 경주마의 보상금액 축소	○ 가입금액의 80%까지 보상	○ 가입금액의 80%까지 보상. 단, <u>경주마는 가입금액의 60%까지 보상</u>	○ 손해율 및 공제요율 상승 억제로 사업활성화 유도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수산분야] IV. 인력육성			
99.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 지원한도액 기 준 및 범위	○ 소규모(최고 3만원 이내)부품 무상교체	○ 인건비는 1인 1일 10만원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 있는 경우 70% 한도 내에서 조정 가능 ○ 소규모(3만원 이하) 무상교체를 1회 점점 시 1인 2개 부품까지 허용 ○ 동일 어업인의 동일 장비에 대하여 연간 2회 이상 서비스 초과 못함	○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동수리소간 의 일관된 서비스 유지
100. 수산업경영 인육성사업			
○ 회계 기준	○ 수산발전기금	○ 농특회계(30%) 금융자금(70%)	○ 후계농업인 육성사 업과 통합
○ 지원대상	○ 선도경영인 - 5명(5억원)	○ 선도우수경영인 - 40명(40억원)	○ 명칭 및 지원규모 변경 - 어업인후계자 및 전 업경영인 중 우수한 자에 대한 추가자금 지원
○ 수산업경영인 평가기준	○ 선도경영인 최소경영규모 높음	○ 선도우수경영인 최소경영규모를 품종별로 다소 낮춤	○ 우수후계자 및 전업 경영인의 참여를 확 대하기 위해 최소경 영규모를 다소 낮춤
○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신청 접수 : 11월 말 ○ 지원대상자 선정 : 12월 말	○ 사업신청 접수 : 1월 말 ○ 지원대상자 선정 : 2월 말	○ 변경된 지침에 따라 1월말, 2월말로 조정
101. 수산업인턴제 및 창업어가 후견인제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 수산업인턴제 지원대상	○ 인턴 선정 대상 만 18~40세 이하	○ 인턴 선정 대상 만 18~44세 이하	○ 인턴 대상자의 연령을 농업부문과 동일하게하여 형평성 유지
	○ 선도경영체 대상 신지식인,전업경영인, 어업후계자경영인 등	○선도경영체 대상에 <b>영어조합법인 추가</b>	○ 인턴이 선택 할 수 있는 선도경영체 대상 확대
○ 창업어가후견 인제지원대상	○ 창업어가 선정대상 2004~2008년	○ 창업어가 선정대상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가장 최근 창업어를 우선 선정토록 규정	○ 신규 창업어가(어업인후계자)의 수혜 기회 확대
104. 어업인정책 보험사업			
○ 국고보조율 상향	○ 어선원 순 보험료 - 10톤미만 : 60% - 10~30톤미만 : 50% - 30~50톤미만 : 20% - 50~100톤미만 :10%	○ 어선원 순 보험료 - 10톤미만 : 70% - 10~30톤미만 : 60% - 30~50톤미만 : 30% - 50~100톤미만 :20%	○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순보험료에 대하여 톤급별 10% 상향
	○ 어선 순 보험료 - 10톤미만 : 60% - 10~20톤미만 : 50%	○ 어선 순 보험료 - 10톤미만 : 70% - 10~20톤미만 : 60%	
제5권 국가균형 발전특별 회 계			
106. 배수개선사업			
○ 배수개선사업 대상지 확대	○ 지구당 50ha이상	○ 지구당 50ha이하도 농지보전 가능성이 있는 집단화된 지구는 사업대상에 포함	○ 지방비 부담해소 및 지역간 형평성 문제 해소 * 그간 지구당 50ha미만은 지방비로 추진토록 했으나, 지방재정이 어려워 사업추진 곤란
108. 한밭대비용수 개발사업			
○ 지원대상	○ <u>관정 및 간이용수원 개발·관리</u>	○ <u>관정개발 및 관리, 간이용수원 개발</u>	○ 지구수정
○ 지원자금의	○ 예산의 10% 수준을	○ 예산의 10% 이상을	○ 관정관리부문 예산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사용용도</p> <p>○ 이행점검단계</p> <p>111. 농업생산기반 조성</p> <p>○ 4개 세부사업을 1개 단위사업으로 지침을 통합</p> <p>○ 지원단가 조정 - 대구획경지정리 - 경작로확포장 - 받기반정비</p> <p>○ 조사·설계시 조사자 유의사항 등</p> <p>○ 첨부 보고서류 간소화</p> <p>113. 농산물산지 유통센터건립지원</p>	<p>지하수시설물 관리에 지원</p> <p>○ 농업용 공공 대형관정의 개발·이용, 점검·정비 및 관리 내용은</p> <p>○ 농지기반조성(대구 획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확포장) ○ 받기반정비 ○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p> <p>○ 세부사업별로 기본 조사, 세부설계 유의사항 명기</p> <p>○ 세부사업별로 보고서식 첨부 ○ 사업시행인가(승인), 추진상황, 준공결과, 예산배정, 입찰결과 보고서식 등</p>	<p>지하수시설물 관리에 지원</p> <p>○ 농업용 공공 대형관정의 개발·이용, 점검·정비 등의 기술 지원은 「<u>농업용 지하수시설물 관리지원단</u>」을 활용하고, 관리 내용은</p> <p>○ 농업생산기반조성 - 지침통합 및 간소화를 위해 공통사항 위주로 작성하되, 세부사업별 목적, 지원 기준, 사업절차 등 설명</p> <p>○ 32,090천원/ha ○ 119,690천원/km ○ 28,970천원/ha</p> <p>○ 지침통합 및 간소화에 따른 공통사항 위주로 명기</p> <p>○ 보고서식 통합 및 간소화 ○ 사업시행인가(승인), 추진상황, 준공결과 보고서식만 존치 * 예산배정, 입찰결과 보고서식은 삭제</p>	<p>집행 비율 명확화</p> <p>○ 지원단을 활용한 관정 사후관리 실시로 효율적 관정 개발·이용 도모</p> <p>○ 유사사업의 시행지침 통합 운용방침에 따름</p> <p>○ '99년 책정된 단가로 그동안('99-'07.12) 물가인상율의 50% 수준 인상반영 * 연차적 사업비 단가 현실화</p> <p>○ 유사사업의 시행지침 통합 운용방침에 따름</p> <p>○ 지자체 자율편성 방식의 균특예산을 지원함에 따라 불필요한 서식 삭제</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 성과목표 및 지표	○ 2013년까지 산지유통센터 300개소 - (생략) -	○ 2013년까지 산지유통센터 380개소 - (생략) -	○ 산지유통시설 적정 투자 연구용역 결과 380개소가 적정
○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공동출자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 생산자단체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공동출자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u>시군유통회사</u> <신설>	○ '09년 처음 시행되는 시군 유통회사 설립 운영지원사업의 시군유통회사를 사업대상자에 포함
○ 지원자금의 사업용용도	○ 세부시설 및 사업비 표준단가 - 건축물류 : 집하장·선별장(항온크린룸 및 저온선별장은 1.5)·포장장·사무실·회의실·일반창고·기타 시설 등(1.0), 차압식 예냉고(3.5), 저온저장고(3.0), 품질검사실(2.0) - 선별·포장장비류 : 선별기 및 선별시설, 결속기, 봉합기, 제합기, 컨베어, 마늘박피기, 세척시설 등	○ 세부시설 및 사업비 기준단가 - 건축물류 : 집하장·출하장·선별장·포장장(1.5), 저온선별장(2.2), 사무실·회의실·일반창고·기타 시설 등(1.3), 차압식 예냉고(3.8), 저온저장고(3.3), 품질검사실(2.0), 전처리시설(저온공조, 3.0) - 선별·포장장비류 : 선별기 및 선별시설, 결속기, 봉합기, 제합기, 컨베어, 마늘박피기, 세척시설, 전처리 및 단순가공시설 등 * 단순가공시설은 잼, 과일쥬스 가공시설 등을 말함	○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건축비 증가로 인해 기존 지침상의 사업비 표준단가로는 사업진행이 어려워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표준단가 조정함 ○ APC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장비류 중 단순가공시설을 포함시키고 잼, 과일쥬스 가공시설로 제한함
○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 총 사업비의 20% 이상 초과 또는 사업계획을 현저히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승인 불가 <신설>	※ 총 사업비의 20% 이상 초과 또는 사업계획을 현저히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승인 불가 - 단, 사업의 기본 취지를 감안할 때 현저한 사업계획변경	○ 현저한 사업계획변경이 아닌 단순한 사업계획변경일 경우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 세부 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p> <p>○ 자금배정 단계</p> <p>○ 이행점검단계</p>	<p>○ 시설업체의 자격 &lt;신설&gt;</p> <p>《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파괴선별기 설치 는 농업공학연구소의 자문과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를 하여야 함</li> </ul> <p>나. 감리</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 margin: 5px 0;"><b>사 업 자</b></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온저장시설 중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 기계설비는 한국식품연구원 및 공조냉동기계설비, 건축기계설비&lt;삭제&gt;를 전문으로 하는 -(생략)- 설계감리 수행</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 margin: 5px 0;"><b>지 자 체</b></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군수는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생략)-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익년 1월)</li> <li>- 경영클리닉 대상조 직은 익년도에 -(생략)-농림수산식</li> </ul>	<p><u>이 아닌 단순 사업 계획변경일 경우 총사업비의 25% 이내 까지는 시도지사가 변경가능여부 판단</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온저장고, 예냉시설의 경우 공조냉동 기계기사 2급이상 자격증 보유업체</li> </ul> <p>《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파괴선별기 설치 는 <u>전문기관(국립 농업과학원 등)의 자문과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를 하여야 함</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온저장시설 중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 기계설비는 한국식품연구원 및 공조냉동기계설비를 전문으로 하는 -(생략)- 설계 감리 수행</li> </ul> <p>&lt;삭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업체의 자격을 상향조정하여 부실공사 방지</li> <li>○ 기관명칭 변경 및 타 전문기관에서도 자문과 의견을 받아 설계할 수 있도록 함</li> <li>○ 농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업체의 감리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건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함</li> <li>○ 경영클리닉지원사업 미실시</li> </ul>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p>	<p>품부에 제출 (2월) - 시장·군수는 경영클리닉 결과 -(생략)- 즉시 계통보고 (시군 -&gt; 시도 -&gt; 농림수산식품부)</p> <p><b>농협중앙회</b></p> <p>○ 농협중앙회는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부진조직에 대한 경영클리닉에 참여</p> <p><b>《산지유통종합평가》</b> <b>가. 원 칙</b></p> <p>○ 매년 정부로부터 시설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u>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조직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조직에 대한 패널티 부과, 경영클리닉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 유도 등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고, 경영컨설팅과 연계하여 산지유통센터 운영능력을 제고</u></p> <p>- 「산지유통종합평가」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광역화·조직화 등을 적극 유도</p> <p><b>나. 2008년 사업실적 평가요령</b></p>	<p><b>《산지유통종합평가》</b> <b>가. 원 칙</b></p> <p>○ 매년 정부로부터 시설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lt;삭제&gt; 「산지유통종합평가」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광역화·조직화 등을 적극 유도</p> <p><b>나. 2008년 사업실적 평가요령</b> <b>--(생략)--</b></p> <p><b>다. 평가결과 환류</b></p> <p>○ 산지유통센터 사업자 중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대상조직에 대해 평가결과</p>	<p>○ 경영컨설팅 및 경영클리닉지원사업 미실시</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lt;붙임 5&gt; 2009년 산지유통센터 설 치사업 신청자 심 사기준표</p>	<p>--(생략)-- &lt;신설&gt;</p> <p>《평가결과 우수조직 : 경영컨설팅지원》 -(생략)- 《평가결과 경영부진 조직 : 경영클리닉지원》 -(생략)-</p> <p>2. 사업수행능력(30점) 2-1 경영구조 및 경영관리능력 A(10점), B(8점), C(6점), D(4점)</p> <p>3. 사업계획의 적정성(45점) 3-2, 부지확보계획 A(10점), B(8점), C(6점), D(4점)</p> <p>A:평점 10점이상 B:평점 8점이상 10점미만 C:평점 6점이상 8점미만 D:평점 6점미만</p> <table border="1" data-bbox="427 1921 740 2022"> <tr> <td>부지소유권</td> <td>평점</td> </tr> <tr> <td>대표자 또는 법인</td> <td>10</td> </tr> </table>	부지소유권	평점	대표자 또는 법인	10	<p>핵심 컨설팅 및 맞 춤형 경영개선 교 육 지원</p> <p>- 상위 5개소 : 경영컨설팅 지원 - 하위 30개소 : 경영개선교육 지원</p> <p>&lt;삭제&gt;</p> <p>2. 사업수행능력(25점) 2-1 경영구조 및 경영관리능력 A(5점), B(4점), C(3점), D(2점)</p> <p>3. 사업계획의 적정성(50점) 3-2, 부지확보계획 A(15점), B(12점), C(9점), D(6점), E(0점)</p> <p>A:평점 15점이상 B:평점 13점이상 15점미만 C:평점 9점이상 13점미만 D:평점 7점이상 9점미만 E:평점 7점미만</p> <table border="1" data-bbox="769 1966 1082 2022"> <tr> <td>부지소유권</td> <td>평점</td> </tr> </table>	부지소유권	평점	<p>○ 기존의 경영컨설팅 및 경영클리닉지원 사업을 핵심 컨설 팅 및 맞춤형 경영 개선교육으로 대체</p> <p>○ 경영컨설팅지원 및 경영클리닉지원사 업 미실시</p> <p>○ 부지미확보로 인한 사업 이월을 방지 하기 위해 부지확 보계획의 점수를 높이고 경영구조 및 경영관리능력의 점수는 낮춤</p>
부지소유권	평점								
대표자 또는 법인	10								
부지소유권	평점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116. 녹색농촌체험	<table border="1"> <tr> <td>명의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td> <td>8</td> </tr> <tr> <td>타인명의, 사용승락</td> <td>6</td> </tr> <tr> <td>타인명의, 사용 미승락</td> <td>4</td> </tr> </table>	명의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	8	타인명의, 사용승락	6	타인명의, 사용 미승락	4	<table border="1"> <tr> <td>법인 명의</td> <td>15</td> </tr> <tr> <td>대표자 명의</td> <td>13</td> </tr> <tr> <td>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 (중도금 지급)</td> <td>10</td> </tr> <tr> <td>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 (중도금 미지급)</td> <td>8</td> </tr> <tr> <td>타인명의</td> <td>6</td> </tr> </table>	법인 명의	15	대표자 명의	13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 (중도금 지급)	10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 (중도금 미지급)	8	타인명의	6	<p>○ 문구 명확화</p> <p>○ 공동마케팅조직 및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인 조직은 3-5(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15점) 지표에 적용하였기 때문에 가점 불필요</p> <p>○ GAP 인증 가점 신설</p>
	명의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	8																	
타인명의, 사용승락	6																		
타인명의, 사용 미승락	4																		
법인 명의	15																		
대표자 명의	13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 (중도금 지급)	10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 (중도금 미지급)	8																		
타인명의	6																		
<p>3-5 산지유통 종합평가 결과</p> <p>A(15점) : 평가결과 상위 25% 이내 조직</p> <p>B(12점) : 평가결과 상위 26%~50% 이내 조직</p> <p>C(9점) : 평가결과 상위 51%~75%이내 조직</p> <p>D(6점) : 평가결과 상위 76%~95%이내 조직</p> <p>E(3점) : 평가결과 상위 96%~100%조직 및 산지유통종합평가 미대상조직</p> <p>○ 가점 : 공동마케팅조직(5점), 기존 유휴 또는 부진 사업장의 산지유통시설을 인수하였거나 인수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4점), <u>산지유통전문조직중 평가결과 B등급이상인 조직 (3점)</u></p>	<p>3-5 산지유통 종합평가 결과</p> <p>A(15점) : 공동마케팅조직, 평가결과 상위 25%이내 <u>전문조직</u></p> <p>B(12점) : 평가결과 상위 26%~50%이내 <u>전문조직</u></p> <p>C(9점) : 평가결과 상위 51%~75%이내 <u>전문조직</u></p> <p>D(6점) : 평가결과 상위 76%~95%이내 <u>전문조직</u></p> <p>E(3점) : 평가결과 상위 96%~100% <u>전문조직, 일반조직 및 산지유통종합평가 미대상조직</u></p> <p>○ 가점 : &lt;삭제&gt;, 기존 유휴 또는 부진 사업장의 산지유통시설을 인수하였거나 인수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4점), &lt;삭제&gt;, <u>GAP인증(시설과 조직 둘다 인증시 3점, 하나만 인증시 1점)&lt;신설&gt;</u></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마을조성사업 ○ 사업대상자  ○ 사업기간  117. 전원마을조성 사업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용도  ○ 재원부담비율  ○ 사업추진방식  ○ 입주자주도형 입주가구 확대	○ 농촌체험관광사업 을 운영하고자 하 는 농촌지역 <u>자연            부락 단위의마을</u>  ○ <u>1 ~ 2년</u> * <u>1년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2년 계획으            로 추진가능</u>  ○ 기본조사, 마을정비 구역 지정 소요비용 등 국고지원  ○ 마을기반 조성사업비 중 단지조성 포함  ○ 국고80%,지방비 20  ○ 3개유형으로 구분 - 입주자주도:20~49호 - 공공기관:20호이상 - 지방이전기업:20호 이상  ○ 20~49호  <신설>	○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u>농            촌지역의 마을</u>  ○ <u>1년</u> * <u>삭제</u>  ○ 2010년 신규지구부터 기본조사비,정비구역 지정 소요비용은 국 고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지조성 삭제  ○ 국고70%,지방비 30  ○ 지방이전기업주도형 을 입주자 주도형에 포함 추진  ○ 20~49호, 다만 주택 을 일괄건축하고 시 군이 입주자들의 사 업의 안정성 담보계	○ 지방자치법상 "자 연부락"이라는용 어는 사용되고 있 지 않으며, '도시와 농어촌간의교류촉 진에관한법률'상 " <u>마을</u> "의 정의와도 상충되기에 변경  ○ 사업기간이 1~2 년으로 되어 있어 마을에서 사업 추 진을 늦게하는 구 실이 될 수 있기 에 이를 명확히 하고자 변경  ○ 지원방식 변경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준비가 완 료된 지구 지원  ○ 단지조성을 개별택 지에 대한 부지조성 비를 지원하는 것으 로 오해 소지가 있 어 삭제  ○ 국고부담비율 조정  ○ 추진방식이 동일하 여 분리 추진에 대 한 실익이 없음  ○ 주택건축 등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설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 2010년사업신청</p> <p>118.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Ⅲ. 담당기관 역할</p> <p>2. 개발계획수립단계 ○ 생활환경정비 사업 개발계획 수립</p>	<p>&lt;신설&gt;</p> <p>&lt;신설&gt;</p> <p>○ (신 설)</p>	<p>획을 검토하여 타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50호이상도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성 담보계획(주 택건축자금 관리등)</li> <li>· 공동관리(시군-입주 자), 신탁회사관리등</li> </ul> <p>○ 공공기관 주도형의 경우 입주계획 가구 수의 2/3이상 확보 이후 마을조성공사 착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월이내 공사 미 착공시 승인취소</li> </ul> <p>○ 시행중 지구의 '09년 이후 잔사업비는 조 정된 부담비율적용 (국고70%,지방비30)</p> <p>○ <u>시장·군수·구청장</u> <u>은 생활환경정비사업</u> <u>을 시행할 필요가 있</u> <u>는 경우 매 5년마다</u> <u>농촌생활환경정비사</u> <u>업개발계획을 수립하</u> <u>여 「농업·농촌 및</u> <u>식품산업 기본법」 제</u> <u>15조에 따른 시·</u> <u>군·구 농업·농촌및</u> <u>식품산업정책심의회</u> <u>의 심의를 거쳐 시·</u> <u>도지사의 승인을 받</u> <u>아야 함.</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정주기반확충 2</li> </ul>	<p>○ 사업관리강화를 위 해 신설</p> <p>○ 계속 시행중인 지구의 국고부담비율 조정</p> <p>○ 농촌생활환경정비사 업의 성과를 제고하 기 위해 계획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경 우 5년 단위로 계획 을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차 오지종합개발 계획('05~'09) 완료 에 따른 면단위개발 방식을 시·군·구 단위로 전환</li> </ul>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 계획수립절차</p> <p>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lt;사업시행단계&gt;</p>	<p>○ 개발계획수립시 지역의 문화전통, 상징적인 마을조성계획등 마을기반 정비계획이 반영될수 있도록 주민참여 확대</p> <p>○ 시장·군수, 구청장은 개발계획서(안)과 단계별 추진계획 사업시행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해당지역주민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시·군·구 농정심의회의를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승인요청</p> <p>○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의 철거·정비는 <u>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u>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한 대상지를 농어촌주거환경개선업무 담당부서에 협의·지원</p>	<p>단계 및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05~'09) 계획이 완료된 시·군·구는 시·군·구단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p> <p>○ 개발계획 수립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태양열·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 활용계획 지역의 문화전통 상징적인 마을조성계획등 마을기반정비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확대</p> <p>○ . . . . .</p> <p>○ 농어촌 빈집의 철거정비는 농촌경관개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시행지침(빈집정비사업)에 따라 빈집 철거비(석면등 방진시설 설치포함)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면</p>	<p>○ 저탄소 녹색성장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적극 권장</p> <p>○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의 심의로 변경</p> <p>○ '0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반영</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모니터링>	○ 분기별 사업추진상 황 취합·정리	○ 반기별 사업추진상 황 취합·정리	○ 30% 일줄이기 일환 으로 행정업무 최소화
119. 농촌·농업 생활용수개 발사업	○ 상수도 공급이 어려 운 전국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	○ 상수도 공급이 어려 운 농어촌지역 마을 에 암반관정을 .....	○ 지원대상을 명확히 함
○ 목적	○ 상수도 공급이 어려 운 전국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	○ 상수도 공급이 어려 운 농어촌지역 마을 에 암반관정을 .....	○ 지원대상을 명확히 함
○ 성과목표 및 지표	○ '13년까지 7,725개 마을에 .....	○ '12년까지 7,060개 마 울에 .....	○ 사업기간 및 목표물 량 조정('08.5월)
○ 지원자격 및 요건	○ 20호 이상 자연마을 중 우물, .....	○ 20호 이상 농어촌지 역 마을 중 우물,.....	○ 지원대상을 농어촌 지역 마을로 한정
○ 사업자(대상지) 선정단계	(2) 지구선정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적합 한 지역중) ○ 시·도별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추진 계획 지구(농촌진 흥과-483호 : '04.3.3)	(2) 지구선정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적합 한 지역중) ○ 시·도별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추진 계획 지구(농촌지 역개발과-1031호 : '08.6.2)	○ '09년 추진계획 변경
○ 세부 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 암반관정에서의 케 이싱과 오염방지 그 라우팅 시공 - 지하수의 수질오염 방 지를 위하여 케이싱 관입 깊이는 견고한 암반층까지로 하며, 일반적으로 연암층 이 하 0.5m 이상의 깊이까 지 그라우팅을 실시	※ 암반관정에서의 케 이싱과 오염방지 그 라우팅 시공 - 지하수의 수질오염 방 지를 위하여 케이싱 관입 깊이는 견고한 암반층까지로 하며, 일반적으로 암반선 이 하 1m 이상의 깊이까지 그라우팅을 실시	○ 지하수법 제8조1, 시행령 제13조 제2 항 규정에 의한 지 하수개발이용시설 표준도에 제시된 그 라우팅 심도로 변경
	○ 대수층이 발달되지	○ 대수층이 발달되지	○ 시·도 시·군의 지하수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 이행 점검 단계 - 관리방법</p>	<p>많은 지역(개발가능량 1일 100톤 이하).....시·군 담당 공무원, <u>한국농촌공사 환경지질사업처 사업지원팀장</u> 등 3인이 심의하여 합의로 판단할 수 있음.</p> <p>○ 각종 시설 및 자재는 <u>수도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6조의</u>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p> <p>○ 일반적인 시설운영은 마을자체 유지관리조직(계)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함.</p> <p>○ 시장·군수는 관리조직으로 하여금 유지관리비(전기료, 소독약품대, 시설개보수비 등)를 징수하여 발생한 비용을 지불하고 일정액을 적립(지역주민자치로 운영)토록 지도함.</p>	<p>많은 지역(개발가능량 1일 100톤 이하)..... 시·군 담당 공무원, <u>농업용지하수시설물관리지원단(한국농촌공사)</u> 등 3인이 심의하여 합의로 판단할 수 있음.</p> <p>○ 각종 시설 및 자재는 <u>수도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9조의</u>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p> <p>○ 일반적인 시설운영은 마을자체 유지관리조직(계)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함이 원칙이나 <u>마을 자체의 유지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이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직접관리하는 방안 강구</u></p> <p>○ &lt;좌 동&gt;</p> <p>* 대부분의 시·군이 어려운 농어가 현실을 반영하여 청소 등 일상적인 관리 외 소독 약품대, 소모품, 수리비, 수질검사 등 유지관리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 필요한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p>	<p>기술지원을 위하여 한국농촌공사내에 설치 운영토록 지시된(기반정비과-4013, 2006.12.22) “농업용지하수시설물관리지원단”에 의하여 기술검토할 수 있도록 변경</p> <p>○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항 수정</p> <p>○ 마을자체의 유지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이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직접 관리</p> <p>○ 어려운 농어가 현실을 감안 주민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유도</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 이용이 저조한 시설 또는 수질·수량 변화 시설 등에 대한 대책</p>	<p>○ 또한 시장·군수는 <u>유지관리조직(계)의 활성화</u>를 위하여 수질검사나 <u>고장수리 서비스지원</u> 등으로 정상 운영시까지 편의를 제공하고, 수시로 시설이용상황을 파악하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애로사항을 지원함.</p> <p>○ 시설점검정비 : 관리조직이 우선실시하고, 자체 점검정비가 불가능한 시설물은 시장·군수가 기술인력을 지원(<u>한국농촌공사 등 전문인력 활용</u>)</p> <p>○ 지하수가 먹는물수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수량부족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u>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u>에 원인조사(우물검층 등 대수층조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보강공사(우물그라우팅, 정수지설치 등) 또는 사용량을 조정하며, 조사결과가 농업용수용으로 전환 등 계속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후 시·군에서는 시·도에 보고하고 대체수원을 개발 함.</p>	<p>의 부담을 최소화 할 것</p> <p>○ 또한 시장·군수는 <u>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수질검사나 전문 관리기관의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정비 순회서비스 및 교육 등의 지원을 강화</u>하고, 수시로 시설이용상황을 파악하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애로사항을 지원함.</p> <p>○ 시설점검정비 : 관리조직이 우선실시하고, 자체 점검정비가 불가능한 시설물은 시장·군수가 기술인력을 지원(<u>한국농촌공사의 “농업용시설물관리지원단” 등 전문기관 활용</u>)</p> <p>○ 지하수가 먹는물수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수량부족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u>지하수시설물관리지원단(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u>에 원인조사(우물검층 등 대수층조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보강공사(우물그라우팅, 정수지설치 등) 또는 사용량을 조정하며, 조사결과가 농업용수용으로 전환 등 계속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후 시·군에서는 시·도에 보고하고 대체수원을 개발 함.</p>	<p>○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군의 기능을 강화</p> <p>○ 시·도 시·군의 지하수 기술지원을 위하여 한국농촌공사내에 설치된 기술지원단 활용</p> <p>○ 시·도 시·군의 지하수 기술지원을 위하여 한국농촌공사내에 설치된 기술지원단 활용</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lt;부 록 1&gt;</p> <p>120.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p> <p>○ 사업추진 기본 방향</p> <p>○ 기관별 역할분담</p>	<p>&lt;신설&gt;</p> <p>○ 동일한 생활권·영농권 등으로 동질성을 가지며,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권역 단위로 개발</p> <p>※소권역 : 동일한 생활권, 영농권, 수리권 등으로 같은 특성을 가지며, 주민간 유대감을 갖는 1개 법정리 이상으로 구성되는 소규모 권역</p> <p>○ 지역주민과 지자체, 관련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으로 추진</p> <p>○ 권역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개발</p> <p>○ 시장·군수 : 예정지 조사 및 예산신청, 마을개발협의회 구성·운영, 기본계획 수립, 권역사무장 채용·운영,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유지관리, 마을정비 구역 고시</p> <p>○ 시·도지사 : 예산신청, 기본계획 및 시</p>	<p>○ 암반관정 폐공처리 유의사항</p> <p>○ 생활권·영농권 등이 같은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권역(1개 법정리 이상) 단위로 개발</p> <p>&lt;삭 제&gt;</p> <p>&lt;좌 동&gt;</p> <p>&lt;삭 제&gt;</p> <p>○ 시장·군수 : 예정지 조사 및 예산신청, 마을개발협의회 구성·운영, 기본계획 수립, 권역사무장 채용·운영, 시행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 유지관리, 마을정비 구역 고시</p> <p>○ 시·도지사 : 예산신청, 기본계획 승인</p>	<p>○ 문장을 간결하게 압축, II 사업시행 주요내용에 언급되는 조항 삭제</p> <p>○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조항 삭제</p> <p>○ 시행계획 승인권자 조정: 시·도지사→시장·군수</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 사업추진체계(표)	<p>행계획 승인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 신청</p> <p>시행 계획 수립</p> <p>시·군(신청)→시·도(승인)→농림수산식품부</p>	<p>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 신청</p> <p>시행 계획 수립</p> <p>시·군(승인)→시·도(보고)→농림수산식품부</p>	
○ 사업 시행자	<p>○ 시장·군수</p> <p>-사업시행자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 등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위탁 시행시에는 가능한 한 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 등을 일괄위탁하고, 이 경우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야 함.</p>	<p>○ 시장·군수(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일부 또는 일괄 위탁 가능)</p>	○ 요점 정리
○ 지원 대상지역 선정요건	<p>○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의한 농산어촌지역 중 읍·면 지역</p> <p>&lt;신설&gt;</p>	<p>○ 근거법령에 의한 의 한 농산어촌지역 읍·면 지역</p>	○ 조항 단순화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p>4. 지원형태</p> <p>○ 기본계획수립비 등 (농특회계) : 국고 100%</p> <p>-사업 신청권역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등</p>	<p>○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가능 지역은 대상지 선정 시 가점 부여</p> <p>4.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p> <p>○ 조사비(농특회계, 국고 100%): 140백만원(예비타당성조사 20, 기본계획 120)</p>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을 유도
			○ 중언부언 내용 통합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사업비(균특회계) : 국고 80%, 지방비 20%</p> <p>-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된 권역의 세부설계비, 용지매수 및 보상비, 공사비, 지역역량강화사업비 등</p> <p>5.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p> <p>○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140백만원 (예비타당성조사 20, 기본계획 120)</p> <p>○사업비 : 권역당 3~5년간 40~70억원 범위 내에서 권역의 규모에 따라 지원</p> <p>-기초생활시설(주택 제외), 문화·복지시설 등 불특정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 : 전액 보조사업</p> <p>-마을주민 공동(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 소득기반시설 : 보조 80%, 자부담 20%</p> <p>-농촌체험·관광기반 시설 및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lt;추가&gt;부지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비의 자부담에 포함되지 않음)</p> <p>○주택신축 용자금</p> <p>-농촌주택의 신축·개축·개량을 위한 지원은 『농어촌주</p>	<p>○사업비(균특회계) : 권역당 3~5년간 40~70억원 범위 내에서 권역의 규모에 따라 지원(국고 70%, 지방비 30%)</p> <p>-기초생활시설(주택 제외), 문화·복지시설 등 불특정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 : 전액 보조사업</p> <p>-마을주민 공동(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 소득기반시설 : 보조 80%, 자부담 20%</p> <p>-농촌체험·관광기반 시설 및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지상물, 등기료 등 부지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 제공자가 부담)</p> <p>&lt;삭제&gt;</p>	<p>○ 지상물, 등기료 등 부지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는 부지제공자가 부담하는 조항을 명확히 함</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나. 시행계획	<p>-(표기생략)</p> <p>○ 시장·군수는 기본 계획이 승인되면 <u>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포함하여 위탁</u></p> <p>시·군(위탁시행자)</p> <p>○ 시장·군수는 시·도지사가 승인한 기본계획에 의하여 <u>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설계 추진</u></p> <p>-세부설계는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1단계 : 1~3년차, 2단계 : 4~5년차)로 구분하여 일괄하여 추진하되 필요시 공중별, 연도별로 분리하여 추진 가능</p> <p>-2단계사업의 세부설계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별도 지시에 따라 시행</p> <p>○ (표기생략)</p> <p>○ 사업시행자(위탁시행자 포함)는 <u>세부</u></p>	<p>○ 시장·군수는 기본 계획이 승인되면 <u>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계획을 수립</u></p> <p>시·군(위탁시행자)</p> <p>○ 시장·군수는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설계를 직접시행하거나, <u>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하여 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세부설계를 포함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일괄위탁 가능)</u></p> <p>-세부설계는 <u>1(1~3년차), 2단계(4~5년차) 동시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1, 2단계를 구분하여 공중별, 연도별로 분리하여 추진하되, 2단계는 1단계 마지막해(3년차)에 시행</u></p> <p>&lt;삭 제&gt;</p> <p>○ 사업시행자(위탁시행자 포함)는 <u>사업추진</u></p>	<p>○ 애매한 조항을 명확히 함</p> <p>○ 2단계 설계시기를 명확히 언급</p> <p>○ 조항정리</p> <p>○ 대상지 선정 후 기본계획 승인과 동시</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설계기간 중에 주민들의 사업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교육은 시행계획 승인 전이라도 우선 실시하고 소요 경비를 추후 지역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p> <p>&lt;신설&gt;</p> <p>○ 세부설계시(시행계획 변경시 포함)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 기본계획수립자와 사전 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함. 단, 다음의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변경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p> <p>○ 시장·군수는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신청</p> <p>&lt;신설&gt;</p>	<p>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역량강화(S/W)사업의 시행계획 승인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기본계획승인으로 같음하여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조기에 시행</p> <p>-시설부지 확보가 불가능하여 위치변경을 하는 경우 당초 기본계획수립시 시설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지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결정함.</p> <p>○ 시장·군수가 시행계획(시행계획 변경시 포함)을 승인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시·도지사로부터 받아야 함.</p> <p>단, 다음의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p> <p>&lt;삭 제&gt;</p> <p>○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을 승인할 경우 기본계획수립에 참여한</p>	<p>에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가능하도록 조치</p> <p>○ 기본계획에 취지에 맞는 계획변경</p> <p>○ 시행계획 승인권자 조정: 시·도지사→시장·군수</p> <p>○ 시행계획 승인권자 조정: 시·도지사→시장·군수</p> <p>○ 시·도지사가 확인할 사항을 이기</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시·도(지자체)</p> <p>○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신청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보고</p> <p>-시행계획승인은 단계별(1단계 : 1~3년차, 2단계 : 4~5년차)로 구분하여 일괄하여 승인하되, 필요시 공종별, 연도별로 분리하여 승인할 수 있음</p> <p>○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신청한 시행계획을 승인할 경우 기본계획수립에 참여한 계획수립가, 외부전문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p> <p>《용지매수 및 보상》</p> <p>○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의서징구 등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함</p> <p>-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공사감리</p>	<p>계획수립가, 외부전문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p> <p>시·도(지자체)</p> <p>○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보고한 시행계획(시행계획 변경 포함) 결과를 시·도지사가 승인한 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비교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이를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보고</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용지매수 및 보상》</p> <p>&lt;삭 제&gt;</p> <p>○(좌 동)</p>	<p>○시행계획 승인권자 조정:시·도지사→시장·군수</p> <p>○시장·군수가 확인할 사항으로 이기</p> <p>○ 불필요한 조항 삭제</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4. 준공 및 시설물 운영단계 가.사업준공 등	<p>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p> <p>《마을경관형성을 위한 주택정비》</p> <p>○사업시행자는 권역 전체 경관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마을 또는 권역단위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고, 소요경비는 사업비에서 계상할 수 있음</p> <p>○사업시행자는 마을 종합개발과 연계하여 권역내 주택정비를 추진할 경우 권역전체 경관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p>	<p>《마을경관형성을 위한 주택정비》</p> <p>○사업시행자는 조례 또는 권역내 마을주민들과의 협약을 통하여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사업비에서 계상할 수 있음</p> <p>-사업권역내에서 경관계획에 의해 기존주택을 정비 할 경우 기술지원을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음</p>	○ 내용이 중복되는 조항 정리
	<p>- (표기생략)</p> <p>- (표기생략)</p> <p>○ (표기생략)</p> <p>○사업시행자는 주민이 주택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활용을 권장하고, 마을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p>	<p>· &lt;좌 동&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 주택정비 시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활용을 권장하고, 마을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p>	
	<p>- (표기생략)</p> <p>- (표기생략)</p> <p>- 위탁시행자는 준공검사시 지적사항에</p>	<p>- &lt;좌 동&gt;</p> <p>- &lt;좌 동&gt;</p> <p>- 위탁시행자는 준공검사시 지적사항에 대</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준공(부분준공 포함)후 &lt;추가&gt; 공공시설물과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인계하며, 시장·군수는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인수를 하여야 함</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공사 완료(준공)된 시설물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p> <p>○(표기생략) ○시장·군수는 준공된 시설물(토지 포함)을 선량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과정에서 공사</p>	<p>하여 조치를 취하고 준공(부분준공 포함)후 <u>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제외한</u> 공공시설물과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인계하며, 시장·군수는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인수를 하여야 함</p> <p>- <u>토지 등 주민 자부담이 포함된 시설물(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한 경우)은 시장·군수와 추진위원, 법인간의 협약에 따라 마을 및 법인으로 등기 가능</u></p> <p>- <u>마을 및 법인으로 등기 할 경우 등기권자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협약서에 매각 유예기간을 명시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함</u></p> <p>&lt;삭 제&gt;</p> <p>&lt;좌 동&gt;</p> <p>○시장·군수는 &lt;삭제&gt; 유지관리 과정에서 공사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시공회사 또는 위탁시행</p>	<p>○ 마을 및 법인으로 등기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p> <p>○ 사업추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항 삭제</p> <p>○ 사업추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구 삭제</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나. 시설물 운영관리 등</p>	<p>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시공회사 또는 위탁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p> <p>○ (표기생략)</p> <p>- 시설물 활용 및 유지관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추진</p> <p>- (표기생략)</p> <p>- 수질검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용도별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p> <p>○ 지역주민은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해 주민자체 유지관리 및 운영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함</p> <p>- 지속적인 권역발전을 위하여 조경(경관), 정보화, 체험프로그램운영자 등 각 분야별 유지관리자(운영자)를 지속적으로 육성</p>	<p>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p> <p>&lt;삭 제&gt;</p> <p>○ &lt;좌 동&gt;</p> <p>&lt;좌 동&gt;</p> <p>&lt;삭제&gt;</p> <p>○ 지역주민은 &lt;삭제&gt; 주민자체 유지관리 및 운영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함</p> <p>&lt;삭제&gt;</p>	<p>○ 사업추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구 삭제</p> <p>○ 사업추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항 삭제</p>
<p>5. 예산편성 및 집행단계</p>	<p>○ (표기생략)</p> <p>- 이 경우 수탁시행자</p>	<p>&lt;좌 동&gt;</p> <p>&lt;삭제&gt;</p>	<p>○ 불필요한 조항 삭제</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가.예산의 편성</p> <p>6. 기타 가.관광·체험 및 주민공동소득 기반 등</p>	<p>와의 계약에 의거 수탁시행자가 보조 사업비를 신청할 경 우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일괄 집행 할 수 있음</p> <p>○시장·군수는 기본 계획에 포함된 타부 문 연계사업을 사업 기간 내에 연계 추 진될 수 있도록 예 산에 반영하여 추진 하여야 함</p> <p>○사업시행자(시장· 군수, 위탁시행자)는 소득사업 등 사업비 의 일부(토지포함)를 주민이 부담하는 경 우 주민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비’로 편성하거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편 성할 수 있음</p> <p>- &lt;신설&gt;</p> <p>- &lt;신설&gt;</p> <p>-민간에 대한 자본보 조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업시행자(시 장·군수, 위탁시행 자)는 설계, 감리,</p>	<p>&lt;삭제&gt;</p> <p>○사업시행자(시장·군 수, 위탁시행자)는 관광·체험 및 소득 사업 등 사업비의 일 부(토지포함)를 주민 이 부담하는 경우 주 민과 협약을 체결하 여 ‘시설비’로 편성하 거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편성할 수 있음</p> <p>-협약은 시장·군수, 권역추진위원회, 사업 법인 3자간에 체결. -‘민간에 대한 자본보 조’로 편성한 사업이 라도 투명한 예산집행 을 위하여 협약을 체 결 한 후 시장·군수 (위탁시행자)가 시행 하여야 함</p> <p>-(좌 동) &lt;삭 제&gt;</p>	<p>6 바. 타사업과의 연계 에서 언급되었으므로 삭제</p> <p>○ 효율적인 사업추진 을 위해 협약주체 명시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편성한 사업은 투명 한 집행을 위해 시 장·군수(위탁시행 자)가 시행하도록 규정</p> <p>○ 개인 소유의 부지를 체험·관광시설의 부지로 활용 조건 강화</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 추진위원회 지원</p>	<p>사업발주 등의 업무를 지원하며, 투명한 집행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함</p> <p>&lt;신 설&gt;</p> <p>&lt;신설&gt;</p> <p>○ 주민소득사업 등의 사업완료시에는 정산확인 후 시설물을 인계하여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여야 함</p> <p>○ (표기생략) -(표기생략) -시장·군수는 권역사무장 채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권역별</p>	<p>○ 시설부지를 마을에서 제공하는 관광·체험 시설의 경우 개인 소유 부지를 활용할 경우 최소한 10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필요시 지상권을 설정하여야 함.</p> <p>○ 개인 소유의 부지를 체험·관광시설의 부지로 활용 조건 강화 사업시행자는 주민 자부담액이 해당 시·군의 계좌에 입금된 후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p> <p>○ 주민소득사업 등의 사업완료시에는 정산확인 후 시설물을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받은 시설물은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양도·교환·대여·담보 활용 등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재산처분의 제한)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p> <p>○ (표기생략) -(표기생략) -시장·군수는 권역사무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권역별 지</p>	<p>○ 소득사업은 주민 자부담 확보이후 추진</p> <p>○ 보조금이 투입된 시설물의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는 추가</p> <p>○ 권역 사무장은 지역 역량강화의 프로그램으로 운영</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마. 다른 법 등과의 관계</p>	<p>지역역량강화(S/W)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음</p> <p>○ <u>사전환경성검토</u> ○ <u>사업계획의 단위사업(개별시설) 면적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 각 단위사업 인·허가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함</u></p> <p>○ <u>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u> ○ <u>사업계획의 개발사업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 각 단위사업 시행계획 승인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함</u></p>	<p>역역량강화(S/W)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음</p> <p>○ <u>환경정책기본법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및 문화재지표조사가 필요할 경우 각 단위사업의 인·허가 전에 실시하여야 함.</u></p> <p>○ <u>사업계획의 개발사업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협의를 필요한 경우 각 단위사업 시행계획 승인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함</u></p>	<p>○ 내용 단순화 및 문화재지표조사 실시 규정 추가</p> <p>○ 내용 단순화</p>
<p>바. 타사업과의 연계</p>	<p>&lt;신설&gt;</p>	<p>바. 타사업과의 연계</p> <p>○ <u>기본계획 수립자는 권역의 장기발전을 위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타 부문 사업으로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발굴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함</u></p> <p>- <u>농업생산기반정비, 농업농촌생활용수개발, 유통·소득·가</u></p>	<p>○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시 타사업과의 연계 부각</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사.보고사항</p> <p>7. 성과측정단계</p> <p>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p>	<p>○ 사업추진상황 : <u>분기말 기준 익월 10일까지</u></p> <p>○ 성과측정시기 : <u>12월</u></p> <p>○ (추가)1단계(1~3년차)사업이 종료되는 권역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p> <p>&lt;신 설 &gt;</p> <p>&lt;신 설 &gt;</p>	<p>공시설, 농촌생활환경비, 뉴타운조성, 전원마을조성, 농촌주택개량, 경관보전직불사업 등 농림수산물식품부 소관사업</p> <p>-농어촌도로, 소하천정비, 마을하수도, 마을체육시설 등 타부처 소관사업과 새농어촌건설 등 시·도시책사업</p> <p>○ 기본계획 수립자는 지방소도읍육성법에 의한 소도읍 등 지역거점도시와 연계하여 상호 보완기능을 발휘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p> <p>○ 사업추진상황:농림사업 통합관리시스템(AgriX)에 등록(익월 10일까지)</p> <p>○ 성과측정시기 : <u>중간평가(10~11월), 예산집행실적평가(12월)</u></p> <p>○ 중간평가는 1단계(1~3년차)사업이 종료되는 권역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p> <p>○ 연말평가는 12.31일자로 기준으로 지자체의 예산집행 실적을 평가</p> <p>○ '05년 착수한 권역이 종료되는 권역을 대</p>	<p>○ AgriX 시스템에 의한 관리</p> <p>○ 중간평가, 예산집행 실적 평가를 구체적으로 언급</p> <p>○ 평가단계를 명확히 함</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IV.2010년도 사업 신청 및 대상지 선정	<p>《환 류》</p> <p>○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권역 및 우수지자체에게는 인센티브 부여</p> <p>- 권역 발전기금, 인센티브 예산, 포상 등 &lt;신규&gt;</p> <p>○ 사업추진이 부진한 권역 및 지자체에게는 페널티 부여</p> <p>- 익년도 예산지원 중단, 신규권역선정 배제 등 &lt;신규&gt;</p>	<p>상으로 '10년도 종합 평가를 실시</p> <p>《환 류》</p> <p>○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권역 및 우수지자체에게는 인센티브 부여, 부진권역에 페널티 부과 &lt;좌 동&gt;</p> <p>- 중간평가 결과 60점 이하 또는 연말 예산 실행율이 기준 이하인 권역에는 페널티 부여</p> <p>○ 페널티 부여 받은 권역은 익년도 예산지원 중단, 신규권역선정 배제 &lt;삭 제&gt;</p> <p>○ 3회 페널티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포기 또는 중단을 요청한 경우 사업을 취소할 수 있음</p>	<p>○ 페널티 기준 명시</p> <p>○ 취소 사유 명시</p>
	<p>1. 2010년도 사업신청 ○(표기생략)</p> <p>○(표기생략)</p> <p>○(표기생략)</p> <p>2. 사업대상지 선정 ○(표기생략)</p>	<p>○ 시장·군수 예비계획서 시·도지사에게 제출(10.31까지)</p> <p>○ 시·도지사 시·군이 제출한 예비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11.30까지)</p> <p>○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신청한 예비계획서에 대하여 서류심사, 예비타당성 조사를</p>	<p>중복되는 내용 정리</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별표 4. 권역사무 장 운영지침</p> <p>122-② 향토산업 육성사업</p> <p>○ 지원배제사항</p> <p>○ 사업계획 변경</p> <p>○ 사업추진 체계 변경</p>	<p>3. 지원조건 ○(표기생략)</p> <p>○ 지원규모 : 권역사무 장 1인당 월 100만 원 범위내(국고 80%, 지방비 20%) - 권역사무장 활동 비..... 100만원을 초과하여 추가 지급 가능하나, 이 경우 에도 국고보조금은 최대 월 80만원 한 도 내 지원</p> <p>○ 토지 등의 매입·임 차, 타지역 시설 설 치 등</p> <p>○ 시·도와 협의 후 집행</p> <p>○ 농촌활력증진사업 단위사업(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p>	<p>실시하여 '10년도 기본계획수립 대상 권역을 선정</p> <p>3. 지원조건 ○(표기생략)</p> <p>○ 지원규모 : 권역사무 장 1인당 월 120만원 범위내(국고 70%, 지 방비 30%) - 권역사무장 활동 비..... 월 120만원을 초과하여 추가 지급 가능하나, 이 경우에 도 국고보조금은 최 대 월 84만원 한도 내 지원</p> <p>○ 타사업과 중복 및 투 자효과가 미약한 단 순보조 사업, 과잉생 산 되는 품목에 대한 지원 등 추가</p> <p>○ 경미한 사항은 시· 도에서 승인 후 농 식품부 통보</p> <p>○ 기본방침, H/W사업 비 증액, 세부사업비 30%이상을 수반하 는 계획변경 등 중 대한 사항은 농식품 부 승인 후 집행</p> <p>* 기존 계속추진사업 은 종전과 동일</p> <p>○ 지역클러스터활성화 지원사업 단위사업 (균특회계 혁신사업 계정)</p> <p>* '09년 신규지원 대 상부터 적용</p>	<p>○ 취소 사유 명시타사 업과의 형평성을 맞추 (사무장의 4대 보험 가입을 유도)</p> <p>○ 정책목적상 부적합 한 지원 분야 추가 명기</p> <p>○ 사업추진 체계 개편 에 따른 계획변경 절차 변경</p> <p>○ 사업간 연계성 제고</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122-③ 특 화 품 목 육성사업 ○ 단위사업규모	○ 총사업비가 20백만원(국고10)이상인 경우 지원	○ 기존 계속추진사업은 농촌활력증진사업 단위사업으로 종료시까지 지원(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 계정) ○ 총사업비가 20백만원(국고10)~1,000(국고500) 이내로 한정	○ 재정투자의 적정성 제고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 사업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자부담 부과 의무화
○ 농산물가공업체 주원료 공급 기준	○ 가공식품의 주원료 80%이상을 지역에서 조달	○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원료확보 애로 등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원료의 20% 범위내에서 국내산으로 대체 가능 * 예 : 지역내 60, 국내산 20%	○ 농산물가공사업 활성화 유도
○ 특화품목지정	○ 제한 없음	○ 시·군별 특화품목 5개 이내에 한해 지정 가능	○ 재정 지원의 효율성 제고
○ 시·도, 시·군 특화품목 지정 가능	○ 시·군 * 시·도 지정 삭제	○ 특화품목지정 일원화	
○ 지원 제외 대상 추가	-	○ 축제 등 지역행사 * 국제행사에 한해 지원	○ 특화품목과 관련이 적거나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 방지 ○ 제외대상 근거 명확화
	-	○ 저온저장고 등 타사업에서 지원하는 사업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p>123. 농작업편이장 비지원</p> <p>○ 취소 사유 명시사업신청, 선정 및 시행단계</p> <p>○ 사업신청, 선정 및 시행단계</p>	<p>-</p> <p>-</p> <p>-</p> <p>○ 마을 및 단체에서는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p>	<p>○ 과잉생산 품목 등에 대한 재배면적 확대, 생산증가 지원</p> <p>○ 종구·종자, 벼 육묘장, 천적미생물·곤충보급, 경작로, 푸른들가꾸기사업 등</p> <p>○ 해당지역을 벗어난 판매장 등의 설치 또는 임차 관련 비용 등</p> <p>○ 마을 및 단체에서는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견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p> <p>- 마을(작목반) 선정시 컨설턴트 참여</p> <p>○ 사업대상지역의 조사 및 세부사업 계획 수립</p> <p>* 사전교육, 농작업 현황 및 여건조사, 작목별, 작업과정별 개선이 필요한 편이장비의 선정, 평가, 보급, 관리 등</p> <p>* 편이장비 선정시 농업인, 기술센터, 업체, 컨설턴트 등이 합의된 장비</p>	<p>○ 사업성과 거양</p> <p>○ 사업성과 거양</p>
<p>124. 산촌생태마을</p>			

구 분	현행(2008)	변 경 안(2009)	변 경 사 유
조성 ○ 공동사업 부지 확보	○ 공동사업부지 확보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심사 대상	○ 공동사업부지 미확보 시 심사 배제	○ 주민 갈등 및 사업 지연 예방
○ 지원단가 및 조건	○ 가구수, 마을규모 별로 차등 지원 - 마을조성 · 마을당 총사업비 10~16억 - 사전설계 · 마을당 45~72백만원	○ 사업규모 단순화 - 마을조성 · 마을당 총사업비 14억 또는 16억원 - 사전설계 · 마을당 65백만원	○ 사업규모 단순화에 따른 마을조성 및 설계비 조정
○ 마을조성비의 연도별 배정 비율 조정	○ 연차별 마을조성비의 균등 배분 - 1차년도 조성: 50% - 2차년도 조성 : 50%	○ 연차별 마을조성비의 차등 배분 - 1차년도 조성: 30% - 2차년도 조성: 70%	○ 예산의 이월 예방과 효율적 집행을 위해 조정
129. 어항기반시설 조성			
○ 지방어항 건설 예산신청	○ 사업전년 4월경 - 지원금액만 기술	○ 사업전년 4월경 - 세부사업계획서 첨부 별도협의	○ 사업대상항을 조기에 결정 사업기간 단축
○ 지방어항 건설 지원요건	○ 개발계획 수립항	○ 개발계획수립후 5개년이 경과되지 않은항	○ 과다개발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
○ 지방어항 건설 항당 최소사업비	○ 항당 8억원이상	○ 강원 : 12억원 ○ 기타 시도 : 10억원이상	○ 완공위주 집중투자
○ 지방어항 지원 대상시설	○ 보수·보강사업 지원제외	○ 보수 보강사업을 지원대상에 포함	○ 지방어항 이용만족도 제고
130. 어촌어항관광 조성			
○ 국비 지원율 변경	○ 국비 80%, 지방비 15%, 자담 5%	○ 국비 70%, 지방비 25%, 자담 5	○ 기획재정부 지침

## VI. 기타 주요사항





# 1. 농림수산사업자금 대출 안내

본 농림수산사업자금 대출 안내의 내용은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된 법령, 동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규정, 요령, 지침 등과 금융기관의 정책자금관련 규정, 요령, 지침 등의 변경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 대출제도 概觀

- 1) 대출절차 : 본문 참조
- 2) 신용대출
  - 대출한도
    - 무입보신용대출 : 1,000만원
    - 신용대출 : 3,000만원(무입보신용대출 1,000만원 포함)
    - 농업인후계자자금 3,000만원은 별도
  - 연대보증인 입보는 대출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규정에 따름
- 3) 담보대출
  - 주요 담보종류 및 대출 가능금액(농협중앙회 기준)

담보물의 종류	담보인정 비율	투기지역
○ 부동산 - 아파트 - 연립단독주택 - 기계·기구(공장저당권에 한함) - 기타부동산(나대지)	60%이내 55%이내 40%이내 55%이내	대출기간 10년 이하 대출인 경우 40%이내, 6억 초과 아파트의 경우 기간 관계없이 40%이내 대출기간이 3년 이하 신규대출 50%이내  * <b>대출가능금액</b> : 감정평가액에서 선순위권리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임  * <b>투기과열지구</b> : 대출기간이 3년 이하인 신규대출 50%이내
○ 예·적금, 신탁의 수익금	90%이내	
○ 공제증권	90%이내	
○ 신용보증서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00%이내	
- 신용보증기금	100%이내	
- 기술신용보증기금	100%이내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00%이내	
- 기타 중앙본부가 인정한 신용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100%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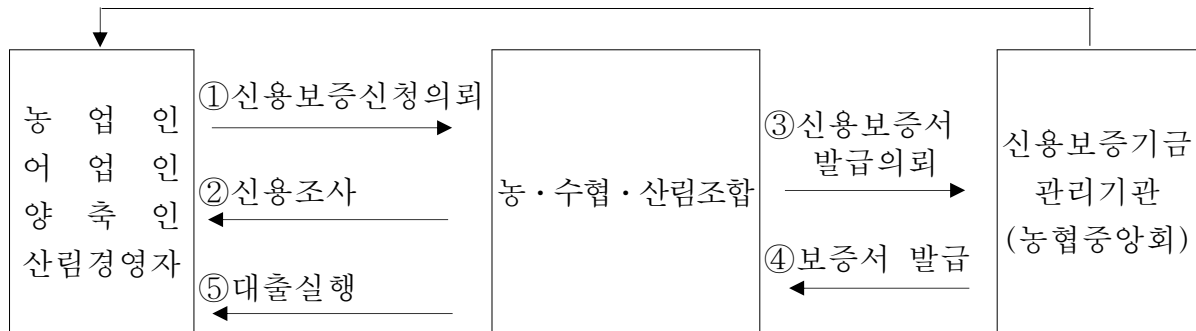
(주) 선순위권리해당액 : 선순위설정금액, 우선채권(주택외의 부동산인 경우 임차보증금, 주거용건물의 임차보증금, 임금채권, 조세채권 등)

※ 주거용건물의 임차보증금은 주택의 임대정도(미임대, 일부임대, 전부임대)와 방수에 의하여 달라짐

####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 ○ 보증부대출 취급절차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주) 위탁보증의 경우 ③,④처리과정이 금융기관에서 진행

##### ○ 보증금액별 신용조사 종류

3,000만원 이하	5,000만원이하	2억원 이하	2억원 이상
간이신용조사	간이신용조사Ⅱ	약식신용조사	정식신용조사

주) 일반보증으로서 자연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기준

##### ○ 보증종류

- 일반보증 :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으로 농어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지원하는 보증
- 특례·우대보증 : 농어업인에 대한 정부의 특별 정책에 따라 선정된 보증 대상자와 대상자금을 간소화된 보증서 발급 절차를 통해 지원하는 보증

##### ○ 보증한도(타신보 보증액 포함)

- 개인 : 신용보증 누계액 10억원
- 법인 : 신용보증 누계액 15억원

나. 대출취급시 주요 구비서류

구 분	서 류 명	농업인		개인사업자		법 인		비 고
		신용대출	담보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	
교부서류	○ 여신거래기본약관	○	○	○	○	○	○	교부서식
본인확인서류	○ 대출상담 및 신청서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또는 규약 ○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납세증명서 또는 납세영수증 ○ 종합소득금액 사실증명원	○	○	○	○	○	○	
신용 및 대출 심사 서류	○ 사업계획서 ○ 월별공정계획표 ○ 최근 결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 ○ 소유재산 등기부등본 ○ 연대보증자격확인에 필요한 서류	△	△	△	△	○	○	
담보 감정 (설정) 서류	○ (토지,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지적도 ○ 개별지가확인원 ○ 기계·기구목록(공장저당시) ○ 화재공제(보험)증권		○		○		○	

- (주) 1. 위 구비서류외에 대상업체,담보물 등에 따라 추가로 받을 서류가 있을 수 있음( ○ : 필수 징구서류, △ : 필요시 징구서류)
2. 대출시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는 반드시 대출취급사무소에 직접 나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계서류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함

다. 대출에 따른 소요비용

1) 담보물 감정평가 수수료

- 대출취급사무소 자체 평가시 농업인 등 및 농업인 등의 단체는 면제. 단, 원격지 담보물의 경우 여비 등 실비는 채무자 부담임
- 한국감정원 등 외부기관 평가시는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2) 저당권 설정비용

- 등록세 : 설정액의 2/1,000(단, 농업인등이 조합에서 대출 받는 경우는 면제)
-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단, 농업인등이 조합에서 대출 받는 경우는 면제)
- 주택채권 매입 : 설정액의 10/1,000(단, 설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와 농업인등이 농림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때에는 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됨)
- 법무사 보수
  - 기본보수(건당) : 60,000원
  -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과 세 표 준 액	보 수 액
10백만원초과 50백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액의 10/10,000
50백만원초과 1억원 이하	4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9 /10,0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85,000원 + 1억원 초과액의 8 /10,0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45,000원 + 3억원 초과액의 7 /10,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85,000원 + 5억원 초과액의 6 /10,000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685,000원 + 10억원 초과액의 5 /10,000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185,000원 + 20억원 초과액의 4 /10,000
200억원 초과	8,385,000원 + 200억원 초과액의 1 /10,000

주) 지역 및 기준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여비 등 실비 : 실제 소요된 비용
- 일당
  - (1) 2시간이상 4시간이내 : 50,000원
  - (2) 4시간 초과 : 100,000원
-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료 등 : 등본 및 초본 초과하는 1통마다 2,000원 가산

3) 인지세(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1호)

대 출 금 액	인 지 대
2천만원 이하	면제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0,000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0,000원
5천만원 초과 ~ 1 억원 이하	70,000원
1 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 농업인 등이 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대출 받을 때에는 5천만원까지 면제.  
다만, 동일인의 대출합계액이 5천만원 초과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신용보증료(농림어업분야)

○ 보증대상자, 보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 개인 : 연율 0.5 % - 1.2 %

- 법인 : 연율 0.7 % - 1.4 %

※ 신용도에 따라 보증율이 가감(가감보증료율 : ± 0.2 %)

라. 기 타

사업대상자 선정, 지원한도, 지원조건 및 기타 대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종 농림수산자금대출취급지침 및 동 요령과 농협 여신관련 제 규정에 의함







